

기본연구 2011-19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Measures for Added-value Creation of the
Korean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2011. 12.

강종호 · 이정삼 · 이현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강 종 호 : 제1장, 제2장 4절, 제4장 2절, 제6장, 제7장

● 연구진

- 이 정 삼 : 제2장 1·2·5절, 제4장 1·4절, 제6장 2절
- 이 헌 동 : 제2장 3절, 제3장, 제5장, 제6장 2절

● 외부 집필진

- 장 춘 봉(부경대학교 교수) : 제4장 3절
- 이 광 남(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제6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장 영 수(부경대학교 교수)
- 장 창 익(부경대학교 교수)
- 이 광 남(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이 완 옥(국립수산물연구원 연구관)
- 유 원 상(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신 영 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머 리 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652만 명으로, 2005년에 추정된 573만 명에 비해 18.3%가 증가하였다. 또한 해면의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00년 67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40만 명을 기록하였다. 과거 주요 수출품목이던 낚시용품은 1996년에 약 4,650억 원이 수출되었으나 2010년에는 약 1,04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럼 낚시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을 포함한 낚시 관련 산업은 각종 규제, 영세한 사업 규모, 불편한 낚시환경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낚시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다수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나 산업적 발전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낚시산업의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3월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과거 5개 부처 34개 법령을 통해 분산·관리되던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제대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통합적 근거법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동 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 이외에도 ‘육성’이 포함되어 있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법 제43조에 따라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낚시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최근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낚시산업과 관련된 기존 정책이 미비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낚시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에 기초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낙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낙시산업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맞춰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에 앞서 기초 자료의 조사·연구, 정책 기본방향의 설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낙시산업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통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매 5년마다 시행될 ‘낙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강종호 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이현동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그리고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 부경대학교 장춘봉 박사가 외부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 박사, 농림수산식품부 유원상 사무관, 우리 원의 신영태 선임연구위원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이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 2) 연구의 방법 4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 1) 선행연구 검토 6
 -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낚시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2

- 1. 낚시산업의 분류 12
- 2.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실태 14
 - 1) 낚시도구 제조업 14
 - 2) 낚시도구 판매업 18
 - 3) 낚시어선업 19
 - 4) 낚시터업 27
 - 5) 낚시도구 수출입업 34
- 3. 낚시산업에 대한 산업규모 추정 40
- 4. 낚시산업의 관련 제도 및 정책 43
 - 1) 낚시 관련 제도 43
 - 2) 낚시 관련 정책 53

5.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문제점	59
1)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60
2)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 마련 소홀	60
3) 수면과 수산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 발생	61
4) 낚시산업 관련 법·제도 및 관리조직 미비	62
5) 규제 행정 중심적 낚시산업 관련 정책	62
6)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부족	63
 제3장 낚시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경쟁력 분석	64
1. 낚시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64
1)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이론적 검토	64
2) 낚시산업 관련 산업연관표 작성	67
3) 분석결과	76
4) 시사점	83
2. 낚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84
1) 분석방법 및 자료	84
2) 분석결과	87
3) 시사점	91
 제4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93
1. 미국 사례	93
1) 미국의 낚시산업 실태	93
2) 관련 제도 및 정책	101
2. 일본 사례	108
1) 일본의 낚시산업 실태	108
2) 관련 제도 및 정책	113
3. 중국 사례	121

1) 중국의 낚시산업 실태	121
2) 관련 제도 및 정책	132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36
제5장 낚시산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140
1. 조사개요 및 내용	140
1) 조사설계	140
2) 조사내용	141
2.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	143
1) 일반인 조사	143
2) 사업체 조사	143
3. 조사결과	146
1) 낚시 관련 활동사항	146
2)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	150
3) 낚시산업의 문제점과 정책 우선순위	153
4)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56
4. 시사점	164
제6장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166
1. 부가가치 창출방안의 목표	166
2. 목표별 부가가치 창출방안	170
1)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 기반 구축	170
2)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179
3)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	186
4)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189
5) 수출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	19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7
1. 요약 및 결론	197
2. 정책제언	199
1) 안정적 법·제도 기반 구축의 추진방안	199
2)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의 추진방안	203
3) 낚시 가족 레저화와 명품 낚시공간 구축의 추진방안	206
4)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의 추진방안	209
5) 글로벌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210
 참 고 문 헌	 213
 부록 1. 낚시산업 연구 설문조사표	 219
 부록 2. 외국의 낚시산업 현황	 229

표 차 례

표 1-1. 낚시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10
표 2-1. 낚시산업의 주체별 분류	13
표 2-2. 낚시도구의 종류	15
표 2-3.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 생산규모	15
표 2-4. 낚시도구 수입액(2007)	16
표 2-5. 낚시도구 제조업체 수 및 주력 제품	17
표 2-6. 낚시도구 제조업체 종업원 수 및 공장규모	18
표 2-7. 2010년 하반기 낚시어선 규모별 신고 척수	22
표 2-8. 낚시어선 수입액	24
표 2-9. 낚시어선 안전사고 현황	26
표 2-10.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현황	26
표 2-11. 해면 및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 구분	29
표 2-12. 우리나라 관리 낚시터 운영 현황	30
표 2-13. 유어장 지정 현황(2009. 12.)	31
표 2-14. 내수면 낚시터 허가 및 신고 현황(2009. 12.)	32
표 2-15. 지역별 수출금액 및 비중(2010)	38
표 2-16. 지역별 수입금액 및 비중(2010)	39
표 2-17.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2008년 기준)	42
표 2-18. 낚시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 관련 사항	43
표 2-19. 낚시장소에 대한 법률 및 관련 현황	44
표 2-20.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법령 및 현황(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외)	45
표 2-2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연혁	47
표 2-22.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52
표 2-23. 전국의 낚시금지구역 지정 현황(2009. 7.)	56
표 2-24.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목적별 분류	58

표 2-25. 전국의 낚시제한구역 지정 현황(2009. 7.)	58
표 3-1.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통한 세부 효과의 수식 표현	66
표 3-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낚시산업의 분류 현황	68
표 3-3. 산업연관표에서 낚시산업의 분류 현황	70
표 3-4. 운동 및 경기용품(기본부문 292) 부문의 공급액표 내역	71
표 3-5.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비교	72
표 3-6.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현황(2008년 기준)	72
표 3-7. 낚시산업을 포함한 신규 산업분류 체계	75
표 3-8. 낚시산업의 투입 및 배분구조	77
표 3-9. 낚시산업의 중간투입 상위 10개 산업 부문	78
표 3-10. 낚시산업의 중간수요 상위 10개 산업 부문	78
표 3-11.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분석결과	80
표 3-12. 낚시산업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분석	82
표 3-13. HS9507 품목의 국가별 수출실적 및 점유율과 성장률	88
표 3-14. HS9507 품목의 국가별 RCA 및 EPI 비교	90
표 3-15. 낚시용품산업의 무역성과 종합분석	92
표 4-1. 미국의 유어낚시 경제적 파급효과	93
표 4-2. 미국의 가족형 낚시리조트 유형	96
표 4-3.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의 주요 시설	97
표 4-4. 크리켓버킷 낚시잔교 리조트	100
표 4-5. 미국의 목적세 납부액과 낚시장비 구입액	106
표 4-6. 해면 및 내수면 유어자의 추이	108
표 4-7. 일본의 성별·연령별 여가활동 참여율	109
표 4-8. 일본의 낚시 참가 및 소비 실태	110
표 4-9. 일본의 낚시도구산업 시장규모	113
표 4-10. 유어자 등의 별칙규정(어업법·수산자원보호법·어업조정 규칙)	115
표 4-11. 어업경제 총 생산액	123
표 4-12. 낚시도구 수출 현황	127

표 4-13. 중국의 낚시도구 주요 수출 도시(2008)	129
표 4-14. 낚시도구 수입 현황	130
표 4-15. 중국 낚시산업 관련 박람회 개최 현황	131
표 4-16. 낚시관리 관련 제도	133
표 4-17. 지역별 낚시관리 관련 제도	134
표 5-1. 낚시산업 관련 설문조사 설계	141
표 5-2. 설문조사 내용	142
표 5-3. 소비자 조사표본의 특성	144
표 5-4. 사업체 조사표본의 특성	145
표 5-5.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148
표 5-6. 낚시경력	149
표 5-7.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및 기여도 평가	151
표 5-8. 낚시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	152
표 5-9. 낚시도구산업의 발전정책	156
표 5-10. 낚시 규제 완화 정책	157
표 5-11. 낚시 서비스 향상 정책	157
표 5-12.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161
표 5-13. 낚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의견	161
표 5-14.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비용 분담방법에 대한 의견	162
표 6-1. 낚시산업 관련 문제점 · 시사점과 개선방안	166
표 6-2. 자원환경과 유어계의 주요 업무 현황	175
표 6-3. 법령 제정에 따른 신규 · 강화되는 주요 업무 현황	176
표 6-4. 낚시 관련 사단법인 현황(중앙정부 등록 사단법인)	177
표 6-5.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안)	181
표 6-6. 낚시 관련 정보 제공 현황	185
표 7-1.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 · 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202
표 7-2.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 · 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한 로드맵	203
표 7-3. 자원 · 환경 · 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위한 역할 분담	204

표 7-4. 자원·환경·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위한 로드맵	205
표 7-5.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207
표 7-6.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위한 로드맵	208
표 7-7.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기반의 창출 위한 역할 분담 ..	209
표 7-8.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기반의 창출 위한 로드맵	210
표 7-9. 낚시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할 분담	211
표 7-10. 낚시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로드맵	212
부록 표 1. 미국의 낚시도구 관련 지출(2006)	229
부록 표 2. 미국의 낚시장비 관련 상세 지출(2006)	23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5
그림 2-1. 낚시산업의 분류체계도	13
그림 2-2. 낚시도구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	16
그림 2-3. 낚시도구 판매업체 현황(2010)	19
그림 2-4. 연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20
그림 2-5. 지역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21
그림 2-6. 낚시어선 연도별 이용객 수	23
그림 2-7. 지역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2010)	23
그림 2-8. 지역별 낚시어선 수입총액(2010)	25
그림 2-9. 낚시터 시설물의 종류	28
그림 2-10. 내수면 낚시터 및 유어장 분포도	30
그림 2-11. 낚시도구의 수출입 추이	34
그림 2-12. 낚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	35
그림 2-13. 낚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	36
그림 2-14. 낚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출입 비중(2010)	37
그림 2-15. 낚시도구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2010)	37
그림 2-16. 낚시도구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2010)	38
그림 3-1. 낚시용품산업의 국가별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위치	89
그림 3-2. 우리나라의 RCA 및 EPI 추이(HS9507)	91
그림 4-1.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 낚시잔교	98
그림 4-2. 마리나 및 어획물 처리시설	99
그림 4-3. 크리켓버킷 낚시잔교 리조트	100
그림 4-4. 포시즌 낚시리조트 조감도 및 시설	101
그림 4-5. 미국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흐름	102
그림 4-6. 미국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의 흐름	103

그림 4-7. 주정부 배분액의 사용 가능 분야	104
그림 4-8. 미국 주정부의 낚시면허세와 유어자원 회복 기금	107
그림 4-9. 일본 낚시인구의 연도별 추이	111
그림 4-10. 일본 낚시 참가율, 횟수 및 비용의 연도별 추이	112
그림 5-1. 낚시에 대한 호감도	147
그림 5-2. 낚시 경험 유무	147
그림 5-3. 향후 낚시 의향	148
그림 5-4. 낚시를 주로 즐기는 곳	149
그림 5-5. 1회 출조 시 평균 지출비용	150
그림 5-6. 낚시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	154
그림 5-7. 낚시 서비스의 문제점	154
그림 5-8. 낚시 저변 확대의 장애요인	155
그림 5-9.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	155
그림 5-10. 우수 낚시터 인증제 실시에 대한 의견	158
그림 5-11. 낚시인 인증제 실시에 대한 의견	159
그림 5-12. 다목적 낚시 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한 의견	159
그림 5-13. 낚시단체연합회 설치에 대한 의견	160
그림 5-14. 비용 분담에 대한 선호도	163
그림 5-15. 낚시비용(요금) 대비 비용분담금 지불 의향(소비자 조사)	163
그림 6-1.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의 목표	169
그림 6-2.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170
그림 6-3. 자원·환경·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방안	180
그림 6-4.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186
그림 6-5.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방안	190
그림 6-6. 낚시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194
부록 그림 1.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의 조직도	234
부록 그림 2.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및 낚시 마스터의 마크	237
부록 그림 3. 일본낚시진흥회의 낚시교육용 책자	239

부록 그림 4. 일본낙시진흥회의 호수·바다 밑 청소사업	240
부록 그림 5. 낙시인 선언의 내용	242
부록 그림 6. 낙시 매너 홍보를 위한 팸플릿과 스티커	242
부록 그림 7. 낙시진흥회의 낙시자료관 전경	243
부록 그림 8. 일본국제낙시쇼의 포스터	245
부록 그림 9. 리조트 낙시	247
부록 그림 10. 도시 내 호수 및 하천 낙시와 교외 하천 낙시터	247

Executive Summary

Measures for Added-value Creation of the Korean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Study Purpose

- The Act on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and Development was enacted in 2011, pa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as a new growth driver.
- The study aims to prepare basic materi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and effective policy supports as well as suggestion of development direction.

■ Problems in the Korean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Lack of safe and comfortable places for recreational fishing
- Conflicts over the use of waters and fisheries resources
- Under-developed regulations, system and managerial organizations for the industry
- Bureaucratic policies
- Lack of education and PR programs for sound recreational fishing activities

■ Economic Effec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An inter-industry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shows:
 -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has bigger backward linkage effect than forward linkage effect, which implies that it leads production of other industries.
 - KRW 1 increase in production of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leads to KRW 1.111 in production of other industries. KRW 1 billion in production induces employment of 6.6 people in other industries.
- An analysis o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UN trade statistics shows:
 - China is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recreational fishing gear market.
 - Korea lags behind in market share, growth rates and analyses on RCA and EPI indexes.

■ Added-value Creation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Goal: A leap forward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based on Global Industrialization

Detailed Goals	Major Plans
Stabl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 To improve low level regulations for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and development - To prepar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creational Fishing Development Basic Plan - To build recreational fishing statistics and a dedicated

	organization - To establish and support a private recreational fishing association - To introduce eco-tax for recreational fishing
Healthy Recreational Fishing Culture	- To introduce education, PR, recreational fishing level certification programs - To introduce the honorary guard system and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 To introduce multi-purpose education facility (education, exhibition and leisure activity) -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 at recreational fishing industrial portal
Recreational Fishing as Family Leisure Activity and High-grade Fishing Places	- To build differentiated recreational fishing places by improving amenities - To introduce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creational fishing facility and service - To build multi-purpose recreational fishing resorts
Income Base Creation for Recreational Fishing Villages by Relating to Fisheries Industry	- To build/manage resources with links to self-management fisheries - To expand recreational fishing places for income increase and improve the fishing environment - To introduce 100 high-grade recreational fishing places
Development as a Global Industry	- To develop eco-friendly recreational fishing gear and certification system - To introduce export support for recreational fishing gear manufacturers - To develop co-brands and standardized recreational fishing gear

■ Policy Suggestions

- Establishment of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Master Plan
- Policy foundation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 Utilization of self-management fisheries by relating to fisheries industry
- Cooperative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private recreational fishing organization
- Support fo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to expand the base for recreational fishing activities
- Active export based on export support programs
- Introduction of the eco-tax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낚시인구는 2008년에 652만 명(이희찬, 2010)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5년의 573만 명(이광남 외, 2005)에 비해 18.3%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등 신흥국의 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낚시용품의 수요도 증가하여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낚시용품의 수출은 1996년 4억 2,328만 달러(약 4,650억 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9,496만 달러(1,040억 원)로 15년 사이 77.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천만 달러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이러한 낚시도구의 수출입 구조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출되던 국산 낚시용품이 모두 국내 소비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 등 서비스업은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비해 사업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낚시 관련 단체의 추정에 의하면 낚시터 경영인의 연평균 개소당 매출액은 1억 2천만 원, 낚시어선업의 연평균 척당 매출액은 2천 3백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낚시터 환경 및 수산자원에 대한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상태이다. 즉 낚시추, 떡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낚시 대상 어족자원 감소 위험, 낚시인 안전사고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낚시 어획량은 약 23만 톤¹⁾으로 내수면·연근해 어획량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처럼 낚시인구와 다양한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정

1) 농림수산식품부, 낚시산업 발전 TF 회의자료.

책적 기반은 다수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나 발전을 위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결국 낚시산업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분산 집행되고 있고, 산업 발전이 정체되는 등 지속적 발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낚시터 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2009년에 40억 원이 지원되고 있던 것마저 2011년에는 3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낚시인 인식과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적 수요를 제도적 틀 내에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 3월 9일에 법률 제10458호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되면서 5개 부처 34개 법령을 통해 분산·관리되던 낚시산업을 통합한 발전 근거법이 탄생하였다.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 외에도 ‘육성’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낚시 관련 법률과는 다른 산업법적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동 법의 제정 목적은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낚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동 법 제 43조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2011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민·관·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낚시산업의 정부정책에 산업 육성이 추가됨으로써 낚시산업이 새로운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이 미비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낚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 정책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연구, 정책 기본방향의 설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제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낙시산업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통계정보 방안을 제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매 5년마다 시행될 ‘낙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의 대상인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은 ‘낙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동 법의 제2조(정의)에서는 낙시인, 낙시터업, 낙시어선업, 미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낙시도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제2조 1항에서는 낙시를 낙시도구 즉 “낙싯대와 낙싯줄·낙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의 ‘낙시진흥기본계획’에서는 낙시 관련 산업의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시도구와 낙시시설물 관련 산업을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낙시는 바다낙시와 민물낙시로 구분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명확한 분리가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구분하여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기존에 수행되었던 낙시면허제 등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 연구 결과가 많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낙시산업의 육성과 낙시서비스 제고

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낚시인,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를 비롯하여 낚시도구 생산 및 수출입 업자 등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낚시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낚시산업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여 낚시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과 무역경쟁력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은 미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을 대상으로 산업현황 및 법·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낚시인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낚시산업에서는 매출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설문하여 산업규모 추정과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하였다. 제6장은 이전 장에서 다양하게 검토된 현황과 사례,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 제언을 담았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현지 출장조사 및 세미나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외 국가 및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주요 조사자료의 유형은 정부보고서, 정책자료집, 통계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세미나 및 워크숍 발표자료, 업계보고서, 출장조사 자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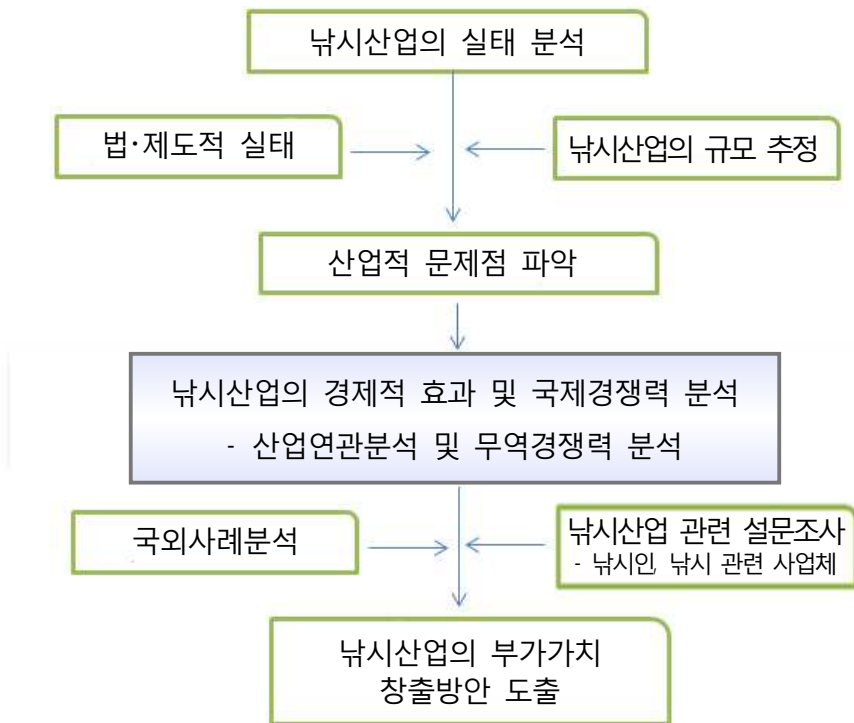
문헌조사는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문제점의 발굴과 관련된 내용, 낚시면허제 등과 관련된 관리 문제,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 법·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조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의 낚시산업 현황, 법·제도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 출장과 현지 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수행하였고, 중국은 문헌자료와 전화 인터뷰 등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산업규모 추정 및 문제점 파악, 실질적인 부가가치 향상 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낚시인 및 협회, 낚시용품 생산 및 판매업자, 수출업자, 낚시터업자 등이며, 전화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낚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가 자문단은 대학교수, 연구자, 관련 업계와 정책담당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 그림 1-1 | 연구의 추진체계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연구결과를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낚시면허제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연구

낚시면허제를 포함한 제도 연구가 처음 국내학술지에 등장한 것은 2002년으로 이상고(2002)가 처음이다. 동 연구에서는 해면과 내수면 낚시행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였고,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낚시가능 수면적, 낚시산업, 낚시용품업 등에 대한 현황조사,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실태 분석, 낚시면허제의 이론적 검토를 행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후 조계근(2002)이 강원도 내수면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쓰레기봉투 사용제, 환경감시원제도 등을 연구하였다. 이후 이상고(2003), 이상고·박정석(2003), 이광남(2003)은 낚시면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수행하였다. 정명생 외(2004)는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4개국에 대한 여가낚시 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여가낚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연구였다면, 이후의 연구는 낚시면허제를 근간으로 한 법제화 방안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이광남 외(2005)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 개발 및 시행방안을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낚시 관리 선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낚시 관리의 제도적 기본체계 분석, 낚시 관

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 낚시 관련 산업실태, 낚시 관리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한국형 낚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 및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 수립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함태성 외, 2006)에서 낚시 관리제 도입 등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법의 골자를 만들었다. 동 연구는 낚시행정상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및 어족자원 보호, 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낚시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낚시 관련 법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그리고 법제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안한 법의 명칭은 현재와는 다소 다른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만 없을 뿐 대부분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2) 어촌 소득 증대방안과 낚시 안전에 대한 연구

낚시산업과 어촌의 소득 증대를 최초로 연결시킨 연구는 류정곤(2005)이다. 동 연구는 해양수산자원 이용의 다각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어업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레포츠피싱을 어업 및 어촌경제와 연계하여 어가소득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지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하여 레포츠피싱의 개념 및 유형분석, 국내 레포츠피싱의 현황, 수요분석 및 예측,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고(2008)는 해수면 축제식 양식장의 낚시터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전어 양식업의 쇠퇴로 인한 유허 내수면 양식장을 유료 낚시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좁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어촌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환경과 낚시안전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영봉(2006)은 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을 조사·분석하여 낚시추, 미끼 및 집어제의 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광남(2009)은 낚시용 수상구조물의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전까지 낚시용 수상구조물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동 연구는 내수면 및 해수면에 설치하는 낚시용 수상구조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환경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상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으로서 전국 내수면 및 해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낚시용 수상구조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상구조물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동 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합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낚시터 수상좌대의 하부 구조물(부유체, 구조, 계류시설)과 상부 구조물(구조, 낚시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안전시설)에 대해 시설기준을 제시하였다.

(3) 낚시인구 및 산업규모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낚시인구를 최초로 추정한 연구는 배상우(1992)로 약 400만 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1995년에 환경부의 낚시면허제 추진계획(안)에서는 한국갤럽의 표본조사를 통해 325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조계근(2002)은 5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이광남 외(2005)는 2004년에 한국갤럽을 통해 3회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 성인 4,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낚시인구가 573만 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 연구의 낚시인구 추정은 출조빈도를 기

준으로 연간 3~4회 출조하는 잠재낙시인구와 일반낙시인구, 전문낙시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낙시인구에 대한 연구는 이희찬(2010)으로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총 3,081명의 유효표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낙시인구가 652만 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희찬의 연구에서 낙시인구는 조사시점 직전 1년 동안 낙시를 1회 이상 참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낙시산업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낙시인에 대한 출조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박철형(2005)은 출조빈도함수의 설정을 통해 유어낙시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조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행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유어낙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로서 김도훈(2005)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표희동 외(2008)는 바다 낙시에 한정하여 낙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희찬(2010)은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유어낙시인구, 조회량, 지출비용을 바탕으로 낙시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여 낙시인구 652만 명, 총 조회량 6억 4,334만 마리, 총 출조비용은 5조 2,336억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표 1-1 | 낚시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구 분	연구자	주요 내용
낚시면허제	이상고(2002)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한정하여 연구
	조계근(2002)	낚시면허제, 쓰레기봉투 사용제, 환경감시원제도 등
	이상고 외(2003)	낚시면허제 도입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이상고(2003)	
	이광남(2003)	
	정명생 외(2004)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4개국에 대한 여가낚시 관리 제도에 대해 분석
	이광남 외(2005)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 개발 및 시행 방안 연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연구	함태성 외(2006)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어촌 소득 증대방안	류정곤(2005)	어업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레포츠피싱을 어업 및 어촌경제와 연계 연구
	이상고(2008)	해수면 축제식 양식장의 낚시터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환경과 낚시 안전	조영봉(2006)	낚시추, 미끼 및 집어제의 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본 설정방안을 제시
	이광남(2009)	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산업규모 추정	배상우(1992)	400만 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
	환경부(1995)	한국갤럽의 표본조사를 통해 325만 명으로 추정
	조계근(2002)	낚시인구를 500만 명으로 추정
	이광남 외(2005)	낚시인구를 573만 명으로 추정
	박철형(2005)	출조빈도함수 설정을 통해 유어낚시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조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김도훈(2005)	미국 사례 분석
	표희동 외(2008)	바다낚시에만 한정된 잉여 추정
	이희찬(2010)	낚시인구를 625만 명으로 추정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낙시산업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선진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법·제도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낙시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낙시면허제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제적 효과분석과 산업규모를 추정한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낙시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낙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중심이 되었던 낙시산업의 관리보다는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낙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제 2 장 낚시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으로 낚시산업에 대한 정책근거는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낚시산업의 실태에 대한 부분은 명확치 않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낚시산업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각 주체별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략적인 산업규모를 추정해 보았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낚시산업의 분류

낚시산업은 아직 명확한 개념과 분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새로이 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개념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법에서는 제43조의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에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1년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낚시산업발전 TF’에서는 크게 낚시 도구와 낚시 시설물 관련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낚시산업발전 TF에서 분류한 세부 내용을 보면, 낚시도구는 낚시대·줄·추 등 낚시와 직접 관련된 도구와 가방·의류 등 간접 도구, 생미끼·사료 등 생물 기반 도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낚시시설물은 좌대·방갈로·펜스 등 안전·편의 시설 설치 또는 낚시터 전체 구조에 대한 디자인·조경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낚시산업발전 TF의 분류에서는 수단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적당하지만, 산업 규모를 추정하거나 형태별 육성을 위한 분류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림 2-1 | 낚시산업의 분류체계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낚시산업발전 TF

| 표 2-1 | 낚시산업의 주체별 분류

구 분	업 종	내 용	비 고
낚시 도구	제조업	대·줄·추 등 직접 관련제품과 가방·의류 등 간접 관련제품, 미끼·사료 등 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판매업	인터넷 쇼핑, 낚시터 소매점, 도시 소매점	
	수출입업	낚시도구를 수출입하는 업체	
낚시 시설업	낚시터업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법 제2조
	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어선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는 영업	법 제2조
기 타	낚시어류공급업	낚시용 어류의 양식 및 수입을 하는 업체	
	기타 서비스업	전문지, 케이블TV, 인터넷 정보서비스, 낚시터 요식업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낚시산업발전 TF

그러나 기타 연구 등에서 따로 분류된 바가 없고,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편의를 위해 낚시산업발전 TF의 분류를 기준으로 일곱 가지로 나누었다. 즉 낚시도구 제조업, 낚시도구 판매업,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도구 수출입업, 낚시어류 공급업, 기타서비스업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분류 중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낚시어류 공급업,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섯 가지 업태를 살펴보았다.

2.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실태

1) 낚시도구 제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낚시도구는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등의 도구를 의미하며 낚시도구 제조업은 이러한 도구를 생산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낚시도구는 낚싯대, 줄, 추, 바늘, 떡밥 등 수많은 제품이 존재하지만 낚시 행위와의 직·간접적 연관성에 따라 직접 관련 도구, 간접 관련 도구, 미끼²⁾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관련 도구는 낚싯대, 받침대, 낚싯줄, 낚시추, 루어, 릴, 찌, 바늘 등이다. 그리고 간접 관련 도구는 낚시복, 낚시가방, 아이스박스 등이다. 또한 미끼와 관련해서는 떡밥, 집어제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2007년도에 작성된 통계청의 생산 관련 국가 통계와 관세청 수입액 규모를 근거로 국내 시장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 표 2-2 | 낚시도구의 종류

구 분	명 칭	주요 제품
직접 관련	낚싯대	민물, 중층·내림, 바다, 배낚시, 원투·찌낚시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으로 분화
	받침대	여러 낚싯대를 한번에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
	낚싯줄	나일론사, 카본사, 합사 등
	낚시추	무쇠, 납, 세라믹, 철 등
	루어	웜, 미노우 등 물고기를 유인하는 제품
	릴	스피닝릴, 베이트릴, 수동·전동릴 등
	찌	민물, 중층·내림, 전자, 바다찌 등
	바늘	민물, 바다, 루어 등
간접 관련	의류	낚시복 및 낚시조끼
	가방	낚싯대 및 기타 도구 보관용 가방
	기타 도구	구명복, 아이스박스, 의자, 파라솔, 모자, 어군탐지기, 집어등, 첨가제 등
미끼 등	낚시용 떡밥	집어제 및 떡밥
	크릴새우	미끼 또는 집어용
	기타	지렁이, 새우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 발전 계획(초안), 2011

<표 2-3>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낚싯대, 낚시릴, 낚싯바늘, 낚시인조찌, 기타 낚시용구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사업체는 총 63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 제조업체에 의한 2007년도 생산액은 총 1,623억 원이었다.

| 표 2-3 |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 생산규모

구 분	사업체 수	생산액(백만 원)
낚싯대	23	60,118
낚시릴	16	50,521
낚싯바늘	8	20,074
낚시인조찌	6	5,962
기타 낚시용구	10	25,586
합 계	63	162,261

주: 10인 이상 사업체 수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한편, 관세청 자료(<표 2-4> 참조)에 따르면 낚시도구와 관련된 2007년도 수입액은 약 7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국내 생산액과 수입액을 합한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의 시장규모는 대략 2,343억 원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낚시도구 제조업체가 대체로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가 1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낚시도구업의 생산액이 파악된다면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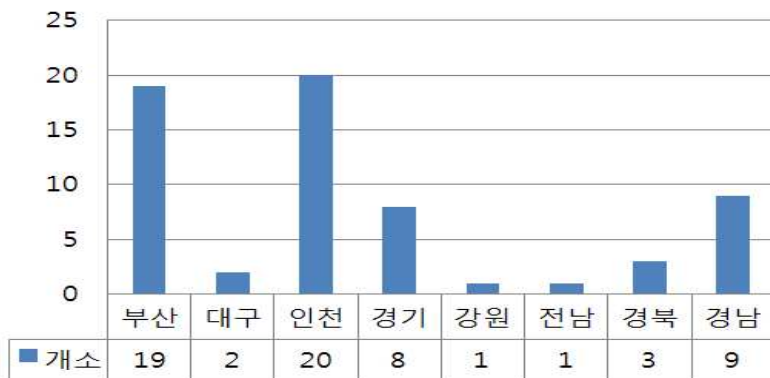
| 표 2-4 | 낚시도구 수입액(2007)

품목 코드	품목명	수입액
HS9507	낚싯대 등 및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63,750달러(약 720억 원)

주: HS9507은 낚싯대·낚싯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임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

<그림 2-2>는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2 | 낚시도구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총 63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인천에 분포해 있고 19개 업체가 부산에 분포해 있다. 그리고 경남에 9개 업체, 경기도에 8개 업체가 분포해 있다. 따라서 전체 업체의 89%가 인천·경기권과 부산·경남권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에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낚시도구업체(직접, 간접, 미끼) 70개소를 대상으로 주력 제품, 종업원 수, 공장 규모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제조업체의 주력 제품은 낚시대로서 전체 업체의 34.3%를 차지하였다.

| 표 2-5 | 낚시도구 제조업체 수 및 주력 제품

주력 제품	업체 수(개소)	비중(%)
토탈(종합 생산)	9	12.9
낚시대	24	34.3
찌	12	17.1
가 방	3	4.3
받침틀	6	8.6
떡 밥	3	4.3
릴	3	4.3
보 트	3	4.3
기 타	7	10.0
합 계	70	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

상기 70개 도구업체의 종업원 수와 공장 규모는 <표 2-6>과 같다. 조사 대상인 전체 70개 업체 중 48.6%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종업원 수 측면에서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장 규모 면에서도 67.1%에 해당하는 47개 업체가 300평 이하로 나타나 우리나라 낚시도구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는 소상공인 그리고 10~50명 미만일 경우는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체의 거의 절반이 소상공인, 그리고 38.5%가 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독자적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외 낚시박람회 참여 및 홍보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친환경 낚시도구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인증 등은 현재의 영세한 낚시도구 제조업체 단독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표 2-6 | 낚시도구 제조업체 종업원 수 및 공장규모

종업원 수			공장규모		
종업원 수(명)	업체 수(개소)	비중(%)	공장규모(평)	업체 수(개소)	비중(%)
10명 미만	34	48.6	50평 미만	6	8.6
10~20	12	17.1	50~100	5	7.1
20~30	8	11.4	100~200	26	37.1
30~40	4	5.7	200~300	10	14.3
40~50	3	4.3	300~400	6	8.6
50~100	3	4.3	400~500	2	2.9
100명 이상	6	8.6	500~1,000	7	10.0
-	-	-	1,000평 이상	8	11.4
합 계	70	100.0	합 계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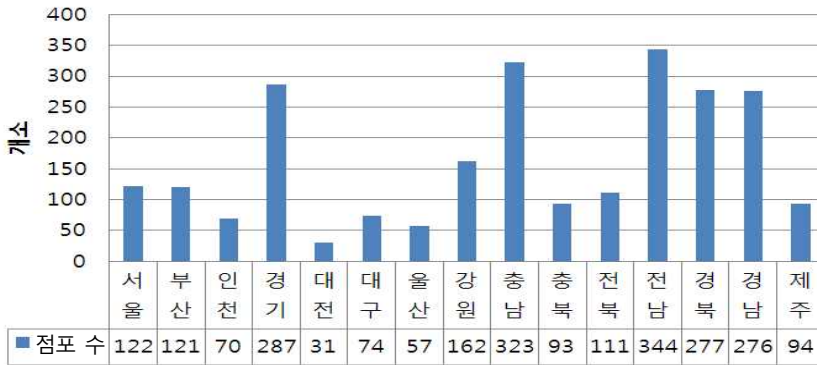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

2) 낚시도구 판매업

낚시도구의 유통 및 판매는 대형 소매점과 낚시터 인근의 판매점(소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 도매업체가 대형 소매점을 대신했으나 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2000년 이후 그 기반이 붕괴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 소매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낚시도구 판매점은 주로 낚시터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바닷가에 위치한 판매점은 출조 알선 및 각종 관련 정보를 낚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 전국의 낚시도구 판매업체는 2,442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남이 344개소로서 전체의 14.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충남이 323개소, 경기 287개소, 경북 277개소, 경남 276개소로 나타났다.

낚시도구 판매업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것은 판매업의 조직화가 미흡하여 판매업의 규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낚시산업협회가 낚시도구 제조업과 유통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조직되었다.



| 그림 2-3 | 낚시도구 판매업체 현황(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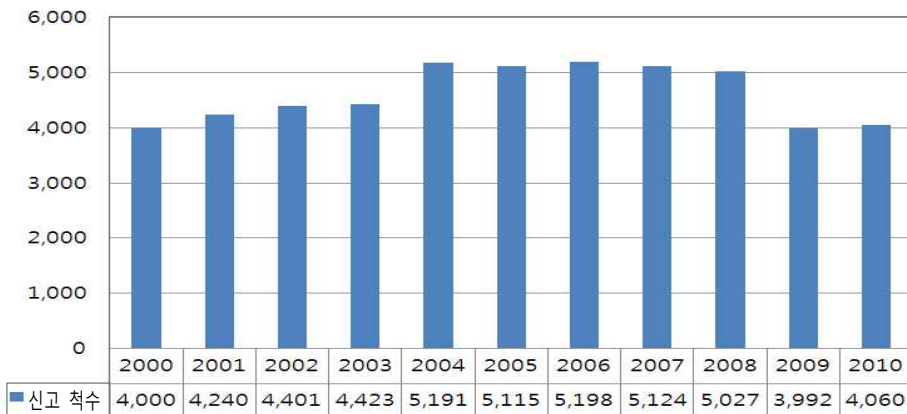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

3) 낚시어선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낚시어선업은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여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또한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일컫는다.

<그림 2-4>는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를 나타낸 것이다.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를 보면, 2000년 4,000척에서 2006년 5,198척까지 계속 증가한 후 2007~2008년에는 횡보하다가 2009년부터는 4,000척 내외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강원지역과 충남지역에서의 신고 척수 급감에 기인하고 있는데, 낚시어선업 경쟁 심화, 유가 급등, 유류 유출 사고의 피해로 인해 영세 낚시어선이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한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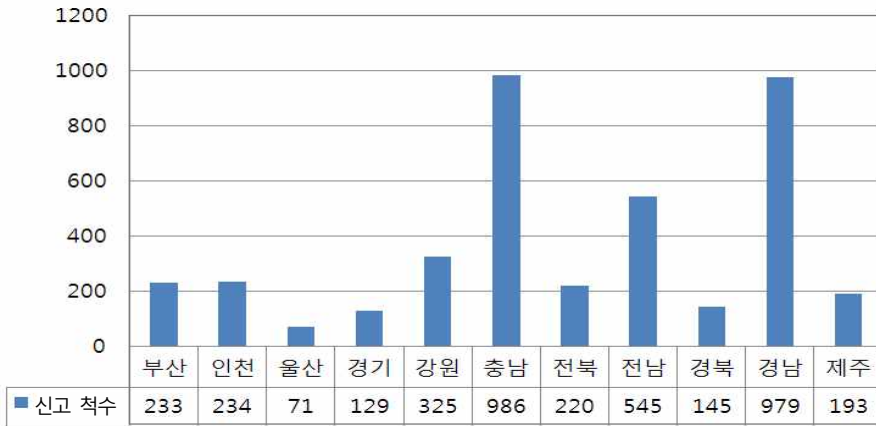


| 그림 2-4 | 연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한편, 2000년 이후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연근해 어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면허 및 허가제 신규처분 억제 정책에 따라 낚시어선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 향후 낚시어선의 신고 건수 또한 감소 내지 현행 수준의 유지가 전망된다.

<그림 2-5>는 2010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신고 척수는 충남과 경남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충남이 986척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남이 979척(25.7%)이었다. 그리고 전남이 545척, 강원이 325척, 인천이 234척으로 나타났다.



| 그림 2-5 | 지역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자료: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다음으로 <표 2-7>은 2010년 하반기에 신고된 낚시어선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톤수별로 보면, 총 4,060척 중 1~2톤 미만이 814척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4~5톤 미만이 776척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고, 2~3톤 미만이 674척, 16.6%, 그리고 3~4톤 미만이 659척, 1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이 전체 4,060척 중 3,009척으로 74.1%를 차지하여 낚시어선업은 대체로 소규모 어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외기³⁾ 설치 어선은 2~3톤 미만이 259척으로서 가장 많고, 5톤

3) 배의 바깥에 달린 모터나 엔진을 의미함.

이상으로 갈수록 선외기의 사용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외기는 5톤 이하의 소형어선에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7 | 2010년 하반기 낙시어선 규모별 신고 척수

단위: 척, %

구분	계	비중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060 (1,143)	100.0 (28.2)	233 (85)	234 (19)	71 (44)	129 (33)	325 (42)	986 (365)	220 (67)	545 (256)	145 (4)	979 (228)	193 (0)
1톤 미만	86 (69)	2.1 (1.7)	4 (2)	3 (2)	2 (1)	0	9 (8)	17 (16)		46 (38)	3 (1)	2 (1)	
1~2	814 (527)	20.0 (13.0)	86 (58)	19 (2)	29 (20)	8 (8)	51 (22)	91 (83)	27 (9)	198 (171)	28 (3)	270 (151)	7
2~3	674 (259)	16.6 (6.4)	37 (17)	28 (6)	15 (12)	10 (10)	112 (7)	127 (105)	27 (16)	79 (43)	23	200 (43)	16
3~4	659 (170)	16.2 (4.2)	32 (5)	39 (8)	17 (11)	19 (10)	79 (5)	166 (85)	25 (16)	37 (2)	14	166 (28)	65
4~5	776 (80)	19.1 (2.0)	44 (2)	51 (1)	5	33 (5)	38	238 (56)	42 (10)	53 (2)	45	178 (4)	49
5~6	116 (3)	2.9 (0.1)	3	10		2	12	45 (1)	7 (2)	3	5	17	12
6~7	249 (16)	6.1 (0.4)	2	16		8	14	102 (2)	38 (14)	8	9	35	17
7~8	234 (9)	5.8 (0.2)	6	20	1	14	4	99 (9)	24	27	9	25	5
8~9	53 (2)	1.3 (0.0)	3	6		3	0	9 (2)	2	10	4	12	4
9~10	399 (8)	9.8 (0.2)	16 (1)	42	2	32	6	92 (6)	28	84	5	74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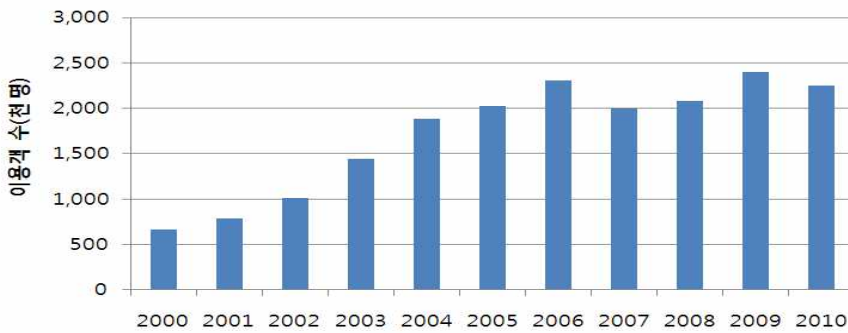
주: () 안은 선외기 설치어선 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그림 2-6>은 연도별 낙시어선의 이용객 수를 나타낸 것이다. 낙시어

선 이용객 수는 2000년 66.7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40.4만 명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 낚시어선 이용객은 22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5%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봄철의 날씨가 평년에 비해 춥고 수온 또한 낮아 낚시어선의 출조에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의 증가 패턴을 보면, 2000년에는 66.7만 명이었는데 최고 정점을 기록한 2009년에는 240.4만 명으로 조사되어 동 기간 동안 3.6배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기상 여건 악화를 감안한다면 낚시어선업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6 | 낚시어선 연도별 이용객 수



| 그림 2-7 | 지역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20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그림 2-7>은 2010년도의 지역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적으로 224.8만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 충남이 42.6만 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남이 41.5만 명으로 18.4%를 차지하였고, 경남이 32.9만 명으로 14.6%를 차지하였다.

<표 2-8>은 낚시어선의 수입액을 나타낸 것이다. 낚시어선업 전체 수입액은 2000년에 20,757백만 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6,122백만 원으로 5.6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낚시어선 척당 수입액은 2000년에는 5,189천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8,601천 원으로 무려 5.5배나 급증하였다. 동 기간 동안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3.4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척당 수입액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도입된 낚시어선제도는 본래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환경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겸업 내지 전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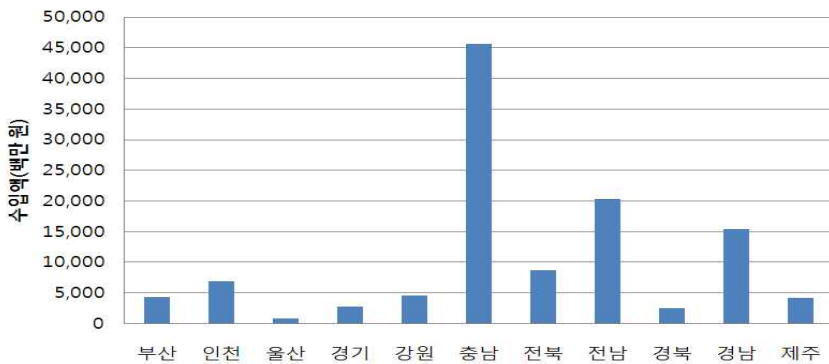
표 2-8 | 낚시어선 수입액

연 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수입총액 (백만 원)	20,757	28,976	54,326	59,561	83,775	103,764	116,122
신고 척수(척)	4,000	4,401	5,191	5,198	5,027	3,992	4,060
척당 수입액 (천 원)	5,189	6,584	10,465	11,458	16,665	25,993	28,60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

<그림 2-8>은 지역별 낚시어선의 수입총액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충남이 455.8억 원으로 가장 높는데, 전체 수입총액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남이 203.2억 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

이 154.3억 원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하였다. 상기 3개 지역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충남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낚시어선 수와 낚시이용객 수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용객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갯바위 이동보다는 선상낚시 이용객이 많아 수입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8 | 지역별 낚시어선 수입총액(20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보고”, 2011, p. 4

<표 2-9>는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 낚시어선 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에는 충돌 4건, 좌초 6건, 침몰 3건 등 선박 관련 사고가 13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충돌 2건, 좌초 4건 등 사고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인명사고는 2006년 14건에서 2008년에는 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망 1건과 부상 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낚시어선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선박 및 항해장비 등이 발달하면서 장비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어선의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 어선에 의존하고 있고 우수한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경쟁, 야간의 무리한 운항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0>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타를 제외할 경우 미신고 영업이 전체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지자체 및 해경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낚시객들이 아직까지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과속 및 음주 운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객들은 낚시어선에서의 낚시공간 확보, 편의시설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표 2-9 | 낚시어선 안전사고 현황

구 분	선박피해(건)					인명피해(명)	
	소 계	충 돌	좌 초	침 물	기 타 (추락 등)	소 계	사망·실종· 부상
2006	13	4	6	3	-	14	14
2007	6	2	4	-	-	3	3
2008	8	4	3	1	-	-	-
2009	10	5	3	-	2	2	2
2010	7	2	4	-	1	7	사망1/부상6

| 표 2-10 |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미신고 영업	정원 초과	금지 구역	음주 운항	인명구조 장비 미비	출·입항 미신고	기 타 (과태료 등)
2007	1,037	47	46	36	5	18	52	833
2008	861	42	71	34	4	13	68	629
2009	571	68	39	30	2	12	38	382
2010	514	74	42	48	1	41	54	2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보고”, 2011, p. 5

4) 낚시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3장에서 낚시터업의 허가·허가기준·허가 유효기간·허가 취소, 수면 등 이용의 협의, 낚시터업의 등록·등록기준·유효기간·등록 취소,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낚시터업의 승계, 폐쇄조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는 낚시터업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는 낚시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설물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간적 구분에 따르면 바다, 바닷가, 저수지, 호수, 댐 등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바다, 바닷가, 내수면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시설물별로는 크게 부유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유식은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떠 있는 형태이며, 고정식은 파일이나 기타 구조물로 지반에 고정된 형태이다.

또한 낚시터는 시설물의 특징에 따라서 방갈로와 좌대로 구분할 수 있다.⁵⁾ 여기서 방갈로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동안 숙식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어진 방갈로를 의미한다.⁶⁾ 방갈로는 시설물 내에서 숙식이 가

4)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

5) 국립수산물과학원, 「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2009, p. 16.

능하여 편리하면서도 편안한 낚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방갈로를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갖춘 낚시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설 또한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낚시를 위하여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좌대는 낚시를 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를 의미한다.



<내수면 시설물(부유식 수상방갈로, 고정식 수상방갈로, 연안(접지)좌대)>



<해면 시설물 (고정식 잔교형, 해상펜션 유형의 수상방갈로, 바지형 낚시터)>

| 그림 2-9 | 낚시터 시설물의 종류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2009. p. 74

좌대에는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수상좌대, 연안좌대, 잔교좌대 등으로 세분화된다. 한편, 방갈로는 내수면과 해면 공히 사용되고 있지만 좌대는 잔교좌대를 제외하면 파도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서 주로 내수면에서 많이

6)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방갈로(bungalow)는 처마가 깊숙하고 정면에 베란다가 있는 작은 단층 주택을 의미한다. 본래 방갈로는 인도 벵골지방의 독특한 주택 양식으로서 풀이나 기와로 지붕을 인 목조건물을 지칭한다. 그리고 좌대(座臺)는 기물을 받쳐서 얹어 놓는 대, 즉 받침대를 의미한다.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낚시터 시설물이 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1조에서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서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시설 및 안전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2-11 | 해면 및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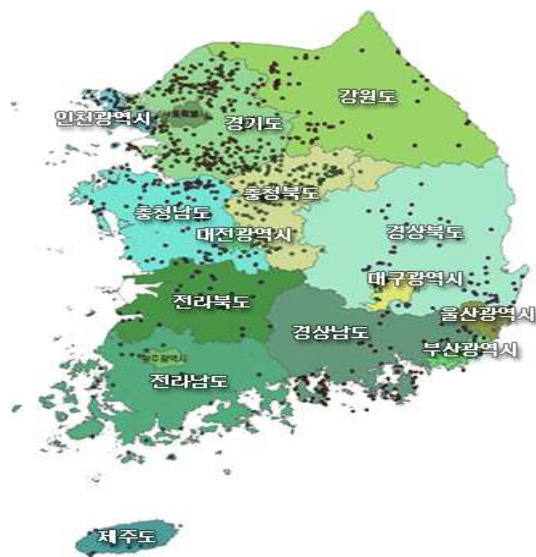
구 분		특 징	설치장소	이동여부	이용방법
방 갈 로	수상방갈로	숙식 가능	수상	이동 가능	선박이용
	방갈로	숙식 가능	육상	고정식, 이동식	도보이용
좌 대	수상좌대	-	수상	이동 가능	도보이용
	접지좌대	1인용, 다인용 구조물	연안 물 위	고정식	-
	연안좌대	1인용, 다인용 구조물	육상	고정식	도보이용
	잔교좌대		육지와 연결, 수상	이동 가능	선박, 도보이용

자료: 국립수산물학원, 「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2009, p. 16

낚시터는 또한 관리 유무에 따라 관리 낚시터와 비관리 낚시터로 구분
이 가능하고, 낚시행위에 대한 비용 지불에 따라 유료 낚시터와 무료 낚시
터로 구분이 가능하다.⁷⁾ 관리 낚시터는 관리를 통해 낚시 장소를 인위적으
로 제공하는 낚시터이다. 반면, 비관리 낚시터는 바다·강·저수지·계곡 등
자연낚시터와 갯바위·방파제·항만 등 본래 낚시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되
었지만 낚시에 이용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낚시터는 개개의 낚시터
범위와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워 낚시터의 숫자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7) 농림수산식품부,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 발전 계획(초안)”, 2011, p. 9.

<그림 2-10>은 우리나라 관리 낚시터(유어장 및 내수면 낚시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경기도의 분포밀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도권의 인구를 중심으로 내수면 낚시터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그림 2-10 | 내수면 낚시터 및 유어장 분포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표 2-12>는 우리나라 관리 낚시터와 관련된 법령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표 2-12 | 우리나라 관리 낚시터 운영 현황

구 분		관련 법령	제 도	현 황
바다 바닷가	유어장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수산업법)	지정	148개소(2009, 체험어장 포함)
내수면	내수면 낚시터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	696개소(2009)
		미신고 낚시터: 543개소(한국낚시업중앙회 추정, 20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

국내의 관리 낚시터에는 바다와 바닷가에서 시설된 유어장과 내수면에 위치한 내수면 낚시터가 있다. 유어장은 ‘수산업법’에 근거하며 내수면 낚시터는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유어장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면허·허가 받은 어업 중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유어장은 유료 낚시터와 체험어장으로 구분된다.

2009년 우리나라의 유어장 지정 현황을 보면 총 14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료 낚시터는 총 82개소로 집계되었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58개소(589.2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14개소, 전북 4개소, 충남 3개소이며 경기, 강원, 제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3 | 유어장 지정 현황(2009. 12.)

단위: 개소, ha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8개소 (2,408ha)	1 (18.0)	1 (2.0)	16 (445)	3 (253.0)	21 (108.9)	8 (73.7)	19 (291.6)	2 (4.6)	68 (955.8)	9 (256.0)
유료낚시터	82개소 (866ha)	1 (18.0)	1 (2.0)	(-) (-)	(-) (-)	3 (0.3)	4 (21.5)	14 (234.1)	1 (1)	58 (589.2)	(-) (-)
체험어장	66개소 (1,542ha)	(-) (-)	(-) (-)	16 (445)	3 (253.0)	18 (108.6)	4 (52.2)	5 (57.5)	1 (3.6)	10 (366.6)	9 (25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표 2-14>는 우리나라 내수면 낚시터의 허가 및 신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말 허가 및 신고를 거친 우리나라의 전체 낚시터는 696개소, 6,449ha이다. 이 중 허가된 낚시터는 내수면의 공공용 수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총 494개소, 6,368ha이다. 그리고 신고된 낚시터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총 202개소, 81ha

로 나타났다.

낙시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에 총 696개소 중 255개소가 분포하여 개소 면에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북이 125개소로 18.0%를 차지하였고, 충남이 114개소로 16.4%를 차지하였다. 면적 측면에서는 경기가 2,444.5ha로 전체의 37.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충남이 2,088.9ha로서 전체의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 내수면 낙시터 허가 및 신고 현황(2009. 12.)

단위: 개소, ha

구 분	계		허 가		신 고	
대구	7	(6.9)	7	(6.9)	-	(-)
인천	25	(594.5)	20	(591.5)	5	(3.0)
대전	2	(1.2)	1	(1.0)	1	(0.2)
울산	2	(1.3)	1	(1.2)	1	(0.1)
경기	255	(2,444.5)	178	(2,417.1)	77	(27.4)
강원	53	(197.4)	38	(191.0)	15	(6.4)
충북	125	(880.0)	98	(870.0)	27	(10.0)
충남	114	(2,088.9)	101	(2,079.2)	13	(9.7)
전북	23	(96.6)	3	(90.2)	20	(6.4)
전남	18	(11.0)	4	(7.4)	14	(3.6)
경북	53	(114.5)	38	(106.3)	15	(8.2)
경남	19	(12.2)	5	(6.2)	14	(6.0)
계	696건	(6,449ha)	494건	(6,368ha)	202건	(81ha)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낙시터는 이상과 같이 허가 및 신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미신고된 무허가 낙시터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낙시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8월에 우리나라 전체 낙시터 1,350개소 중 41%에 해당하는 563개소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업주 및 주소 관련 정보가 파악되고 있는 낙시터에 대한 통계이며, 만약 이러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낙시터까지 합산하면 전국의 내수면 낙시터는 2,000개소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내수면 낚시터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낚시대회를 가장한 사행성 도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낚시대회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입장료 및 참가비로 판돈을 만들어 이를 몰아 주는 방식의 낚시터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에 무허가 낚시터가 난립해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와 관련한 주요 이슈로서 수면 임대기간 및 임대료, 낚시터 시설물 확대 및 양성화 기준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당장 2012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터업의 허가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지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수면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낚시터업 경영의 불안정 및 투자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이용료의 적정성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수면 이용료가 수익이 아닌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수면어업계 등의 공동 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경비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내수면 낚시터의 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어민의 민원,⁸⁾ 낚시터 등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낚시터 허가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허가 기간 종료 후 수질오염 방지 및 낚시터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면 이용료는 적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양자 간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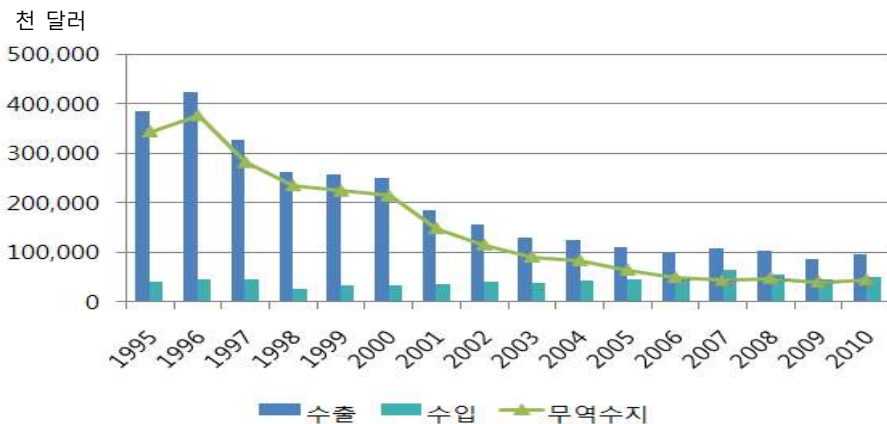
그 밖에도 낚시터업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낚시터 시설물 확대 및 양성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낚시터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8) 특히, 자연 낚시터의 경우 수면 및 수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내수면 어업인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여성 및 어린이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낚시터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성인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편의성 부족 외에도 가족 전체가 가서 즐길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진 낚시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낚시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낚시도구 수출입업

낚시도구의 수출과 수입은 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낚시도구의 수입은 제조업체가 수입 병행, 인터넷을 통해 수입, 그리고 소규모 유통회사가 수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수입업체별로는 상세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가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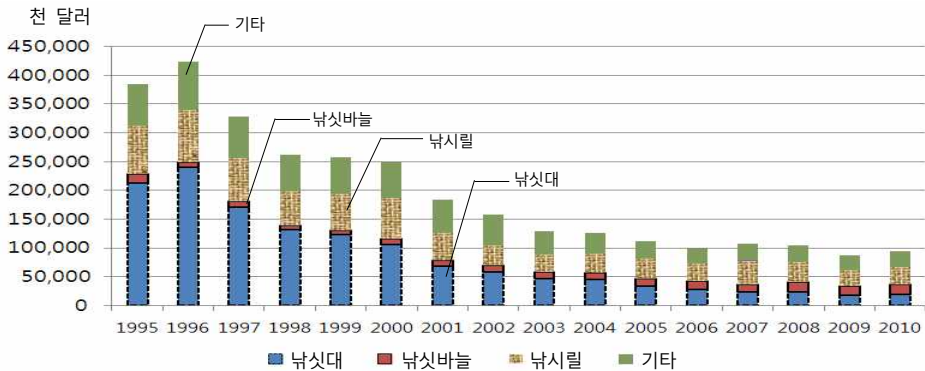
| 그림 2-11 | 낚시도구의 수출입 주이

주: HS9507는 낚시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그림 2-11>은 낚시도구의 수출입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낚시도구 수입금액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출은 199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 423,284천 달러(약 4,650억 원)이던 수출규모는 2010년에는 94,957천 달러(1,040억 원)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1996년과 비교하여 2010년의 수출액은 거의 1/4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낚시도구 제조업은 과거 수출산업으로서 커다란 기대를 모았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낚시도구의 수출은 15대 수출 육성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산업적 중요성이 컸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 없이 주문자상표 부착(OEM) 및 저가품 생산에 의존한 결과, 최근 들어 중국 제조업체의 저가품 공세에 밀리면서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옮겨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낚시도구 수출은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그림 2-12 | 낚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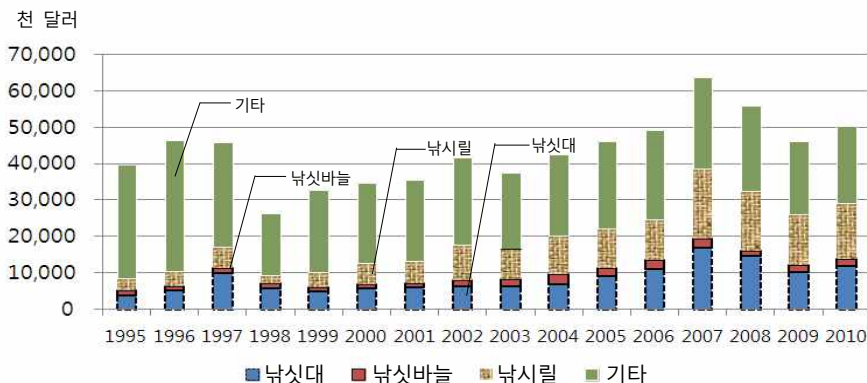
주: 낚시대(HS950710), 낚시바늘(HS950720), 낚시릴(HS950730), 기타(HS9507109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그림 2-12>는 낚시도구의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5년과 비교하면 2010년도 낚시대 수출은 212,072천 달러에서 18,755천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여 거의 1/10 이하로 수출 금액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산 낙싯대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기 때문이다. 낙싯대와 마찬가지로 낙시릴의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거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낙싯바늘은 16,482천 달러에서 18,101천 달러까지 오히려 증가하여 1995년 대비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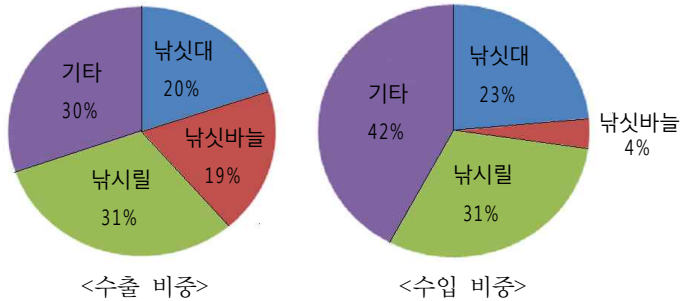
<그림 2-13>은 낙시도구의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5년과 비교하면 2010년도 전체 낙시품목은 39,851천 달러에서 50,392천 달러까지 약 26%가 증가하였다. 이 중 낙시릴의 수입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는데 3,436천 달러에서 15,405천 달러까지 약 4.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낙싯대는 수입 측면에서는 동 기간 동안 3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내 시장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증가세가 큰 낙싯바늘은 수입 면에서는 1.7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타 품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3 | 낙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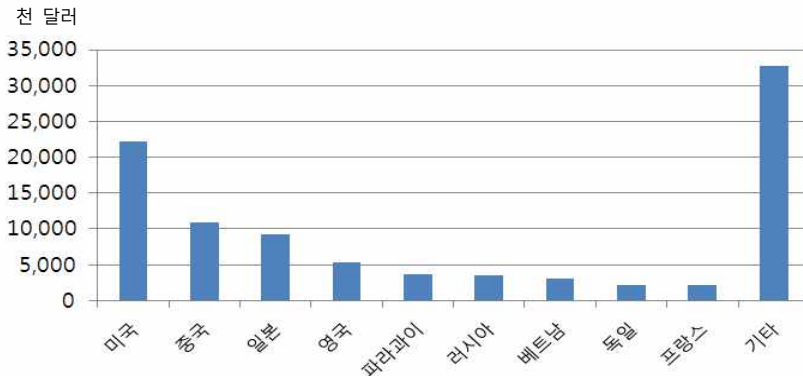
<그림 2-14>는 2010년도 낚시도구의 세부 품목별 수출입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수출품목을 보면 낚시릴이 3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낚시대 20%, 낚싯바늘 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품목을 보면 낚시릴이 3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낚시대 23%, 낚싯바늘 4%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4 | 낚시도구 세부 품목별 수출·입 비중(201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그림 2-15>는 2010년 낚시도구의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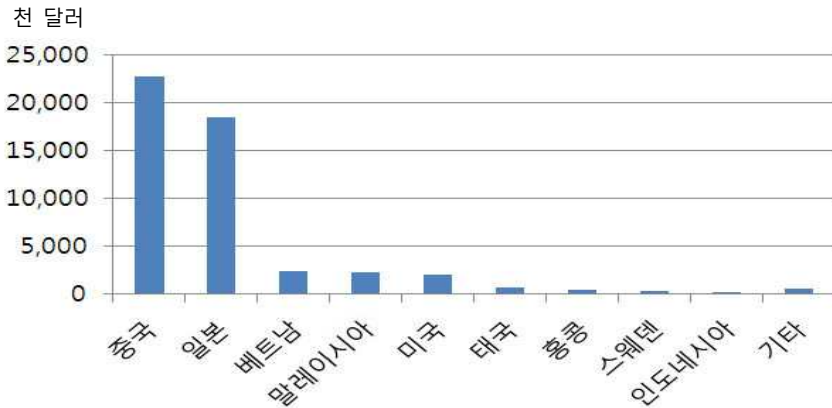


| 그림 2-15 | 낚시도구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201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으로서 미국에 22,274천 달러(23.5%), 중국에 10,896천 달러(11.5%), 일본에 9,179천 달러(9.7%), 영국에 5,330천 달러(5.6%)을 수출하였다.

<그림 2-16>은 2010년 낙시용품의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6 | 낙시도구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201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표 2-15>는 낙시도구의 2010년도 지역별 수출금액 및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 표 2-15 | 지역별 수출금액 및 비중(2010)

단위: 천 달러, %

지 역	부 산	경 남	인 천	경 기	소 계	전 국
수출액	18,981	21,099	19,222	30,468	89,770	94,957
비 중	20.0	22.2	20.2	32.1	94.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수출금액 면에서 경기도는 30,468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금액의 32.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남이 21,099천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대비 22.2%를 차지하였고, 인천과 부산이 각각 19,222천 달러, 18,981천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대비 각각 20.2%와 20.0%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기 4개 지역은 전국 수출금액의 94.5%를 차지하여 동 지역에 낙시도구 수출업체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지역별 수입금액 및 비중을 보면 <표 2-15>와 같다. 수입은 경기와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에서는 2010년 25,652천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금액의 5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산은 9,756천 달러를 수입하여 1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천에서는 4,985천 달러를 수입하여 9.9%를 차지하였고, 경남이 3,008천 달러를 수입하여 6.0%를 차지하였다. 상기 4개 지역에서는 전국 수입금액의 86.1%를 차지하여 수입업체 또한 상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6 | 지역별 수입금액 및 비중(2010)

단위: 천 달러, %

지 역	부 산	경 남	인 천	경 기	소 계	전 국
수출액	9,756	3,008	4,985	25,652	43,401	50,391
비 중	19.4	6.0	9.9	50.9	86.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3. 낚시산업에 대한 산업규모 추정

지금까지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낚시산업의 규모를 산업적 측면에서 추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낚시인구를 추정한 정도이며, 이희찬(2010)의 연구에서는 낚시인구 추정과 더불어 출조비용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여 낚시시장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낚시객들의 소비행위(지출비용)를 바탕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정의 경우 엄연히 존재하는 산업으로서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낚시어선업 등 산업적 분류에 기반을 둔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취약할 뿐더러 정책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상기 낚시산업의 분류에 기반을 둔 산업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낚시용품 제조업의 경우 ‘2008년 산업연관표’상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로 분류되는데 총 공급액이 약 3,10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총 산출액이 2,471억 원, 수입액이 633억 원이다. 한편, 낚시용품 제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매출규모를 파악하였는데 2008년 기준으로 매출액 평균은 1개소당 약 1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낚시용품 제조업체 수 70개소⁹⁾를 곱하면 산업규모는 1,278억 원으로 도출되었다. 결국 공식통계를 이용한 산업규모가 설문조사 결과보다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공식통계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둘째, 낚시용품 도·소매업의 경우, 공식통계로 산업이 분류되지 않기

9)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낚시도구 제조업 사업체 수를 63개소(2007년 기준), 그리고 농림수산물식품부 자원환경과 내부자료(2010년)에서는 낚시도구 제조업체를 70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도 포함된 농림수산물식품부 자료를 산업규모 추정에 이용하였다.

때문에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로 도출된 업계의 평균 매출규모와 사업체 수 정보를 토대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내부자료(2010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2,442개 소 정도의 낙시용품 판매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낙시용품 도·소매업의 평균 매출액이 32,36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수치를 곱하면 낙시용품 도·소매업의 산업규모는 약 7,904억 원 수준이다.

한편, 도매업과 소매업의 매출규모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 표본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표본수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 가중평균을 별도로 계산해 보았다. 3개 그룹을 ‘10억 원 이상’의 대형 도매업체, ‘2~1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도·소매업체,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매업체로 구분하였다¹⁰⁾. 가중평균 결과, 낙시용품 도소매업의 평균 매출액은 33,463만 원으로 단순평균(32,365만 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사업체 수에 곱하면 산업규모는 약 8,172억 원으로 나타나 단순평균 결과에 비해 약 270억 원이 더 높았다.

셋째, 낙시터 운영업의 경우 공식통계인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9차 개정)’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집계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 총 매출액을 약 330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낙시업중앙회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350개 소의 유료 낙시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08년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억 5454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08년 기준 낙시터 운영업의 총 매출액은 2,862억 원으로 추정된다.

10) 각 그룹별 표본수 비중은 10억 원 이상이 0.14, 2~10억 원 미만이 0.26, 2억 원 미만이 0.60이다(합계 1).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10억 원 이상이 122,909만 원, 2~10억 원 미만이 50,511만 원, 2억 원 미만이 6,076만 원이다.

넷째, 낚시어선업의 경우에도 공식통계로 산업이 분류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자원환경과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2008년 기준 수입액을 약 838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¹¹⁾ 한편, 다른 업종과 달리 낚시어선업은 조사표본의 확보,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행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낚시산업의 산업규모는 최소 1조 350억 원에서 최대 1조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결과에는 낚시장비 구입비, 낚시터(어선) 이용요금을 제외한 일반 소비성 지출이 누락되어 있다. 즉 낚시행위에 필요한 교통비, 유류비, 식비, 숙박비, 기타 제경비가 빠져 있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시킬 경우 낚시산업의 규모는 현재의 추정결과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7 |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2008년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낚시 어선업
공식통계	3,104	-	330	-
비공식자료 (선행연구 등)	-	-	-	838
설문조사	1,278	7,904~8,172	2,086	-
최소치~최대치 구간	1,278~3,104	7,904~8,172	330~2,086	838
산업규모	최소 1조 350억 원~최대 1조 4,200억 원			

주: 1. 설문조사는 각 업체별로 2008~2010년 매출액을 조사하였으나, 공식통계는 2008년 기준
이므로 산업규모 추정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일반 소비성 지출 즉 교통비, 유류비, 식비, 숙박비, 기타 제경비는 빠져 있다.

11) 2008년 낚시어선의 신고 척수는 총 5,027척이며, 척당 수입액은 16,665천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4. 낚시산업의 관련 제도 및 정책

1) 낚시 관련 제도

(1) 낚시 관련 제도 현황

2011년 3월 9일에 법률 제10458호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5개 부처 34개 법령을 통해 분산·관리되던 낚시 관련법이 통합되고, 관리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었다.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 외에도 ‘육성’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낚시 관련 법률과는 다른 산업법적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표 2-18 | 낚시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 관련 사항

구 분	주요 법령	관련 사항
농림수산 식품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신설)	· 낚시 관련 제도의 체계화 ·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내수면어업법	· 낚시어선 및 내수면 낚시터, 유어장 관리
	수산업법	· 낚시 대상 수산자원 관리
문화체육 관광부	-	· 낚시를 생활 체육의 입장에서 인식
국토해양부	항만법 등	· 항만 등 특수 지역에서의 낚시 제한 · 낚시를 해양 스포츠의 입장에서 인식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낚시 제한구역 및 낚시 금지구역 설정 · 베스 등 유해 어종에 관한 사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낚시 관련 업종만 특별 취급하지는 않음)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등	· 낚시어선 등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규제

그러나 동법의 제정으로 낚시어선법이 폐지되어 이관되고, 내수면어업법 등에서도 낚시 관련 조항은 동법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부

처에 각종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육성에 관련되는 관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낚시를 생활 체육의 입장에서 인식하여 장려하고 있지만 낚시만의 법률이나 정책은 없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산하의 중소기업청은 낚시 관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이나 정책은 따로 없고, 그저 일반적인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나 법률에서 낚시산업의 육성을 특별히 천명하고 있는 법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유일하다.

표 2-19 | 낚시장소에 대한 법률 및 관련 현황

구 분		관련 법령	제 도	현 황
바다 및 내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바 다	유어장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수산업법)	지 정	135개소(2010, 체험어장 포함)
	낚시어선	낚시어선업법(폐지)	신 고	4,060척(2010)
내수면	내수면 낚시터	내수면어업법(개정)	신 고	780개소(2010)

낚시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영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률은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이 있다. 이중 낚시어선업법은 폐지되었고, 내수면어업법은 개정되었다.

한편, 법률·제도에 의한 낚시 장소 외에도 강·계곡·저수지·갯바위·방파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면 미신고 낚시터는 543개소로 추정되고 있다(한국낚시업중앙회, 2010). 원칙적으로 모든 비관리·자연 낚시터에서의 자유로운 낚시행위가 허용되나 일부 지역의 경우 수질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표 2-20 |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법령 및 현황(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외)

법령	제한 목적	제한 내용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낚시행위 전면 금지 (시·군·구청장 지정)	낚시금지구역: 73개소 (2009년)
		낚시행위 일부 제한 (시·군·구청장 지정)	낚시제한구역: 9개소 (2009년)
하천법(국토해양부)	하천 오염 방지	떡밥 등 미끼 사용 (시·도지사 지정, 고시)	전국 11개소(2011년)
항로표지법 (국토해양부)	항로표지 보호	항로표지에서 낚시행위 전면 금지	2,500여 개소 (등대, 201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 시설 보호	미허가 유어행위 (허가: 지자체장)	2011년 현재 미지정
항만법(국토해양부)	항만 질서 유지	미허가 유어행위 (허가자: 지자체장 및 국토해양부 장관)	8개소(2006년, 부산신항 ·광양·인천·평택·울 산·목포·포항·마산)

낚시행위 제한에 대한 법령은 환경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과 국토해양부의 하천법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 항만법에 의한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곳,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보호를 받는 곳 등이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용수로 조성된 저수지의 낚시터에 적용되는 법으로, 내수면의 많은 허가받은 낚시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수면 및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주된 내용이므로 육상 부분에 대한 활용에서는 이 특별법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

① 입법 목적 및 연혁

여가 선용 기회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레

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 중 유실된 낚추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 낚시 대상 어족 자원의 감소될 위험성 문제,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서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낚시 관련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논의 당시 낚시 관련 법규는 낚시 제한기준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내수면 낚시는 ‘내수면어업법’에 유어행위, 바다(해상)에서의 낚시는 ‘수산업법’과 ‘낚시어선업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갯바위·방파제 등 바닷가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낚시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흠결된 부분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규제와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낚시 관련 통합법을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낚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낚시인구 증가와 낚시도구의 발전 등으로 토종어류 등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오염 그리고 낚시 관련 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 연혁을 보면, 먼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낚시 활용방안 대통령 업무보고(해양수산부, 2005. 3.)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정책 개발 및 낚시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심포지엄 개최(2005. 11.)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낚시종합발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006. 1.)하였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정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2006. 12.)를 하였으나, 여러 부처 간의 의견 상충 등이 있어 즉각적인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 표 2-21 |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연혁

구 분	제정 연혁
2005. 3.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 활용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2005. 11.	낚시 관련 정책 개발 및 낚시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2006. 1.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낚시종합발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06. 12.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2008. 11.	정부 조직 개편 및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
2008. 12. ~ 2009.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2008. 12. ~ 2009. 6.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2009. 7. 1. ~ 7. 21.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 7. ~ 8.	통계청 정책통계기반평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규제심사
2009. 8. ~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2009. 9. ~ 2010. 1.	법제처 심사
2010. 2.	법률안 국회 제출
2010. 9. 8.	농림수산물위원회 대안가결
2010. 12. 7.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11. 2. 18.	국회 본회의 본안가결
2011. 3. 9.	공포
2012. 9. 10.	시행

이명박정부(실용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농림수산물부) 및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2008. 11.)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2008. 12.~2009. 1.),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2008. 12.~2009. 6.)를 거쳐 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2009. 7. 1.~7. 21.)하였다.

통계청 정책통계기반평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규제심사(2009. 7~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9. 8~9.), 법제처 심사(2009. 9. 21.~2010. 1.)를 거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10. 2.)되었다. 이후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대안을 가결(2010. 9. 8.)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2010. 12. 7.)을 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안이 가결(2011. 2. 18.)되었

다. 이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2011. 3. 9.)되었으며, 시행(2012. 9. 10.)을 앞두고 있다.

②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총 8개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적용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제4조, 제10조)

동법의 적용범위는 바다, ‘수산업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바닷가와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과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동법의 낚시터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의 범위는 수면에 한하는 것으로 육상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하지 않고 있다.

나. 낚시 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제5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낚시 제한기준을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낚시통제구역(제6조)

제6조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제9조)

동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낚시터업의 허가제도의 도입(제10조~제24조)

동법에서는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통하여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낚시터업의 허가제도의 도입(제12조, 제14조)

제12조에 의하면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의 연장

은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14조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던 낚시터에 대한 허가기간이 크게 연장되고, 사업자의 신규 시설 투자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원상회복도 시설 자체의 재활용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없는 등의 사유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면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낚시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낚시어선업 신고 등(제25조~제39조, 부칙 제2조)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하였다.

자.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제도 도입(제40조~제42조)

동법에서는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동법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카.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제43조~제45조)

동법에서는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제43조에서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제44조에서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 낚시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제45조에서는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타. 벌칙(제53조~55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100만 원 이하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55조)의 세 가지 벌칙 규정이 있다.

| 표 2-22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조 문	내 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4항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1항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예외 사항 :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항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항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절차나 필요사항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 구체적 기준과 필요사항
제15조(원상회복 등) 제2항	원상회복 면제사항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제1항	사유수면 낚시터업 등록사항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2항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낚시터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과 필요사항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낚시터업자 등 준수사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준한 사항)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제3항	종전 낚시터업 허가나 등록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사항
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사항
제26조(신고사항 등 보고) 제1·2항	낚시어선업의 신고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혹은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 식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고시절차 및 내용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1항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사항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항	낚시어선업자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과 필요사항
제39조(폐업신고 등) 제1항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사항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제3항	미끼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우수 낚시터 지정 등) 제1항	우수 낚시터 지정기준
제44조(우수 낚시터 지정 등) 제4항	우수 낚시터 지정절차
제46조(명예감시원) 제3항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교육·홍보) 제3항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수수료)	낚시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자, 승계사실을 신고하는 자, 낚시어선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자, 우수 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50조(출입·검사 등) 제5항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낚시 관련 정책

주요 정부부처의 낚시에 대한 정책은 낚시터 조성이나 낚시대회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각 부처별 낚시산업 관련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 낚시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낚시 관련 정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된 후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독자적인 정책 사업은 없으며, 각 사업 중에 일부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먼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내용 중에 체험어장 및 낚시터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 집행주체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다.

②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다음으로 농림수산사업 중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중에서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동 사업의 세부 사업은 모두 5개가 있는데, 이 중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이다. 사업주관 기관은 시·도지사, 집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분야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낚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낚시터가 포함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중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업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사업내용은 환경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어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 체험) 조성이다. 지원 부문은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중 낚시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지원사업이다.

③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개선사업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개선사업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과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낚시와 관련된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낚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것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해 도시 레저인구 유치를 확대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40억 원이 지원되고 있

던 것이 2011년에는 31억으로 줄었다. 2011년에는 낚시터 1,500ha에 대해 사업이 실시되며, 보조지표로 쓰레기 수거량을 측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환경정화사업은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 사업은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설치 대상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이 없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비관리낚시터, 자연낚시터, 수산업법으로 지정된 유어장, 내수면어업법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이며, 전액 국가 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④ 낚시대회 및 박람회

정부지원사업의 또 다른 유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낚시대회가 있다. 먼저 2009년부터 시작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후원하고 있다. 동 낚시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사)한국낚시연합이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가 있다. 동 대회는 2011년에 제4회 대회가 열렸다.

부정기 대회도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가 후원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이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바다목장 수중촬영 및 낚시대회’이다. 동 대회는 2011년 9월에 처음 개최되었는데, 매년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음으로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부산국제낚시박람회(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Busan)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 박람회는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국낚시진흥회와 한국낚시산업협회, 부경조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특별 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가 참여하고 있다.

(2) 환경부의 낙시정책

환경부의 낙시관련 정책은 주로 환경정책적 측면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낙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과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정책이 있다.

표 2-23 | 전국의 낙시금지구역 지정 현황(2009. 7.)

연번	호소명	지정일자	목적	연번	호소명	지정일자	목적
1	영랑호	'04. 9. 10.	경관	21	백암	"	농업용
2	경포호	'04. 7. 1.	경관	22	원남저수지	'00. 5. 4.	"
3	송지호	'06. 8. 31.	경관	23	삼기저수지	'09. 7. 28.	"
4	호암저수지	'00. 10. 25.	농업용	24	도원지	'98. 10. 21.	농업용
5	명암저수지	'06. 10. 13.	"	25	홍양저수지	'98. 8. 24.	농업용
6	미암소류지	'98. 7. 24.	"	26	옥계저수지	'98. 9. 1.	상수원
7	가장골	"	"	27	동부저수지	'98. 10. 21.	상수원
8	정안	"	"	28	종천저수지	'98. 10. 21.	상수원
9	내성동	"	"	29	보령댐	'99. 5. 6.	상수원
10	서동	"	"	30	탐정저수지	'02. 5. 30.	농업용
11	탄티	"	"	31	마산저수지	'07. 5. 17.	"
12	송정	"	"	32	왕암저수지	'03. 4. 30.	"
13	바윗골	"	"	33	금계저수지	'98. 3. 30.	"
14	백암	"	"	34	순흥저수지	'98. 3. 30.	"
15	영수저수지	"	"	35	풍락지	'09. 3. 15.	"
16	영천소류지	"	"	36	남매지	'99. 12. 28.	"
17	연탄	"	"	37	연호지	'03. 7. 22.	"
18	송오리	"	"	38	망정동우로지	'07. 12. 1.	"
19	송티	'98. 7. 24.	농업용	39	노단이저수지	'00. 11. 20.	상수원
20	뇌실	"	"	40	주남·동판저수지	'07. 1. 1.	농업용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 표 2-23 | 전국의 낙시금지구역 지정 현황(2009. 7.) (계속)

연번	호소명	지정일자	목적	연번	호소명	지정일자	목적
41	구천호	'01. 2. 15.	상수원	58	일월저수지	'05. 6. 15.	농업용
42	소동호	'01. 2. 15.	상수원	59	신대저수지	'08. 12. 3.	농업용
43	해반천	'08. 10. 1.	농업용	60	남양호	'04. 8. 16.	농업용
44	화퍼천	'09. 1. 1.	농업용			'04. 1. 1.	농업용
45	용담댐	'02. 1. 31.	상수원	61	보통리저수지	'04. 1. 1.	농업용
46	제2수원지	'08. 3. 31.	공업용	62	백운저수지	'01. 11. 30.	농업용
47	전주천	'09. 2. 25.	하천유지 관리	63	오전저수지	'01. 11. 30.	농업용
48	삼천	'09. 2. 25.	하천유지 관리	64	왕송저수지	'03. 8. 11.	농업용
49	수어호	'00. 8. 23.	상수원 · 공업용	65	공릉저수지 (상류)	'08. 12. 1.	농업용
50	월선제	'00. 7. 10.	농업용	66	발랑저수지	'08. 12. 1.	농업용
51	동천 (지방하천)	'09. 6. 13.	수질오염 방지	67	마장저수지	'09. 5. 12.	농업용
				68	금파저수지	'09. 5. 12.	농업용
52	대왕저수지	'03. 7. 7.	농업용	69	초리저수지	'09. 5. 12.	농업용
53	운중저수지	'07. 2. 20.	농업용	70	봉암저수지	'09. 5. 12.	농업용
54	서현저수지	'07. 2. 20.	농업용	71	선암댐	'99. 5. 15.	공업용
55	원천저수지	'05. 6. 15.	농업용	72	대암댐	'98. 11. 26.	상수원 · 공업용
56	서호저수지	'05. 6. 15.	농업용	73	사연댐	'98. 11. 26.	상수원 · 공업용
57	일왕저수지	'05. 6. 15.	농업용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① 낙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낙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은 하천(‘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 · 호소의 이용목적 ·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한 것이다. 낚시금지구역은 2009년 7월에 73개소가 있으며, 낚시제한구역은 9개소가 있다. 전국의 73개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으로 보면, 농업용 목적이 74.0%로 가장 많고, 상수원 보호 목적이 11.0%로 두 번째이다.

| 표 2-24 |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목적별 분류

단위: 개, %

구 분	경 관	공업용	농업용	상수원 보호	상수원 공업용	수질오염 방지	하천유지 관리	합 계
도 수	3	2	54	8	3	1	2	73
비 율	4.1	2.7	74.0	11.0	4.1	1.4	2.7	100.0

| 표 2-25 | 전국의 낚시제한구역 지정 현황(2009. 7.)

연번	호소명	지정일자	지정권자	지정면적 (km ²)	제한(지정) 기간	지정목적
1	탐정호	'02. 5. 30.	논산시장	6	'02. 5. 30 ~	농업용
2	예당저수지	'98. 9. 1.	예산군수	10.88	'98. 9. 1.	농업용
3	청천저수지	'99. 5. 6.	보령시장	2.8	'99. 5. 6.	농업용
4	서부저수지	'98. 10. 21.	서천군수	1.3	'98. 10. 21.	농업용
5	종천저수지	'98. 10. 21.	서천군수	0.36	'98. 10. 21.	농업용
6	용암저수지	'09. 8. 5.	연기군수	1.95	'09. 8. 5 ~	농업용
7	공룡저수지(하류)	'08. 12. 1.	파주시장	0.36	'08. 12. 1 ~	농업용
8	애룡저수지	'08. 12. 1.	파주시장	2.27	'08. 12. 1 ~	농업용
9	마지저수지	'08. 12. 1.	파주시장	3.06	'08. 12. 1 ~	농업용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낚시제한구역의 경우는 농업용 목적이 제한 지정 목적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②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 정책

환경부의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며,

동법의 제32조(자연환경조사), 제39조(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 등의 수입 등), 제40조(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 등의 관리대책)가 이에 해당된다. 동법은 관리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5년에 수립된 ‘산란기 블루길·큰입배스 관리 대책(환경부 자연자원과-1621호, ’05. 5. 12.)’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유역(지방)청별 포획계획 수립·시행 및 낚시대회 등을 통한 포획 장려, 요리방법 개발·홍보 및 요리시식회 개최 등을 통한 어업자원 활용 강구,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강화이다.

이 중 외래어종(블루길·큰입배스) 낚시대회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되고 있으며, 요리시식회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3) 홍보

2005년에 발간된 환경교육자료인 「낚시와 환경(환경부, 2005)」에는 낚시와 환경의 관계,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진국의 낚시 환경오염 방지 사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줄이기 대책, 올바른 낚시인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8년에는 ‘오감만족 친환경상품 찾아보기’라는 동영상을 통해 환경마크 낚시추·미끼의 사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5.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문제점

지금까지 낚시산업의 분류별 실태, 산업규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검토 내용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우리나라의 낚시도구 제조업·유통업·수출입업 등 낚시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체의 약 90% 이하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적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통 및 수출입업체는 비용 부담 등으로 국내외 낚시박람회 참여 및 홍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낚시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개별기업에만 맡겨진 해외시장 개척, 빈약한 산업 지원 등으로 인해 한때 수출 주력산업이던 낚시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만큼 국부 창출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익 극대화의 차원에서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낚시도구 시장은 친환경 낚시도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 등 낚시도구 주요 수출국은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과 인증에 지원과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낚시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 마련 소홀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낚시인을 배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 마련

에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낚시 및 낚시산업 주관 부처가 어업생산에 중심을 둔 부처이다 보니 여태까지 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면서 기존 낚시인에 대한 배려 및 낚시인구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낚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낚시인구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과 같은 환경 속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낚시인구 규모와 도시 주변 여러 호수, 저수지, 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및 여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중심의 낚시공원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료 낚시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쾌적한 낚시환경은커녕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갖추지 못하여 어린이나 여성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낚시터는 다양한 유·무료 낚시공원 및 낚시리조트가 존재하는 외국에 비해 천편일률적이다. 물론 초보와 중급자, 상급자 등의 낚시터 구분은 있지만, 이는 전문낚시인을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휴양, 단체 연수, 데이트 코스로 활용될 수 있는 낚시터, 낚시공원, 낚시리조트 등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낚시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수면과 수산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 발생

수면과 수산자원 이용에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과 잣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즉 동일한 수면과 수산자원을 낚시인과 어민이 같이 이용하면서 이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내수면 자연 낚시터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면, 내수면에서 낚시보트는 일반어선과 함께 수면 및 수산자원 이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합을 벌인다. 또한 내수면에서 낚시인이 각망, 자망 등 설치된 어구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낚

시는 어업인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낚시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원 확보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낚시어선업 및 내수면 어업인단체(어업계)가 운영하는 낚시터업은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가 어업인의 갈등요인이 아니라 수산업과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낚시산업 관련 법·제도 및 관리조직 미비

낚시산업 관련 법·제도 및 관리조직의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낚시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어 아직 동법 시행령 및 기본계획, 그리고 전담조직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내수면 낚시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낚시터 인허가 관리 미흡 및 무허가 낚시터 난립, 낚시터 내 사행성 도박행위 성행에 따른 사회 문제화 및 건전한 낚시문화 훼손, 수면 임대기간 및 임대료 부담에 따른 투자 기피, 낚시터 시설물 확대 및 양성화 기준 마련 미흡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및 전담조직,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낚시 관련 규제에 관한 부분이 여러 법에 걸쳐져 있어 중복 규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법령 제정 및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5) 규제 행정 중심적 낚시산업 관련 정책

낚시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규제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이전의 주된 논의가 낚시면허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즉 기존의 정책은 낚시를 육성·장려해야 할 여가·레저 문화보다는 수산자원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낚시환경 조성,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고려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6)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부족

우리나라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낚시에 관련된 문화, 예절, 전문지식 등의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를 전담할 교육기관이나 자격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낚시터 내 사행성 도박행위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사회문제화 되었고, 낚시어선의 음주 운항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낚시인의 집어제·납추 과다 사용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치어 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건전한 낚시문화를 훼손하여 낚시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제 3 장 낙시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경쟁력 분석

1. 낙시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이론적 검토¹²⁾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 간 투입과 산출의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어떤 산업에서 소비, 수출입, 투자 등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되는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행(row)으로 보면 생산물의 배분구조, 열(column)로 보면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총산출은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인 총수요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이며, 총투입은 중간투입에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이다. 이때 각 산업 부문별로 총투입과 총산출은 항상 일치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_i = \sum_{j=1}^n z_{ij} + F_i - M_i = \sum_{j=1}^n a_{ij}X_j + F_i - M_i$$

$$X_j = \sum_{i=1}^n z_{ij} + V_j = \sum_{i=1}^n a_{ij}X_j + V_j$$

여기서 n 은 산업부문, X_i 는 i 부문의 총산출을 의미한다. z_{ij} 는 j 부문에 사용되는 i 재의 양, F_i 는 i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액, M_i 는 i 부문의 총수입액, V_j 는 j 부문의 부가가치이다. 투입계수 a_{ij} 는 z_{ij}/X_j 로 정의되며, j 부문의 총산출액 중 i 부문에 투입된 중간재의 비중을 의미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일 외(2010), 한국은행(2004), 강광하(2000) 등의 해설서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순수한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수입거래표를 차감한 국산거래표를 이용한다.¹³⁾ 각 산업 부문에서 수입을 차감한 국산거래표에서의 총산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d 와 F^d 는 국산거래표에서 재구성된 투입계수와 최종수요를 의미하며, $(I - A^d)^{-1}$ 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 파급효과를 합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의미한다.

$$X = A^d X + F^d$$

$$X = (I - A^d)^{-1} F^d \quad 14)$$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업 간 연쇄효과,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산업의 생산이 경제 내의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으로서 산업 간 연쇄효과¹⁵⁾를 분석하였다. <표 3-1>과 같이 전방연쇄효과(FL_i)는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후방연쇄효과(BL_i)는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를 계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의 산출물이 각 산업 부문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전방연쇄효과는 커지며, 산업의 산출물 생산에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가 많이 사용될수록 후방연쇄효과는 커진다.

13) 경쟁 수입형의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할 경우, 순수한 국내생산 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국산거래표를 의미하는 상점자 d (domestic)는 이후 수식전개에서 편의상 생략하였다.

15) 산업 간 연쇄효과는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와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육 및 어묵산업의 경우, 전방연쇄효과는 어육 및 어묵산업이 음식점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후방연쇄효과는 어육 및 어묵산업의 최종재를 생산할 때 원료가 되는 생선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생산유발효과는 예를 들어 낙시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생산유발계수행렬 식에서 최종수요가 변동이 없는, 즉 $\Delta F_e = 0$ 으로 가정하고, 낙시산업 부문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하여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표 3-1>의 식이 유도된다.

셋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낙시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Delta F_e = 0$) 하에 낙시산업 부문을 외생화하여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표 3-1>의 식이 유도된다.

표 3-1 |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통한 세부 효과의 수식 표현

구 분	수식 표현
산업 간 연쇄 효과	$FL_i = \frac{\frac{1}{n} \sum_{j=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quad BL_j = \frac{\frac{1}{n} \sum_{i=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생산 유발 효과	$\Delta X_e = (I - A_e)^{-1} (A_f \Delta X_f)$ $(I - A_e)^{-1}$: 낙시 부문이 제거된 국산투입계수의 역행렬 A_f : 낙시산업의 국산투입계수 X_f : 낙시산업의 산출액
부가가치 유발 효과	$\Delta V_e = \hat{A}_e^v (I - A_e)^{-1} (A_f \Delta X_f)$ $\hat{A}_e^v$: 부가가치계수행렬의 대각행렬에서 낙시 부문의 행열 제외
취업 유발 효과	$L_e = \hat{l}_e \Delta X_e = \hat{l}_e (I - A_e)^{-1} (A_f \Delta X_f)$ $\hat{l} (I - A)^{-1}$: 취업유발계수행렬 $\hat{l}$: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L_e : 낙시산업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자 수 $\hat{l}_e$: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낙시 부문의 행열 제외

넷째, 취업유발효과는 특정 산업의 산출량 증가로 인한 생산의 파급과

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취업유발효과는 <표 3-1>의 수식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2) 낚시산업 관련 산업연관표 작성

(1) 낚시산업 분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승인 통계를 바탕으로 낚시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활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도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정도에 불과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내역 등을 파악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용 가능하다.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9차 개정)¹⁶⁾ 코드에서 ‘낚시’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 낚시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낚시 관련 산업은 아래의 <표 3-2>와 같이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의 산업 부문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산업 부문을 살펴보면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33303)은 낚시용망, 낚시방울, 낚싯대, 뜰채, 낚시릴, 낚시미끼, 낚싯바늘, 기타 낚시와 관련된 일체의 용구를 생산하는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모자제조업(14491) 내에 낚시모자 제조, 오라클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31120) 내에 낚시용보트 제조 등도 모두 제조업 부문으로 분류되는 낚시 관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16)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판)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해 대분류 21부문, 중분류 76부문, 소분류 228부문, 세분류 487부문, 세세분류 1,145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를 참조할 수 있다.

| 표 3-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낚시산업의 분류 현황

구분(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속해 있는 낚시 관련 부문
농업, 임업, 어업	그외 기타 축산업 (01299)	낚시미끼 양식(지렁이 사육)
제조업	모자제조업 (14491)	낚시모자 제조(가죽 및 직물제)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29132)	휴대용 에어펌프 제조(낚시용)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31120)	낚시용보트 제조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낚시용 고기망, 낚시방울, 낚싯대손잡이, 뜰채(낚시용), 강화 플라스틱 낚시용구, 낚싯대, 낚시릴, 낚시미끼, 낚싯바늘, 낚싯봉, 낚시용 부찌, 낚시용 인조미끼 등
도매 및 소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3)	낚시미끼 도매, 낚싯바늘 도매, 낚시장비 도매, 낚시장비 무역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낚시미끼 소매, 낚시장비 소매
운수업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50201)	낚시선박 임대 (운전자 딸린, 내륙수상)
	항만 내 운송업 (50203)	낚시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낚시선박 임대(운전자 딸린, 항만 내)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낚시선박 임대(운전자 없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91231)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9)	오락용 낚싯배 운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	낚시회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2008년, 9차 개정판)

낚시 관련 용품(미끼, 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은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내에, 소매하는 산업은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내에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내에 낚시장 운영업(91231)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

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부 분류에는 낚시 관련 산업과 더불어 낚시 이외의 산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낚시산업만의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청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계원시자료(microdata)¹⁷⁾에서도 산업분류를 세세분류(5자리)까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 산업들의 점유율(%) 비중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로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08년)¹⁸⁾에서는 낚시산업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2008년 산업연관표에서는 산업 부문을 대분류 28부문, 중분류 78부문, 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3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상 산업 분류의 최소단위가 기본부문이며, 그 이하의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본부문 산업별로 속해있는 하위 산업의 총 공급액(국내 총 산출액+수입액) 정보가 수록된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가 부속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산업연관표에서는 기본부문까지 내려가더라도 ‘낚시’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부문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분류의 ‘기타 제조업제품’(16부문) → 중분류의 ‘기타 제조업제품’(52부문) → 소분류의 ‘장난감 및 운동용품’(117부문) → 기본부문의 ‘운동 및 경기용품’(292부문) → 공급액표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로 분류되는 것이 유일하다.

17) 마이크로데이터는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18) 2011년 6월말 현재 ‘2009년 산업연관표’가 발표되었으나 관련 부속표(고용표, 공급액표 등)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관계로 2008년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표 3-3 | 산업연관표에서 낚시산업의 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
기타 제조업 제 품 (16)	가구 (51)	가구 (116)	목재가구(288)	(생략)
			금속가구(289)	
			기타 가구(290)	
	기타 제조업 제품 (52)	장난감 및 운동용품 (117)	장난감 및 오락용품 (291)	(생략)
			운동 및 경기용품 (292)	제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놀이터용 장비
				낚시 및 수렵용구
				골프용품
				운동용 공
				운동용 장갑
				양궁, 국궁 및 유사장비
				기타
		기타 제조업 제품 (118)	악기(293)	(생략)
			문방구(294)	
			귀금속 및 보석 (295)	
			모형 및 장식용품 (296)	
			기타 제조업 제품 (297)	

자료: 한국은행, 부문분류표 및 부문별 · 품목별 공급액표, 2008년 산업연관표 참조.

2008년 기준으로 ‘운동 및 경기용품’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총 산출액은 약 2,470억 원, 수입액은 약 63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전체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의 산출액 비중은 30.0%인데, 이 산출액 비중을 근거로 산업연관표에서 낚시산업을 분리할 계획이다.

| 표 3-4 | 운동 및 경기용품(기본부문 292) 부문의 공급액표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국내 총 산출액 (비중)	수입액	총 공급액
제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317,669(38.6)	112,572	430,241
놀이터용 장비	127,119(15.5)	0	127,119
낚시 및 수렵용구	247,058(30.0)	63,326	310,384
골프용품	94,298(11.5)	356,097	450,395
운동용 공	4,842(0.6)	114,271	119,113
운동용 장갑	4,824(0.6)	26,243	31,067
양궁, 국궁 및 유사장비	26,832(3.3)	0	26,832
기타	0(0.0)	159,836	159,836
운동 및 경기용품 전체 합계	822,642(100.0)	832,345	1,654,987

자료: 한국은행,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 2008년 산업연관표 참조.

참고로 ‘낚시 및 수렵용구’에서 ‘수렵용구’는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낚시 및 수렵용구’는 크게 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낚시 인조찌, 기타 낚시용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낚시용품 이외의 수렵용구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낚시산업의 하나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낚시장 운영업(91231)이 세세분류로 분류되었던 것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는 공급액표에 낚시장 운영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과 산업연관표에서 ‘기타 오락서비스(392)’ 부문의 산업범위를 대조해 보면 산업분류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 통계에서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 세부 산업(낚시장 운영업 포함)의 매출 비중을 구한 뒤, 이를 산업연관표의 ‘기타 오락서비스’ 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표 3-5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비교(기타 오락 서비스 중심)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91231)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갯볼링 및 베테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타 오락서비스 (기본부문 392)	무도장 유원지 오락장 도박장 경마장 및 경륜장 기타

실제로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에서 2008년 기준으로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총 사업체 수는 63,955개, 종사자 수는 14만 6,475명, 매출규모는 11조 6,395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낚시장 운영업은 사업체 수 811개소, 종사자 수 1,427명, 매출액은 약 330억 원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표 3-6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현황(2008년 기준)

구 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백만 원)	
	개수	비중	인원	비중	금액	비중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30	0.2	6,775	4.6	917,450	7.9
오락장 운영업	57,281	89.6	110,497	75.4	3,307,898	28.4
수상오락 서비스업	1,254	2.0	3,486	2.4	64,876	0.6
- 낚시장 운영업	811	1.3	1,427	1.0	33,083	0.3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43	0.7	2,059	1.4	31,793	0.3
갯볼링 및 베테업	2,695	4.2	16,705	11.4	6,734,196	57.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2,595	4.1	9,012	6.2	615,157	5.3
합 계	63,955	100.0	146,475	100.0	11,639,577	10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9차 개정)」

(2) 공급액표를 활용한 선행연구

통상적으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내에서 산업을 분류·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기본부문에서도 ‘낚시산업’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를 활용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구체적인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승준 외(2002)¹⁹⁾는 1998년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를 이용, 해양산업을 해운, 항만, 수산, 조선 및 기타산업과 같이 4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31개 세부 항목을 402 기본부문에서 추출하였다. 이때 402 기본부문에서 해양산업을 추출하는 비율은 한국은행의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에서 해양산업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생산액 비율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부문의 ‘하역’이나 ‘보관 및 창고’ 부문은 육상활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양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이나 ‘숙박업’에서도 해양관광만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을 추출하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공급액표를 활용하였고, 공급액표에서 계산할 수 없는 해양관광부문의 일부 항목과 해양방위 부문의 포함비율은 문헌조사를 통해 산출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충기 외(2006)²⁰⁾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낚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카지노산업도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 분류되지 않는데, ‘기타 오락서비스’ 부문

19) 곽승준·유승훈·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2.

20) 이충기·송덕중·송학준,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6.

내의 공급액표에서 도박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을 기반으로 산업을 33개 부문으로 분류·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카지노업은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고성보(2008)²¹⁾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감귤산업의 지역경제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 분류되는 과실산업의 공급액표를 살펴보면 사과, 감귤, 배, 복숭아, 감, 포도, 기타와 같이 세부 품목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과실에서 차지하는 감귤의 비중을 고려, 감귤산업을 분리하여 1개의 산업으로 설정하고, 전체 산업을 42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낚시산업을 포함한 신규 산업분류

낚시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떤 산업 부문을 낚시산업으로 정의·분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가장 세분화된 현행 산업연관표에서도 낚시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낚시 관련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문을 별도로 분리시켜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대분류(28부문) 산업연관표를 기본으로 하되, 16부문인 ‘기타 제조업제품’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를 분리하고, 27부문인 ‘사회 및 기타서비스’에서 ‘낚시장 운영업’을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29부문에 분리된 2개 부문을 합친 새로운 ‘낚시산업’을 1개의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성격이 상이한 상기 2개 부문을 별도로 구분할

21) 고성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감귤산업의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식품유통연구』, 제25권 제2호, 2008.

수도 있지만 기본부문 산업이 아닌 별도 추정을 통해 산업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 자료의 제약 및 해석의 한계 등을 고려, 1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표 3-7 | 남시산업을 포함한 신규 산업분류 체계

구 분	산업분류(대분류)	비 고	신규 산업분류
1	농림수산물	-	좌동
2	광산물	-	
3	음식료품	-	
4	섬유 및 가죽제품	-	
5	목재 및 종이제품	-	
6	인쇄 및 복제	-	
7	석유 및 석탄제품	-	
8	화학제품	-	
9	비금속광물제품	-	
10	제1차 금속제품	-	
11	금속제품	-	
12	일반기계	-	
13	전기 및 전자기기	-	
14	정밀기기	-	
15	수송장비	-	
16	기타 제조업제품	남시 및 수렵용구 분리	16. 기타 제조업제품 (남시 및 수렵용구 제외)
17	전력, 가스 및 수도	-	좌동
18	건설	-	
19	도·소매	-	
20	음식점 및 숙박	-	
21	운수 및 보관	-	
22	통신 및 방송	-	
23	금융 및 보험	-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25	공공행정 및 국방	-	
26	교육 및 보건	-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남시장 운영업 분리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남시장 운영업 분리)
28	기타	-	좌동
29	-	-	29. 남시산업 (남시 및 수렵용구 + 남시장 운영업)

본 연구에서는 낙시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실제 분석에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수입거래표를 제외한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낙시산업의 순수한 국내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단, 낙시산업의 투입 및 배분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403 기본부문 생산자가격평가표가 이용되었다.

3) 분석결과

(1) 낙시산업의 투입 및 배분구조

낙시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투입 및 배분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열(列)로 보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인 중간투입, 그리고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의 내역을 알 수 있다. 이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더한 것이 총투입이며,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이 각각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이다. 그리고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각 산업별로 얼마만큼 중간재 및 최종재로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총수요에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중간수요율 및 최종수요율이다.

먼저 낙시산업의 투입구조를 살펴보면, ‘낙시 및 수렵용구’의 경우 중간투입률 66.3%, 부가가치율 33.7%로 일반 제조업²²⁾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시장 운영업’의 경우 중간투입율은 35.4%, 부가가치율은 64.6%로 ‘낙시 및 수렵용구’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낙시산업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낙시 및 수렵용구’의 중간수요율은

22) 일반 제조업의 중간투입률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73.2%, 섬유 및 가죽제품 69.2%, 화학제품 81.7%, 제1차 금속제품 85.2%, 일반기계 75.1%, 정밀기기 73.8% 등이다.

36.0%, 최종수요율은 64.0%이다. 최종수요는 소비가 71.0%, 투자(민간 고정 자본 형성 + 정부고정자본 형성 + 재고 증가)가 10.6%, 그리고 수출 18.4%로 구성된다. 그러나 ‘낚시장 운영업’의 중간수요율은 2.6%, 최종수요율은 97.4%로 집계되어 사실상 타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이용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요의 구성은 소비가 93.6%, 수출 6.4%로 집계되었다.

| 표 3-8 | 낚시산업의 투입 및 배분구조

단위: %

구 분	투입구조		배분구조	
	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중간수요율	최종수요율
낚시 및 수렵용구	66.3	33.7	36.0	64.0
낚시장 운영업	35.4	64.6	2.6	97.4

자료: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공급액표) 및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낚시산업의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낚시 및 수렵용구’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산업 비중 순위를 매겨 보면, 가방 및 핸드백,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합성섬유 등의 비중이 높았다. ‘낚시장 운영업’의 경우, 가게 외 소비지출,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초고속망 서비스 등의 투입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10개 부문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산출물이 배분(중간수요)되는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낚시 및 수렵용구’에서는 가게 외 소비지출,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기타 오락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10개 부문 합계가 전체의 96.2%를 차지하였다. 한편, ‘낚시장 운영업’은 기타 오락서비스와 가게 외 소비지출 2개 부문에 모두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9 | 낙시산업의 중간투입 상위 10개 산업 부문

단위: %

낙시 및 수렵용구			낙시장 운영업		
순위	산업 부문	중간투입 비중	순위	산업 부문	중간투입 비중
1	가방 및 핸드백	8.7	1	가계 외 소비지출	18.5
2	운동 및 경기용품	6.7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7.1
3	도매	6.4	3	초고속망 서비스	8.9
4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6.1	4	영화제작 및 배급	7.2
5	합성섬유	5.2	5	기타 오락서비스	5.0
6	가죽	4.5	6	기타 사업서비스	2.9
7	합성수지	4.1	7	운동 및 경기용품	2.5
8	기타 섬유직물	3.5	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 취급기관	2.3
9	기타 금속제품	3.1	9	경유	2.3
10	제재목	2.6	10	기타 금융중개기관	2.3
10개 부문 합계		51.0	10개 부문 합계		69.2

자료: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공급액표) 및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표 3-10 | 낙시산업의 중간수요 상위 10개 산업 부문

단위: %

낙시 및 수렵용구			낙시장 운영업		
순위	산업 부문	중간수요 비중	순위	산업 부문	중간수요 비중
1	가계 외 소비지출	25.0	1	기타 오락서비스	64.2
2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24.0	2	가계 외 소비지출	35.8
3	기타 오락서비스	16.5	3	-	-
4	교육기관(국·공립)	8.5	4	-	-
5	주택 건축	7.9	5	-	-
6	운동 및 경기용품	6.2	6	-	-
7	교육기관(비영리)	3.9	7	-	-
8	문화서비스(국·공립)	2.8	8	-	-
9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0.8	9	-	-
10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7	10	-	-
10개 부문 합계		96.2	2개 부문 합계		100.0

자료: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공급액표) 및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산업 간 연쇄효과

산업 간 연쇄효과 분석은 낚시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29개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도출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커진다. 영향력계수의 크기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타 부문이 1.433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금속제품(1.242), 일반기계(1.2233), 수송장비(1.1996), 제1차 금속제품(1.1584), 기타 제조업제품(낚시 및 수렵용구 제외, 1.141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9부문으로 분류한 낚시산업의 영향력계수는 1.098로 29개 산업 가운데 7위를 기록하였다. 즉 낚시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받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통상적으로 어떤 산업의 산출물이 각 산업에 중간재로 널리 이용되는 산업일수록 커진다. 산업별 감응도계수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이 2.1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학제품(2.00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7558), 석유 및 석탄제품(1.3838), 도·소매(1.2884) 등으로 나타났다. 낚시산업의 감응도계수는 0.5219로 전체 29개 산업 부문 가운데 29위를 기록하였다. 낚시산업의 감응도계수가 가장 낮다는, 즉 전방연쇄효과가 작다는 의미는 산출물이 최종소비재 성격이 강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을 의미한다.²³⁾ 참고로 석유제품과 같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이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는 큰데, 이러한 산업일수록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23) 여기서 말하는 경기변동의 영향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감소와는 다르다.

| 표 3-11 |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분석결과

산업 부문		영향력계수 (후방연쇄)	순위	감응도계수 (전방연쇄)	순위
1	농림수산물	0.9579	20	0.9638	15
2	광산물	0.8843	21	0.5826	27
3	음식료품	1.0715	10	1.1305	8
4	섬유 및 가죽제품	1.0325	15	0.8511	19
5	목재 및 종이제품	1.0389	14	1.1007	10
6	인쇄 및 복제	1.0436	12	0.6533	22
7	석유 및 석탄제품	0.5860	29	1.3838	4
8	화학제품	1.0602	11	2.0056	2
9	비금속광물제품	1.0058	16	0.7254	21
10	제1차 금속제품	1.1584	5	2.1414	1
11	금속제품	1.2420	2	0.9859	13
12	일반기계	1.2233	3	0.8594	18
13	전기 및 전자기기	0.9581	19	0.9852	14
14	정밀기기	1.0807	8	0.5922	26
15	수송장비	1.1996	4	0.8895	17
16	기타 제조업제품 (납시 및 수렵용구 제외)	1.1417	6	0.6390	23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7800	28	1.1479	7
18	건설	1.0767	9	0.5997	25
19	도·소매	0.8400	23	1.2884	5
20	음식점 및 숙박	1.0406	13	1.0546	11
21	운수 및 보관	0.8023	26	1.1157	9
22	통신 및 방송	0.9687	18	0.8917	16
23	금융 및 보험	0.8818	22	1.2190	6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7978	27	1.7558	3
25	공공행정 및 국방	0.8064	25	0.5273	28
26	교육 및 보건	0.8068	24	0.6226	24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납시장 운영업 제외)	0.9826	17	0.7432	20
28	기타	1.4339	1	1.0225	12
29	납시산업	1.0980	7	0.5219	29

일반적으로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에의 크기에 따라 산업 부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는 높고 후방연쇄효과는 낮으면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는 높고 전방연쇄효과는 낮으면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넷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으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이라 할 수 있다(곽승준 외, 2002, p. 18). 낙시산업의 경우 후방연쇄효과는 전체 산업 가운데 7위로 높고, 전방연쇄효과는 전체 산업에서 29위로 가장 낮으므로 세 번째 유형인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낙시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낙시산업의 산출액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1.1111원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한 낙시산업의 총 산출액 규모가 약 2,784억 원²⁴⁾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3,093억 원의 타 부문 생산이 더 유발됨을 의미한다. 즉, 낙시산업이 자기 부문의 총 산출액을 제외하고도 국민경제적으로 그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9개 산업 부문 가운데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화학제품(0.2007), 섬유 및 가죽제품(0.1472), 제1차 금속제품(0.1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낙시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낙시산업의 산출액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총 0.3389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산업별 크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0.0487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0.0465), 섬유 및 가죽제품(0.0454), 화학제품(0.0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제조업 관련 부문의 산출액 집계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원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실태(사업체 수, 종업원 수, 매출규모, 비용구조 등)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10인 이하 사업체가 포함될 경우 산업규모는 여기서 제시한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낙시산업의 규모는 ‘낙시 및 수렵용구(종사자 수 10인 이상)’, ‘낙시장 운영업’만을 포함한 최소 한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 표 3-12 | 낙시산업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분석

단위: 원, 명/10억 원

산업 부문		생산유발 효과	순위	부가가치유 발효과	순위	취업유발 효과	순위
1	농림수산물	0.0060	23	0.0031	19	0.2137	11
2	광산품	0.0014	27	0.0008	25	0.0067	25
3	음식료품	0.0111	19	0.0030	20	0.0345	21
4	섬유 및 가죽제품	0.1472	2	0.0454	3	1.0821	2
5	목재 및 종이제품	0.0526	8	0.0127	8	0.2177	10
6	인쇄 및 복제	0.0049	24	0.0020	22	0.0516	17
7	석유 및 석탄제품	0.0527	7	0.0099	11	0.0065	26
8	화학제품	0.2007	1	0.0367	4	0.3783	5
9	비금속광물제품	0.0100	20	0.0029	21	0.0353	20
10	제1차 금속제품	0.1248	3	0.0185	6	0.0850	14
11	금속제품	0.0554	6	0.0140	7	0.2824	7
12	일반기계	0.0134	18	0.0033	18	0.0519	16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200	15	0.0045	17	0.0489	18
14	정밀기기	0.0018	26	0.0005	26	0.0104	24
15	수송장비	0.0077	21	0.0017	23	0.0179	23
16	기타 제조업제품 (납시 및 수렵용구 제외)	0.0313	13	0.0084	12	0.2107	1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345	12	0.0072	15	0.0370	19
18	건설	0.0037	25	0.0015	24	0.0335	22
19	도·소매	0.0769	4	0.0465	2	1.8211	1
20	음식점 및 숙박	0.0196	16	0.0077	13	0.4226	4
21	운수 및 보관	0.0362	11	0.0123	9	0.3195	6
22	통신 및 방송	0.0260	14	0.0113	10	0.0757	15
23	금융 및 보험	0.0421	9	0.0237	5	0.2197	9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718	5	0.0487	1	0.5751	3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4	28	0.0003	27	0.0038	27
26	교육 및 보건	0.0073	22	0.0049	16	0.1059	1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납시장 운영업 제외)	0.0144	17	0.0073	14	0.2262	8
28	기타	0.0371	10	0.0000	28	0.0000	28
합 계		1.1111		0.3389		6.5739	

마지막으로 낚시산업의 산출액이 10억 원만큼 증가할 때 여타 산업에 파급되는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계수를 구해야 한다. 취업계수는 각 산업의 취업자 수를 해당 산업의 총산출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타 제조업제품’에 포함된 ‘낚시 및 수렵용구’의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사회 및 기타서비스’에 포함된 ‘낚시장 운영업’의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종업원 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낚시산업의 산출액이 10억 원 증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약 6.5739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업별로는 도·소매가 1.8211명으로 가장 컸고, 섬유 및 가죽제품 1.0821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5751명, 음식점 및 숙박 0.4226명 등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낚시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낚시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전방연쇄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낚시산업이 타 산업의 생산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산업임을 말해 준다. 최근 주 5일제 근무,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낚시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낚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낚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낚시산업의 산출액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1.1111원의 생산이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0.3389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낚시산업의 산출액이 10억 원만큼 증가할 때 타 산업에 6.5739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낙시산업 부문을 외생화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낙시산업 자체 부문이 포함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히,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 도·소매,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낙시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시산업의 생산이 지장을 받을 경우 이러한 산업들이 여타 산업들에 비해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낙시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 시 이러한 산업 간 연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정 부문에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낙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자료

어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의 수익성,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 무역실적(수출입), 기술적 경쟁력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전제조건은 우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낙시산업도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력을 측정하고,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시산업의 정의(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제비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비교 가능한 국제통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가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료 입수가 용이한 무역성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낙시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

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를 기초로 하여 남시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출 경쟁력 분석은 첫째,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분석,²⁵⁾ 둘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지수) 분석, 셋째, 수출단가지수(Export Unit Price Index: EPI) 분석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출 점유율은 2010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 성장률은 약 10년(2000~20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출 증감률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분석에 BCG (Boston Consulting Group) 매트릭스²⁶⁾를 이용하여 경쟁관계를 유형화하였다.

둘째,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RCA는 어떤 국가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 시장의 품목별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RCA가 1 이상이면 다른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 분석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무역(수출)통계를 이용하였다.

$$RCA_{ij} = (X_{ij}/X_i)/(TX_j/TX)$$

여기서 X_i 는 i 국의 총 수출액,

X_{ij} 는 i 국 j 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25) 수출 점유율은 2007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 성장률은 5개년(2003~2007년)의 연평균 수출 증감률로 계산하였음.

26) BCG Matrix는 시장 점유율의 높고 낮음과 시장 성장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시장을 Star, Question Mark, Cash Cow, Dog와 같이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우선 시장 점유율(x축)과 시장 성장률(y축)을 기준하여 사사분면으로 분석대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된다. 첫째,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이 모두 높은 영역의 Star 시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시장 확대 및 수익 확보가 예상되는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 둘째,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성장률이 높은 Question Mark 시장(잠재시장)은 현재 경쟁 우위는 약하지만 미래 시장 확대에 대한 기회가 있는 국가들의 집합이다. 셋째,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성장률이 낮은 Cash Cow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 수익을 실현하는 국가들이다. 넷째, 시장 점유율 및 성장률이 모두 낮은 Dog 시장은 수익도 저조하고, 미래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 국가들이다(신영태 외, 2009, p. 79). BCG 매트릭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본 연구에서 생략하고자 한다.

TX_j 는 세계 전체의 j 상품 수출액,

TX 는 세계 전체의 총 수출액

셋째, 수출단가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EPI는 가격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특정 품목의 수출단가를 세계 시장의 수출단가로 나눈 값이다. EPI가 100보다 작으면 해당국의 수출단가가 세계 수출단가보다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EPI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무역(수출)통계를 이용하였다. RCA 분석과 달리 EPI 분석은 2005~2010년까지의 통계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UN 상품무역통계(UN Comtrade)에서 2005년 이전 자료에 중량(kg)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EPI_{ij} = (EP_{ij} / TEP_j) \times 100$$

여기서 EP_{ij} 는 i 국 j 상품의 수출단가,

TEP_j 는 세계 전체의 j 상품 수출단가

분석자료는 UN 상품무역통계(UN Comtrade)를 이용하였다. 분석품목은 HS코드를 참조하여 9507(낚싯대·낚싯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²⁷⁾로 하였다. 하위 코드에 950710(낚싯대), 950720(낚싯바늘), 950730(낚시릴), 950790(낚시용 망과 기타 낚시용구)가 분류되고 있으나 무역규모가 매우 미미하고,²⁸⁾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특징적인

27) Fishing rods, fish-hooks and other line fishing tackle; fish landing nets, butterfly nets and similar nets; decoy "bird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2.08 or 97.05) and similar hunting or shooting requisites.

28)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총 수출규모는 14조 2,483억 달러이며, 낚시용품(HS9507)의 수출규모는 23억 9,979만 달러로 0.017% 수준에 불과하다. 낚시용품 중에서는 낚싯대(950710)가 29.2%, 낚싯바늘(950720)이 11.4%, 낚시릴(950730)이 23.7%, 기타 낚시용품(950790)이

시사점도 없다고 판단되어 HS코드 4단위 분류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²⁹⁾ 또한 4단위 분류를 이용한 분석이 국가별 낙시용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4단위 분류체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HS코드 9507 품목의 최근 3년(2008~2010년) 동안의 국가별 수출실적 상위 15개국으로 하였다. 집계결과, 수출실적 상위 15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홍콩,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영국, 에스토니아이다.

2) 분석 결과

(1) 시장 점유율 및 성장률 분석

분석대상 1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장 점유율은 가장 최신 연도인 2010년의 HS9507 품목 세계 전체 수출액 대비 국가별 수출액 비중으로 계산하였으며, 성장률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의 국가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00년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나 2005년 1억 1천만 달러, 2010년 9천 5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9.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세계 전체 수출의 41.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수출실적이 많았다. 2000~2010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액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국

35.7%를 차지하고 있다.

29) 사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한 15개 대상 국가가 대부분 6단위 코드의 수출실적에서도 모두 상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4단위를 이용한 분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평균 15.6%의 성장률을 실현하였다. 성장률이 특히 높은 국가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며,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연평균 9.2%씩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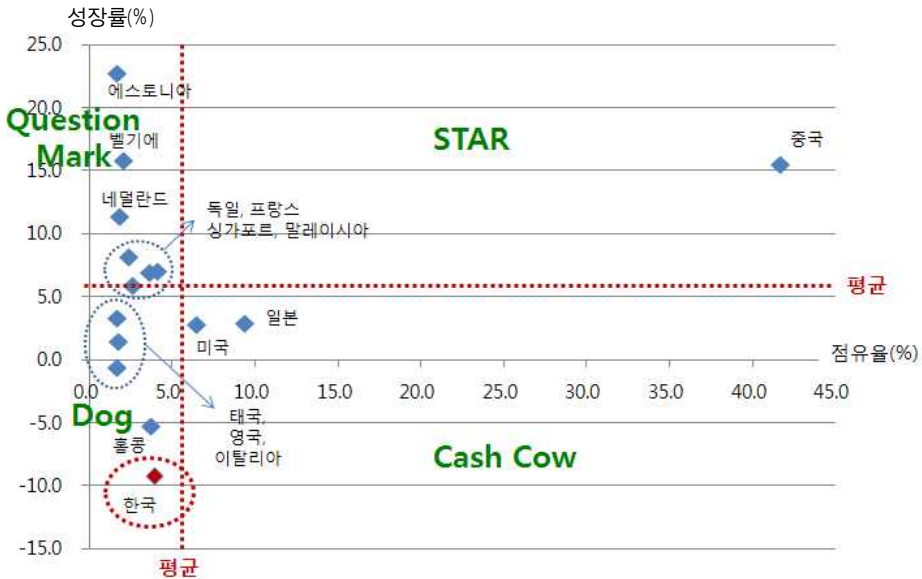
표 3-13 | HS9507 품목의 국가별 수출실적 및 점유율과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점유율	2000~2010년 성장률
중국	235.5	515.8	999.8	41.7	15.6
일본	168.2	174.0	224.5	9.4	2.9
미국	117.9	118.4	156.0	6.5	2.8
싱가포르	49.7	76.8	97.8	4.1	7.0
한국	249.3	111.0	95.0	4.0	-9.2
홍콩	151.5	182.3	88.5	3.7	-5.2
말레이시아	44.5	59.2	87.3	3.6	7.0
프랑스	35.8	58.7	63.4	2.6	5.9
독일	25.9	33.6	56.5	2.4	8.1
벨기에	11.6	41.9	50.5	2.1	15.8
네덜란드	15.0	36.5	44.2	1.8	11.4
영국	36.4	34.5	41.8	1.7	1.4
태국	29.6	52.2	41.0	1.7	3.3
이탈리아	43.2	46.1	40.6	1.7	-0.6
에스토니아	5.2	26.5	40.7	1.7	22.8
15개국 합계	1,219.3	1,567.5	2,127.7	88.7	-
세계 총계	1,402.4	1,807.1	2,399.8	100.0	5.5

국가별 경쟁관계를 사사분면에 유형화한 <그림 3-1>의 BCG 매트릭스 상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인 Star 시장에 군림하고 있다. 점유율과 성장률 모두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Cash Cow 시장에는 일본과 미국이 위치해 있으며, 신흥시장인 Question Mark 시장에는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과 더불어 Dog 시장에 위치해 있어 수출실적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는 Star 및 Cash Cow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Question Mark 시장의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 | 남시식품산업의 국가별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위치

(2) 현시비교우위지수 및 수출단가지수 분석

국가별로 RCA 및 EPI 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수출은 연도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평균으로 RCA 및 EPI를 분석하는 경우 특정 연도의 극단치(outlier)가 분석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는 2000~2010년의 분석기간 중에서 RCA가 1 이상인 경우가 5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 EPI는 2005~2010년의 분석기간 중에서 EPI가 3년 넘게 100 이하인 경우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RCA 분석에서는 에스토니아의 RCA 평균이 14.5로 이론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 점유율 세계 1위의 중국도 3.9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일본 1.6, 싱가포르 1.7, 한국 2.9, 홍콩 3.1, 말레이시아 2.3, 태국 1.9로 나타나 농수산물(HS9507)이 자국의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 HS9507 품목의 국가별 RCA 및 EPI 비교

수출 점유율 순위	구 분	RCA		EPI	
		지수값	증감률(%)	지수값	증감률(%)
1	중국	3.9*	-0.9	97.6	-11.1
2	일본	1.6*	1.3	216.2	27.8
3	미국	0.7	1.0	138.3	23.4
4	싱가포르	1.7*	0.5	135.3	28.9
5	한국	2.9*	-15.2	90.4*	8.3
6	홍콩	3.1*	-8.7	138.3	7.1
7	말레이시아	2.3*	2.8	157.0	16.6
8	프랑스	0.7	3.4	129.5	10.9
9	독일	0.2	2.6	80.2*	0.5
10	벨기에	0.5	10.3	64.8*	10.4
11	네덜란드	0.6	5.7	106.7*	4.4
12	영국	0.6	0.9	116.6*	11.6
13	태국	1.9*	-4.0	156.0	23.0
14	이탈리아	0.7	-3.7	96.4*	8.7
15	에스토니아	14.5*	12.2	277.6	13.5
-	세계(World)	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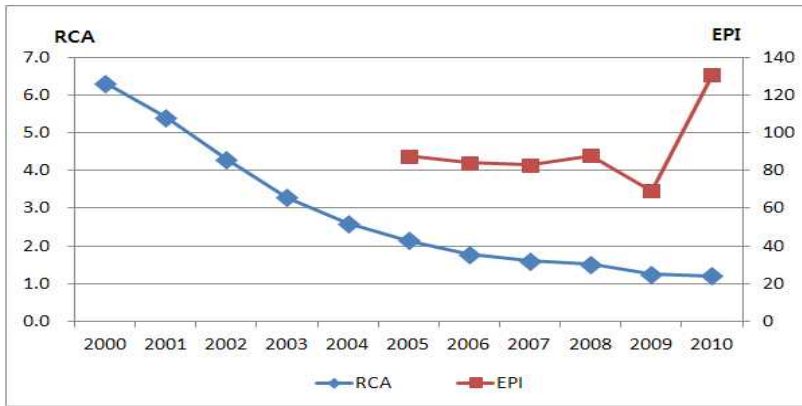
주: 1. 표에 제시된 RCA지수는 2000~2010년 지수의 평균이며, EPI는 2005~2010년 지수의 평균임

2. * 표시는 RCA지수의 경우, 분석기간인 2000~2010년 동안 5년 이상 1을 넘는 경우, EPI 지수의 경우, 분석기간인 2005~2010년 동안 3년 이상 10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EPI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EPI 지수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 수출단가가 세계의 평균 수출단

가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설명하나, 제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우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RCA가 6.3이었으나 2010년 현재 1.2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EPI도 2005년 87.6에서 2010년 현재 130.5로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3-2 | 우리나라의 RCA 및 EPI 추이(HS9507)

3) 시사점

지금까지 UN 상품무역통계를 이용, 낙시용품산업의 국가별 수출 점유율 및 성장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수출단가지수(EPI)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이 낙시용품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기준으로 41.7%로 세계 2위인 일본의 9.4%, 우리나라의 4.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성장세도 빨라 향후 세계 낙시용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및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낙시용품 시장에 미

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최근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RCA가 매년 급격히 하락하며, 가격경쟁력을 의미하는 EPI도 2010년 급격히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낚시용품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5 | 낚시용품산업의 무역성과 종합분석

구 분 (HS code)	경쟁력 우위 국가		
	BCG Matrix의 Star 시장 위치	RCA	EPI
낚시용품 (9507)	중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에스토니아	한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주: 경쟁력 우위 국가는 RCA의 경우, 분석기간인 2000~2010년 동안 5년 이상 1을 넘은 경우, EPI의 경우, 분석기간인 2005~2010년 동안 3년 이상 10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단편적 목표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세계 낚시용품 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제품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에서 낚시 관련 용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낚시용품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도 파악, 국내 낚시용품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방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제 4 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1) 미국의 낚시산업 실태

(1) 미국의 낚시산업 개황

미국의 낚시 관련 산업은 1,25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백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낚시 관련 산업을 기업으로 따지자면 미국 내 500대 기업에 속하는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또는 IBM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

미국에서 유어낚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미국의 유어낚시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표 4-1>과 같다.

| 표 4-1 | 미국의 유어낚시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낚시 전체	민물낚시	바다낚시	오대호
낚시객 수(명)	29,952,000	25,035,000	8,528,000	1,506,000
지출(소매 기준)(백만 달러)	45,336	31,183	11,051	2,524
경제적 파급효과(백만 달러)	124,959	87,954	30,327	7,089
임금 및 수입(백만 달러)	38,360	26,468	9,408	2,189
고용(명)	1,035,639	709,508	263,898	58,291

주: 낚시객 수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허 소지자와 미소지자를 모두 포함함
자료: ASA, *Sportfishing in America*, 2008. p. 5.

30) ASA, *Sportfishing in America*, 2008. p. 5.

우선 낚시인구와 관련하여 미국낚시산업협회의 보고(ASA, 2008)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낚시객 수(16세 이상)는 약 3천만 명으로 조사되었다.³¹⁾ 미국의 낚시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총 1,2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약 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06년도 미국 낚시 라이선스 판매 금액은 약 6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유어자원회복법(Sport Fish Restoration Act) 하에서 낚시도구 및 어선, 연료 등에 대한 연방목적세 및 수입관세는 약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²⁾

(2) 미국의 낚시산업협회

미국에는 낚시산업을 진흥하는 민간단체로서 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조직으로 미국스포츠피싱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ASA)를 들 수 있다.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1933년에 설립된 낚시산업 관련 협회로서 미국 내에서 유어낚시와 관련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동 협회는 낚시산업 및 낚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동 협회는 소매 기준으로 450억 달러를 창출하는 미국의 4천만 낚시객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협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회장으로 선정하여 고용하고 있다. 동 협회에는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 경비는 낚시박람회 수입, 회원 회비, 소비자박람회 및, 낚시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31) 미연방 어류·야생동식물국(USFWS)의 보고에 따르면 6세에서 15세 사이의 낚시인구가 8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 내 총 낚시객 수는 4,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16세 이상 낚시인구 중 2,503만 명이 민물낚시 인구이며, 853만 명이 바다낚시 인구로 조사되어 민물낚시 인구가 바다낚시 인구의 2.9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ASA, *Sportfishing in America*, 2008, pp. 5~6.

동 협회의 회원은 낚시도구 제조업자, 보트 제조업자, 유통업자, 주정부 어류·야생동식물국, 각종 보존 관련 단체, 연방 수자원 관리기구, 낚시 단체, 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동 협회의 주요 역할은 관련 업계의 이해 대변,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보존 및 교육, 업계 자료 보고 활동 등이다.

(3) 미국의 가족형 낚시터 유형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낚시인구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유어낚시는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족형 중심의 낚시터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은 낚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성과 어린이가 동참할 수 있는 가족형 중심의 낚시공원 및 낚시리조트를 지향하고 있다. 낚시공원은 주로 주립공원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낚시의 편의 제고 및 낚시 이외에도 캠핑 등을 연계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낚시문화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낚시공원의 주요 시설을 보면 기본적으로 낚시를 위한 낚시잔교(pier), 캠핑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캠핑장 시설(텐트용 및 캠핑카용), 그 밖의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피크닉 테이블, 벤치, 수도 및 전기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낚시공원에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해변, 운동장 등을 갖추어 낚시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2011년 현재 총 65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 구성은 직접 장비(대, 릴) 제조업체 301개소, 간접 장비(의류 등) 제조업체 122개소, 중개상·도소매업체 102개소, 언론사 39개소, 연방 및 주정부 기관 29개소, 보트 제조업체 13개소 등이다.

| 표 4-2 | 미국의 가족형 낚시리조트 유형

유형	주요 활동	주요 시설
고급형	낚시, 골프, 사냥	낚시잔교, 마리나, 골프장, 사냥터, 콘도
중저가형	낚시, 캠핑, 물놀이 등	낚시잔교, 캠핑장, 물놀이 시설 등

한편, 미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낚시리조트가 발달되어 있다. 낚시리조트는 규모, 이용료, 프로그램에 따라 크게 고급형과 중저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급형은 낚시를 골프 및 사냥 등과 다소 고비용의 활동과 연계한 것으로서, 고급 숙박시설, 마리나,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중저가형은 낚시터를 중심으로 소규모 캠핑장 및 물놀이장을 갖추어 당일 방문 또는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미국의 낚시공원 사례: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

메릴랜드 주의 땅 끝에 해당하는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Point Lookout State Park)은 좌우로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과 포토맥 강(Potomac River)을 끼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반도와 같이 길게 돌출되어 있다. 동 공원은 원래 1812년 미국 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 및 전쟁 시에 체사피크 만으로 진입한 영국 군함을 감시하던 곳이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동 공원이 52,264명의 남부 연합군이 수용된 포로 수용소로 이용되었다. 이후 1965년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건설하였는데, 동 공원은 현재 메릴랜드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DNR)의 공원관리과(Park Service)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 공원의 방문객 수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등대의 방문객 수를 포함하여 연간 25만 명에 이르고 있다.

동 공원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 해안 전망이 뛰어나며, 공원 전체에 소나무숲이 형성되어 있어서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바닷가에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방파제와 낚시용 잔교(pier)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닷가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형성된 숲에는 캠핑장(캠핑카 및 텐트용)이 마련되어 있어 체류형 낚시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보트 마리나 시설이 있어서 보트 진수가 가능하여, 선상낚시를 즐길 수 있다.

공원 이용시간은 오전 6시에서 일몰까지이며, 1일 이용료는 메릴랜드 지역 주민은 1인당 5달러이고 그 외는 6달러이다.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메릴랜드 지역 주민은 3달러, 그리고 그 외는 4달러이다. 동 공원에서 낚시터로는 낚시잔교, 자연석 방파제, 기타 해변가가 이용되고 있다. 낚시잔교(pier)는 710피트(216미터) 길이의 목재 및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잔교로서 24시간 낚시가 가능하다. 낚시잔교에는 구명환 등 구명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낚시터에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다.

| 표 4-3 |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의 주요 시설

구 분	주요 시설
낚시 관련 시설	낚시잔교, 자연석 방파제
보트 이용 시설	마리나, 보트 진수 시설, 어획물 세척장 등
캠핑시설	캠핑카·텐트용 캠핑장, 그릴, 피크닉 테이블, 전기, 수도 등
기타 활동 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해수욕장, 박물관 등
편의시설	그릴, 피크닉 테이블, 벤치, 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등

낚시잔교 바로 옆에는 백사장, 잔디밭, 피크닉 테이블 등이 있어서 낚시를 하지 않는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동 공원 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 주의 낚시면허를 구매해야 한다. 낚시면허

는 온라인 또는 낚시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동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야간낚시는 일몰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이용료로 차량당 3달러(기타 지역 주민은 4달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 그림 4-1 |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 낚시잔교

자료: 맵퀘스트 홈페이지(<http://www.mapquest.com>)

동 공원에는 잔교낚시 외에도 보트를 이용한 선상낚시가 가능하도록 마리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마리나에는 보트 진수시설과 어획물 처리장이 보트 이용객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보트 진수비는 10달러이며, 카약 등을 이용한 물놀이도 가능하다. 동 공원은 체류형 낚시가 가능하도록 텐트용 및 캠핑카용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다. 동 공원에는 143개의 개별 캠핑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중 26개는 전기, 물, 그릴 시설이 제공되며, 6개의 4인용 캠핑카 숙박시설(camper cabin)을 대여하고 있다. 해변에는 그릴 장비, 피크닉 테이블, 운동장, 샤워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낚시 외의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룩아웃 주립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메릴랜드주 천연자원부(DNR) 및 공원관리과(MPS) 예산, 지자체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중 공원관리과 예산이 전체 재원의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

당과 자체예산, 공원기금, 공원수입(공원입장료 및 이용료)에서 마련되고 있다.



| 그림 4-2 | 마리나 및 어획물 처리시설

② 미국의 낚시리조트 사례

가. 크리켓버킷 낚시잔교(Cricket Bucket Fishing Pier)

크리켓버킷 낚시잔교 리조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가족형 낚시터이다. 특히 동 낚시터는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저가 가족형 낚시터로서 저렴한 가격에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면서 소형 워터파크를 이용한 물놀이, 텐트나 캠핑카를 이용한 숙박이 가능한 낚시리조트이다. 동 낚시터는 골프시설 및 콘도가 갖추어진 고급 가족형 낚시터에 비해 저렴한 중저가형 낚시리조트로서 당일 낚시터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낚시터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직원은 2~4명이 근무한다. 낚시터는 3월에서 11월 까지 개장하며, 이용료는 성인 5달러, 아동 3달러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 표 4-4 | 크리켓버켓 낚시잔교 리조트

구 분	주요 시설
낚시 관련 시설	낚시잔교, 낚시점
보트 이용 시설	소형 마리나 및 보트 진수시설
캠핑시설	캠핑카·텐트용 캠핑장, 그릴, 피크닉 테이블, 전기, 수도 등
기타 활동 시설	산책로, 소형 워터슬라이트, 수영장
편의시설	그릴, 피크닉 테이블, 벤치, 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등



| 그림 4-3 | 크리켓버켓 낚시잔교 리조트

자료: 크리켓버켓 낚시잔교 리조트 홈페이지(<http://www.lakewaldosbeachcampground.com/>)

또한 보트 낚시가 가능하도록 소형 마리나가 시설되어 있다. 보트 진수비는 10달러이며, 보트 렌탈은 하루 25달러이다. 동 리조트는 여성 및 어린이가 낚시 외에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소형 워터파크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워터파크 입장료는 10세 미만의 경우 10달러, 이상은 12달러이다. 캠핑카 주차료는 1박에 28~3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나. 포시즌리조트(Four Seasons Resort)

미국에는 고급 가족형 낚시터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골프, 사냥, 낚시, 보트 활동, 수영,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캠핑 카를 이용한 숙박을 하거나 당일 방문에 그치는 저가형 낚시터와는 차별화 된다. 이러한 고급형 리조트에서의 낚시는 잔교낚시도 가능하지만 보트 대 여를 통한 선상낚시가 보편화되어 있다.



| 그림 4-4 | 포시즌 낚시리조트 조감도 및 시설

자료: 포시즌리조트 홈페이지(<http://www.fishingwinni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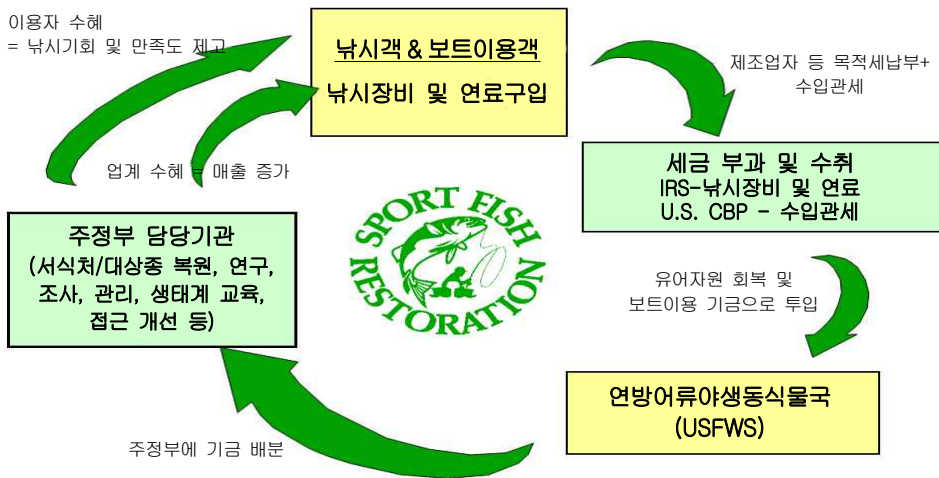
2) 관련 제도 및 정책

(1)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유어낚시 및 관련 산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이다. 동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정부, 유어낚시 업체, 유어낚시객 등을 참여시키는 협력적 프로그램으로서 유어낚시객과 관련 업체가 지불하는 세금을 유어낚시와 유어선 이용의 확대를 위해 재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³⁴⁾

동 프로그램은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법(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Act)의 제정과 함께 1950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법은 입법발의를 한 John Dingell과 Edwin Johnson의 이름을 따서 Dingell-Johnson Act라고도 불린다. 동법은 1984년에 Malcolm Wallop과 John B. Breaux에 의해 개정되면서 세원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법의 개정안을 알롭-브로 개정안(Wallop-Breaux Amendment)이라고 한다.³⁵⁾



| 그림 4-5 | 미국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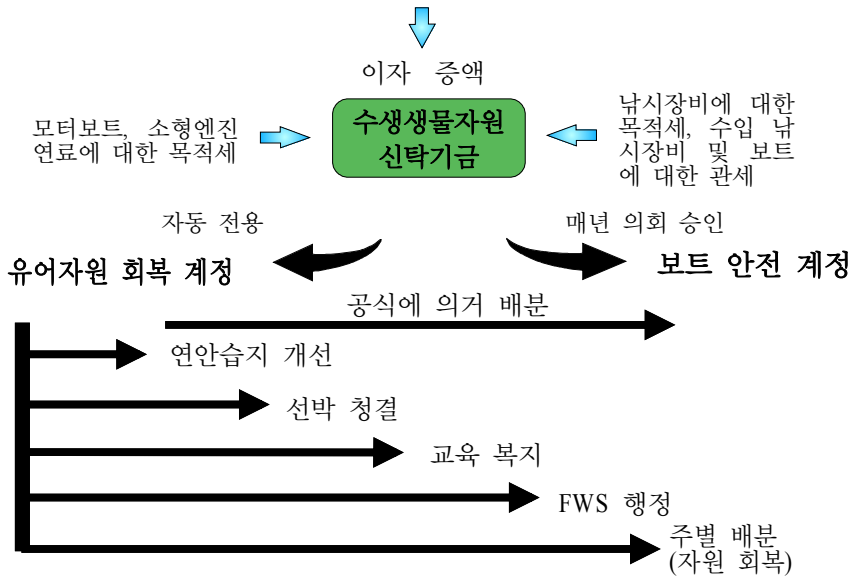
자료: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handbook*, 2000, p. 2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지불원칙(User pays - user benefits) 또는 수혜자 지불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즉 유어 낚시 대상 자원의 이용자이면서 수혜자인 유어낚시객과 유어선업자가 사용하는 낚시 관련 장비 및 모터보트의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동

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2007, p. 438.

35)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은 1984년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Aquatic Resources Trust Fund)의 신설을 통해서 크게 확대되었다. 동 기금은 Wallop-Breaux 개정 에 의해 탄생된 기금으로서 Wallop-Breaux Trust Fund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을 다시 유어납시 자원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 증가와 유어납시 및 보트 사용의 기회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³⁶⁾



| 그림 4-6 | 미국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의 흐름

자료: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handbook*, 2000, p. 13

구체적으로 유어납시의 이용자가 지불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재무부를 거쳐서 연방어류·야생동식물국이 주정부 담당기관(주정부 어류야생동식물 담당 부서)에 배분한다. 이후 동 재원은 재차 유어자원 회복, 습지 보전, 각종 교육 프로그램, 보트 안전, 보트 및 유어납시객의 접근로 개선 등에 투자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유어자원의 증가를 통해서 유어납시 및 보트 사용 기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법은 1984년에 월롭-

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계서, 2007, pp. 438~439.

브로 개정사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동 개정사항에 따라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Aquatic Resources Trust Fund)이 신설되었는데, 동 기금은 유어자원 회복 계정과 보트 안전 계정으로 배분된다.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된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우선 전년도에서 넘어 온 이자증액분과 당해연도 유어낚시 이용자로부터 취합된 재원은 유어자원 회복 계정으로 배분되어 다시 정해진 공식에 의거하여 각 주의 유어자원 회복 프로그램(주별 배분), 연안습지 프로그램, 선박 청결 프로그램, 각종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배분된다.

◆ FY2011 - 주별 배분액 364.7 백만 달러 (총예산의 57%) :

- 낚시 관련 연구 및 조사
- 산란장 복원 및 유지
- 감소하는 유어 대상종 재도입
- 보트 램프 및 낚시잔교(pier) 건설
- 수생태계 교육
- 서식처 복원
- 보트 이용 접근 개선
- 관련 토지 매입
- 낚시 접근 개선
- 도시민 낚시 프로그램



| 그림 4-7 | 주정부 배분액의 사용 가능 분야

자료: John Streml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한편, 각 주로 배분된 재원의 사용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주에서는 유어낚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업은 주로 배양장 유지 및 종묘 방류, 유어낚시 조사 및 관리활동, 보트 및 유어낚시객의 접근로 개선, 수생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한 교육, 서식처 유지 및 관리 등이 해당된다.

(2) 유어낚시 관련 자원 투자 및 효과

미국에서 유어낚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조성된 투자금액은 낚시도구를 넘어서 경제 여러 부문에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만약 유어자원 확대, 접근성 개선, 미래 고객 확보 등 유어낚시산업의 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감소한다면 유어낚시객의 낚시 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낚시 관련 장비의 구매 감소 등 관련 낚시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41년부터 미국의 낚시산업 관련 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 연방 목적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1950년까지 상기 목적세는 국고로 귀속되어 제조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수취된 세금은 동 프로그램 하에 유어낚시산업의 발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³⁷⁾ 이러한 목적세 전용의 목적은 유어자원 증강, 일반인의 접근 기회 개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게 되고 이것이 곧 낚시용품 등의 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상기 목적세와 관련된 낚시 관련 장비의 구입은 거의 200%가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낚시도구(연료류에 대한 세금과 이자 제외)에 부과된 목적세와 수입관세는 1.23억 달러(목적세 8,915만 달러, 수입관세 3,385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세금은 다시 주정부에 배분되어 유어자원 증강 및 낚시 접근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재투자되었다.³⁸⁾

한편, 단순한 법령 제정 및 집행에 더해 낚시산업 관련 업체 등은 이러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37) 동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요금이 공립학교 지원 등 종종 낚시와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연방법에 의해 낚시 관련 목적세는 낚시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한 사용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2011).

38) 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Financial returns to businesses from th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 2011, p. 5.

미국에서는 전용된 세금에 대한 투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표 4-5>는 유어자원 회복 목적세 납세액과 동 세금 관련 낚시장비의 구입액을 비교한 것이다.³⁹⁾ 1955년에는 42.8백만 달러(2009년 기준 환산) 수준이었던 세금은 2001년에는 179.4백만 달러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그리고 1955년 19.5억 달러에 불과하던 낚시장비의 구입은 1996년에는 72.6억 달러(2009년 기준 환산)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낚시인구의 정체와 함께 감소하여 2006년에는 56.7억 달러에 이르렀다. 납부한 목적세를 관련 업계의 투자금의 개념으로 볼 때, 목적세에 대한 투자수익(ROI)⁴⁰⁾은 1955년에는 2,178%, 그리고 2006년에는 1,911%에 이른다.⁴¹⁾

표 4-5 | 미국의 목적세 납부액과 낚시장비 구입액

단위: 천 달러

연도	목적세 납부액		목적세 관련 낚시 관련 장비 구매액			ROI (%)
	실질금액	2009년 기준	실질금액	2009년 기준	도매가 기준	
1955	5,347	42,807	243,626	1,950,253	975,127	2,178
1960	5,836	42,296	308,326	2,234,707	1,117,354	2,542
1965	7,373	50,218	323,543	2,203,554	1,101,777	2,094
1970	13,924	76,991	469,149	2,594,068	1,297,034	1,585
1980	33,640	87,585	1,845,321	4,804,486	2,402,243	2,643
1985	67,937	135,455	2,786,922	5,556,672	2,778,336	1,951
1991	109,539	172,542	3,740,104	5,891,268	2,945,634	1,607
1996	128,929	176,291	5,308,674	7,258,808	3,629,404	1,959
2001	148,140	179,455	4,617,612	5,593,725	2,796,862	1,459
2006	132,600	141,109	5,332,401	5,674,590	2,837,295	1,911

주: 2009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됨.

자료: 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Financial returns to businesses from th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 2011,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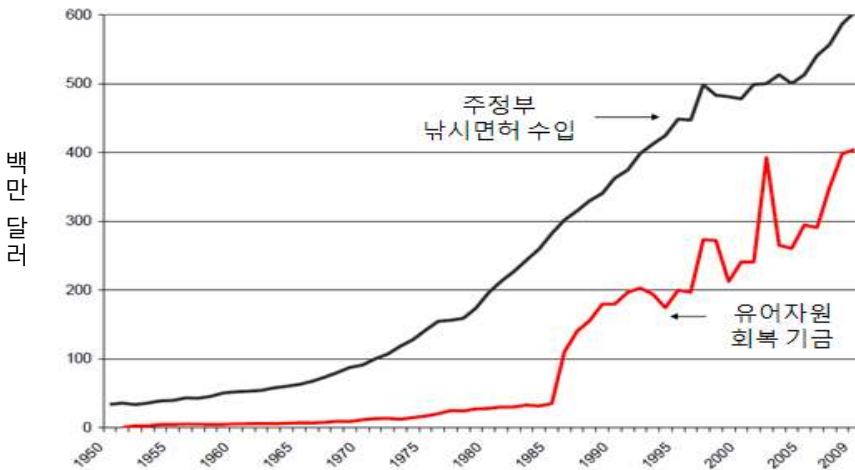
39) 관련 자료 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어 현재 2006년도 자료가 최신 자료임.

40) 목적세 관련 ROI = [(목적세가 부과되는 관련 장비의 도매 관련 지출액 - 목적세 관련 투자) / 목적세 관련 투자].

41) 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전제서, 2011, p. 19.

한편,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 프로그램 외의 자금을 자원조성 프로젝트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동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낚시면허세를 유어자원 관련 프로그램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동 조항이 없다면 주정부 낚시면허세의 대다수가 낚시 외의 분야에 전용되고 말았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전례 없는 재정난에 허덕일 때 여러 번의 예산 전용 시도가 있었지만 연방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시도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림 4-8>에서와 같이 1950년 이후 낚시면허세는 주정부에 배분되는 유어자원 회복 기금의 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유어자원 회복프로그램의 기금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타 자금을 낚시산업 활성화에 끌어들이고 있다.



| 그림 4-8 | 미국 주정부의 낚시면허세와 유어자원 회복 기금

자료: 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Financial returns to businesses from th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 2011, p. 16

2. 일본 사례

1) 일본의 낚시산업 실태

(1) 낚시인구 및 비용

일본의 낚시에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어업센서스 중 유어채포량 조사보고서가 유일하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의 유어 어업자 수는 전국에 15,400명이 있으며, 유어자 수는 3,973천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업센서스의 조사는 주로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낚시산업의 현황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표 4-6 | 해면 및 내수면 유어자의 주어

구 분	유어업자 수	유어자 수	유어 조획량	
			총 조획량	1인당 조획량
	명	천 명	톤	kg
전 국	15,400	3,973	29,000	7.3
북해도태평양북구	657	109	3,080	28.4
태평양북구	1,760	440	4,580	10.4
태평양중구	3,280	1,582	6,850	4.3
태평양남구	916	168	1,050	6.3
북해도일본해북구	954	111	1,620	14.6
동해 북구	1,260	219	2,060	9.4
동해 서구	1,430	290	2,050	7.1
동지나해구	3,270	334	3,620	10.8
세토나야해구	1,910	721	4,060	5.6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유어채포량 조사보고서, 2008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민간단체인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레저백서」를 통해 낚시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백

서의 각 레저 부문별 수요동향조사를 보면, 2010년의 여가활동 참가율(총 표본수 3,728개)에서 낚시는 총 참여율이 6위, 9.2%로 야구나 배드민턴, 골프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 | 일본의 성별·연령별 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구 분		체 조	마라톤, 조깅	트레 이닝	수 영	사이 클링	낚 시	야 구	배드 민턴
총 참여율		26.0	25.1	18.0	13.7	13.3	9.2	9.0	8.7
남성	소계	23.1	31.7	22.9	14.4	18.4	14.1	14.6	7.3
	10대	35.5	58.1	43	28.0	25.8	8.6	35.5	36.6
	20대	17.7	48.5	23.3	18.5	16.2	18.8	28.8	15.8
	30대	15	31.0	25.3	14.0	19.3	12.0	18.0	5.0
	40대	18.9	27.2	19.2	16.9	21.2	17.5	18.5	7.3
	50대	20.8	21.8	19.8	9.7	16.8	13.1	5.0	4.4
	60대 이상	31.8	27.4	17.3	11.4	17.1	12.7	5.5	1.3
여성	소계	28.6	19.1	13.5	13.2	8.6	4.6	3.8	10.0
	10대	37.1	52.4	22.9	25.7	21.8	1.9	17.1	58.1
	20대	24.7	26.9	18.1	11.4	7.7	5.9	7.0	18.1
	30대	25.1	19.3	10.4	12.4	10.4	7.5	5.5	9.2
	40대	23.5	13.8	11.2	9.1	7.4	6.8	4.4	6.8
	50대	25.2	12.8	16.8	11.1	8.1	3.7	0.3	3.7
	60대 이상	36	15.4	11.1	15.6	6.5	1.8	0.4	3.2

자료: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레저백서」, 2011

낚시에 대한 참여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남자가 14.1%, 여자가 4.6%로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20대가 높고 10대가 가장 낮지만, 여성의 경우는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레저백서에 나타난 잠재수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의 잠재수요란 장래의 참가희망율과 현재의 참가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수요의 비율이다.

잠재수요조사에서 낚시는 전체 상위 10개 종목에는 포함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성별로는 순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 전체는 5위였지만 연령별로는 50대가 9위, 60대가 3위로 나타나 나이가 높을수록 잠재수요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전체와 연령별 잠재수요에서 상위 10개 종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결국 낚시레저의 참여율은 비교적 높지만, 비참여자의 잠재수요는 남성의 50대 이상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레저백서에서 추정된 낚시인구 및 레저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낚시인구 추정치는 약 940만 명이며, 연평균 낚시횟수는 9.8회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연평균 낚시비용은 4만 2천 엔이며, 일본 전체로 환산하면 약 3,957억 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인 1회당 낚시비용은 4,300엔으로, 레저 참가인구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 일본의 낚시 참가 및 소비 실태

구 분	참가 인구	총 참여율	연평균 활동횟수	1인당 연평균 비용			1회당 비용	참가 희망률
				용구 등	회비 등	합계		
	만 명	%	회	천 엔	천 엔	천 엔	엔	%
체 조	2,660	26.0	46.4	2.2	4.0	6.1	130	22.4
마라톤, 조깅	2,570	25.1	33.6	4.5	2.8	7.3	220	27.8
트레이닝	1,840	18.0	44.7	8.3	13.1	21.4	480	20.9
수 영	1,400	13.7	23.9	8.3	14.7	22.9	960	21.8
사이클링	1,360	13.3	27.0	10.5	2.8	13.3	490	14.7
낚 시	940	9.2	9.8	22.7	19.3	42.1	4,300	14.4
야 구	920	9.0	12.4	2.2	1.3	3.5	280	7.5
배드민턴	890	8.7	13.4	4.7	2.2	6.8	510	8.8

자료: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레저백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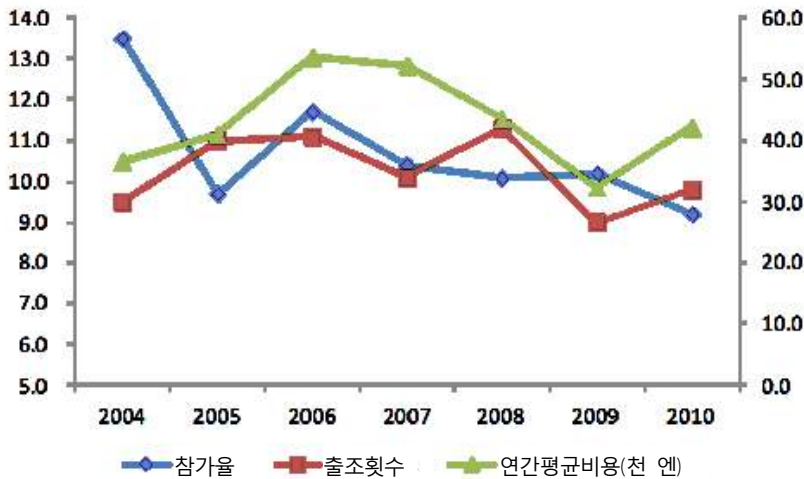
레저백서에 나타난 이상의 결과는 설문조사에 의한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동 백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추이를 알기에는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그림 4-9 | 일본 낚시인구의 연도별 추이

자료: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레저백서」, 2011

다음으로 일본 낚시인구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01년에 1,650만 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940만 명으로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낚시 참여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조횟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평균 출조비용도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낚시인구가 줄어들면서 관련 지표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0 | 일본 낚시 참가율, 횟수 및 비용의 연도별 추이

자료: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레저백서」, 2011

(2) 일본의 낚시도구산업 규모

일본 낚시도구산업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낚시용품의 국내수요동향조사보고서」가 있다. 「레저백서」에서도 낚시도구업계의 매출과 수출입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스포츠 부문 시장규모는 2000년에 496백억 엔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규모가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401백억 엔으로 19.1% 감소하였다. 낚시도구 소매시장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 25.9백억 엔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규모가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18.2백억 엔으로 29.8% 감소하였다. 이를 일본 국내 낚시도구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과 낚시도구 수입으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낚시도구 제조업 총 출하액은 2010년에 2000년 대비 27.0% 감소하였고, 국내 출하는 30.3%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출은 1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29.1% 감소하였다.

| 표 4-9 | 일본의 낚시도구산업 시장규모

단위: 백억 엔, %

구 분	스포츠부분 시장규모(A)	낚시도구 소매시장(B)					B/A
		소 계	일본 제조업			수 입	
			소 계	내 수	수 출		
2000	496.0	25.9	18.7	17.2	1.5	8.7	5.2%
2001	478.8	23.9	17.3	15.9	1.4	8.0	5.0%
2002	459.9	22.6	16.5	15.0	1.6	7.6	4.9%
2003	452.5	20.8	15.2	13.8	1.5	7.1	4.6%
2004	438.0	19.9	14.6	13.1	1.5	6.7	4.5%
2005	421.6	19.2	14.3	12.7	1.6	6.5	4.6%
2006	423.2	18.9	14.4	12.5	1.9	6.3	4.5%
2007	424.4	19.1	14.7	12.7	2.0	6.4	4.5%
2008	416.5	18.9	14.4	12.5	1.9	6.4	4.5%
2009	407.0	18.9	14.0	12.5	1.5	6.4	4.6%
2010	401.5	18.2	13.6	12.0	1.6	6.2	4.5%

자료: 1.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레저백서」, 2011

2.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 「낚시용품의 국내수요동향조사보고」, 2011

이는 일본의 낚시도구산업이 수출을 제외한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고, 시장 구성의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일본 내 출하와 수입이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 관련 제도 및 정책

낚시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법·제도가 주된 것으로, 타 부처는 규제에 관한 것이 일부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일본의 낚시 관련 제도에서 ‘낚시’라는 용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유어’로 표현하고 있어 이하에서도 낚시로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유어’로 하였다.

(1)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는 법령

① 어업법·수산자원보호법·도도부현 어업조정 규칙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는 법령으로서 우선 ‘어업법’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법’은 어법의 제한이나 보호수면 등을 설정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법 제5조(어법의 제한)에서는 폭발물·유독물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면(제15조)에서는 보호배양에 필요한 조치 등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각 도도부현(道都府縣)의 해면·내수면어업조정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도도부현의 해면·내수면어업조정규칙은 관할수면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자나 유어자 등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주로 어구·어법, 채포금지 구역, 채포금지 기간, 체장 제한 등의 규제를 정하여 위반자에게는 징역 혹은 벌금, 과료의 벌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다.

유어와 관련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산청 통지인 ‘해면에서 유어와 어업과의 조정에 대해서(1972년 5월)’가 있는데, 유어자의 증가로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유어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되면서 2002년 12월에 ‘유어와 어업의 조정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에서 i) 유어에 관한 규제 재검토, ii) 어업과 유어에 공통된 규제의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먼저 유어에 관한 규제 재검토는 첫째,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미끼뿌림낚시를 자원관리나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장을 제외하고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둘째, 유어의 광력규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셋째, 유어에서 전면 금지되어 있던 끌연승의 전면금지를 해제하고, 구역·기간·어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한 혹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어업과 유어의 공통 규제 재검토에서는 어획물(체장, 연령), 구역·기간 등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조치 통일 및 우량어장에서 어선, 유어선, 플레저

보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척수 제한을 검토하였다. 유어자 등이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어업조정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표 4-10>과 같다.

| 표 4-10 | 유어자 등의 벌칙규정(어업법 · 수산자원보호법 · 어업조정 규칙)

법령	제한금지 규정	법령위반의 내용	벌칙 조항	벌조의 내용				
				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어획물 어선물수
어업법	9 조	어업권, 입어권 없는 구획, 정치어업 조업	138조 1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52조	허가 받지 않은 지정어업 조업 등	138조 4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1조	지정어업 허가내용 위반	138조 5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34, 63조	어업권, 지정어업 제한, 조건 위반	138조 2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5조	어업조정 명령 위반	138조 6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6조	허가 없는 지사 허가어업 조업 등	138조 7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7조	위원회 지시 위반	139조	1년 이하	50만 엔 이하	○	○	○
	29조	어업권 대여	141조 1호	6개월 이하	30만 엔 이하	×	×	×
	74조	어업 감독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	141조 2호	6개월 이하	30만 엔 이하	×	×	×
	134조	보고 태만, 허위보고, 검사 거부	141조 4호	6개월 이하	30만 엔 이하	×	×	×
	—	어업권 · 어업행사권 침해(치고죄)	143조	×	20만 엔 이하	×	×	×
수산자원 보호법	4 조	수산동식물 채포제한 명령 위반	36조 1 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5 조	폭발물 사용 금지	36조 2 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 조	유독물 사용 금지	36조 2 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7 조	5, 6조 위반 어획물 소지, 판매	36조 2 호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농림 수산성령 (지정어업성 령 등)	17조	금지구역, 금지기간 중 조업, 금지어구, 어법 사용	106조	2년 이하	50만 엔 이하	×	×	○
해구 · 내수 면어업 조정규칙	35조 내25	채포 금지기간 중 채포	57조 내39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6조 내26	채장제한 이하 수산동식물 채포, 조업 등	57조 내39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9조 내29,30,31	채포 금지구역 채포	57조 내39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7조 내6	허가 받지 않은 지사 허가어업 조업	어업법 65조, 수산자원보호법 4조 적용 내39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7조 내27	금지어구, 어법 사용	57조 내39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4조 내24	유독물의 유기, 투설 금지	57조 내39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45조	유어자 등의 금지 어구, 어법 사용 채포	58조	×	×	×	○	×

주: 해구 · 내수면어업 조정규칙에서 ‘내’는 내수면을 말한다.

자료: 가고시마현 수산과, 「바다와 강의 이용자를 위한 핸드북」, 2007. 12

② 해구어업조정위원회 ·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는 어업자 대표와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어업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어장이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해결 및 기타 어업조정상의 이유로 관계자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의 대상은 어업자뿐만 아니라 유어자 까지도 포함된다.

유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유어자의 집어등 광력 제한이나 미끼뿌림낚시에 의한 유어 안내행위의 금지, 지역이나 어종마다 어기, 어체규제 등이다. 그 외에는 바다목장이나 정치망의 주변에 일정한 보호구역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유어를 금지(미에 현 바다목장)하는 곳도 있다. 한편 위원회의 지시는 1년 기한의 조치가 많으므로 매년 지시를 개정하고 있다.

③ 해면이용협의회

해면이용협의회는 해면에서 어업과 유어의 분쟁 예방 및 조정·해결을 촉진하며, 해면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청장의 통달(1994년 7월)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었다. 이는 1979년에 동일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어장이용조정협의회’를 대체한 것이다.

해면이용협의회는 어업관계자, 유어자를 포함하는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 및 학식경험자 중에서 지사가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동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어업자나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의 요망을 지구별 해면이용협의회를 통해 수집하여 그것을 도도부현에 전달하거나,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해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이다. 그 외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있다.

④ 유어규칙

하천·호수 등 내수면의 대부분은 어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내수면어협에 제5종 공동어업권이 면허되어 있고, 법 제127조에 따라 내수면어협은 조합원 이외 자의 어업권 대상어종 채포에 대해 유어규칙으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유어규칙의 주요 내용은 i) 유어의 제한 범위, ii) 유어 요금과 납부 방법, iii) 유어승인증 발급, iv) 유어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단, 어협마다 규칙을 정하므로 규정 내용은 차이가 있다. 또한 조합장은 어장 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시원은 유어규칙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유어자가 내수면에서 낚시를 할 경우, 내수면어협이 발행하는 유어승인증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낚시행위자는 어협이 직접 채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벌칙은 도도부현에서 정하는 내수면어업조정규칙에 따른다. 또한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는 내수면에서는 유어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수면어업조정규칙의 채포금지 기간, 체장 제한 등이 적용되며 채포행위에 따라서는 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유어허가증은 기간별로 일일면허와 연간면허가 있으며, 요금은 일일면허가 1,000~2,500엔, 연간면허는 4,500~5,500엔으로 지정된 특정 내수면에 서만 낚시가 가능하지만, 연간 Common티켓은 약 12,500엔으로 해당 어협 관할의 모든 내수면에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유어선업은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이용객을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동물을 채포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유어선에는 낚시선, 도선, 체험형 등이 있다. 단, 영리목적 어업, 선박을 이용하지만 수산동식물 채포가 목적이 아닌 선박(고래·돌고래 관찰(watching) 안내선, 다이빙 안내선, 어업견학 안내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1988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유어선업자의 지자체 신고, 기상정보 수집, 이용자 명부 준비 등 안전성 확보가 중심이었다. 이후 안전사고 증가와 안전대책 소홀 문제로 2002년 6월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신고제를 등록제(5년마다 갱신)로 한 점(제3조), 영업소마다에 업무규정을 작성하고 도도부현 신고를 의무화한 점(제11조)이다.

유어선업 등록조건은 i) 유어선 업무주임자의 선출, ii)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제4조), iii) 과거 2년 이내에 관련 법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제6조)이 있다. 유어선 업무주임자는 해기(또는 항해)사 2급 이상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고, 유어선업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소유한 사람 또는 유어선업무 주임자의 밑에서 10일(1일당 5시간 이상) 이상의 실무연수를 수료함과 동시에 유어선업무 주임강습(농림수산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강습)을 수료(수강 후 5년 이내)한 사람을 말한다(제12조). 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은 승선 정원 1명당 재해전보액 3,000만 엔 이상의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해졌다.

또한 업무규정을 두어 출항중지의 기준, 사고발생시의 대처방법, 어종·어기·어구 등 규제 방법을 정하는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출항 시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해상(海象)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출항 가부의 판단을 하며, 이용자 명부를 영업소와 유어선 내에 구비하고(제14조), 수산동식물의 채포·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내용을 주지시키며(제15조), 반드시 유어선업 주임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한다.

그 외에 유어선업이 적정한 운영이나 어장의 적정한 이용 및 자율적인 어장 이용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어선업자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즉 유어선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어선업 단체를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에 의해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다(제20조). 이 단체의 주요 역할은 구성원

에 대한 지도나 어장 이용에 관한 어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다(제21조).

(2) 수산동식물의 보호, 어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자주규제

해면에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 외에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자, 유어선업자, 유어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업방법, 체장 제한 등의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인정을 받은 것이 있다.

① 어장이용협정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의 제24조는 어업자, 유어자 및 유어선업자의 단체가 어장의 안정적인 이용관계의 확보를 목적으로 ‘어장이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조업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협정의 내용은 조업구역, 조업시간, 대상어종, 어구, 어법의 제한 등이며, 상호 이해를 토대로 맺은 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단, 어업과 유어의 분쟁은 지역실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어장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상의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게 어장이용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

② 자원관리협정 및 자원관리규정

‘자원관리협정’ 및 ‘자원관리규정’은 수산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어업자 단체 간 또는 어업자 단체와 유어선업자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 및 관리를 규정한 것이다.

자원관리협정의 체결은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제13조에 정해져 있다. 동 조항에는 해양수산자원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어업자 단체 등이 일정한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은 대상해역·업종·어종관리방법(체장 제한, 금지 구역·기간 등) 및 협정의 유효기간 등이다. 협정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자원관리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에 정해져 있다. 동 규정은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합원에 대하여 어업, 유어선업을 영위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은 i) 대상 수면 및 업종, ii) 수산자원의 관리 방법(채포 방법, 기간, 체장 제한 등), iii) 규정의 유효기간, iv) 규정 위반자에의 과태료 등이며, 규정을 정할 때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의 법률에 근거하는 규제 외에도 해양레크리에이션과 어업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전국각지에서 어업자 단체와 유어를 포함한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 간에 비공식적인 협정 및 합의가 맺어진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북해도의 도카치(十勝)에서는 도카치 관내 어협조합회장회와 도카치 마린연맹(PB단체)이 ‘도카치 합의’를 2004년 3월에 제정하였다. 동 규칙이 체결된 배경은 i) 유어자에 의한 자원 남획 및 어구 피해, ii) 유어자의 어항시설의 무질서한 이용, iii) 플레저보트의 해난사고의 증가 등이다. 이에 대해 합의된 협정은 크게 유어선낚시에 관한 협정과 플레저보트의 어항시설 이용에 관한 협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유어구역의 설정, 가을 연어의 낚시어획량의 제한(1일당 10마리/인), 낚시어획조사표의 제출, 악천후 시의 출항 금지 등이며, 후자는 오쓰(大津) 어항에서 플레저보트의 개방, 주차장 이용 및 출입항 시간과 출항신고서 제출 등이다.

(3) 낚시인 전문관 제도

일본 수산청은 2004년 10월부터 농림수산성 조직규칙 제537조를 개정하여 낚시인 전문관 제도를 신설하였다. 낚시전문관은 낚시, 기타의 방법으

로 유어를 하는 자에 관한 전문사항에 관한 기획 및 연락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1971년 수산청 어업지도과에 유어지도계가 설치된 후, 유어조정지도실, 유어·해면이용실 유어조정반 등으로 명칭이 변해왔으나 유어와 어업의 조정 목적이 강하였다. 그러나 낚시전문관을 연안근해과에 둠으로써 어업 조정의 역할보다는 낚시 그 자체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낚시인들의 ‘낚시과’ 신설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현재까지 낚시에 관련된 전문적인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

낚시전문관의 역할은 낚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각종 연구회, 협의회 등의 민원 응대, 낚시매너에 대한 계몽과 강연회 등의 실시,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 낚시 관련 제도의 검토와 정책반영 등이다.

3. 중국 사례

1) 중국의 낚시산업 실태

(1) 중국 낚시산업 개황

낚시는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아 온 레저활동으로서 전에는 개인의 취미생활이던 것이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행 및 여가생활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증하는 등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제는 국민 레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건강·자연’을 여가 생활의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어 낚시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낚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레저어업이 내륙뿐만 아니라 연해지역의 어업 발전과 어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레저어업(休閒漁業)이라 함은 어민의 생활 및 조업방식 등을 여행과 결부시켜 여행객으로 하여금 어민의 생활을 체험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업을 가리킨다. 따라서 레저어업은 낚시 및 어촌 체험을 중심으로 여행, 휴양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여가 활동인 것이다. 중국의 레저어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광둥주장코우(廣東珠江口) 일대와 저우산(舟山), 닝푸어(寧波), 윈저우(溫州) 등에서는 해상 관광어업선⁴²⁾의 연간 생산액이 1억 위안(元) 이상이며, 저장(浙江), 광둥(廣東), 푸지안(福建) 3개 성(省)에서는 낚시, 여행, 관광을 결합시킨 레저어업 상품 개발을 통해 약 2억 위안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낚시인구가 9,000여만 명에 달하며 국가체육위원회에서는 이미 ‘국민건강계획개요(全民健身計劃綱要)’에 레저어업을 추가하여 추진 중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낚시인구가 1인당 연간 200위안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레저어업은 매년 약 200억 위안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중국은 ‘낚싯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낚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환경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낚시장소의 제한과 유료 낚시와 같은 상업적 낚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에 따라 낚시장소와 낚시 대상어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낚시를 중심으로 하는 레저어업은 빠른 성장속도에 힘입어 어업경제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4-11>에 따르면 레저어업이 어업경제 총 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19%에서 2009년에는 0.7% 증가한 1.89%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업 총 생산액을 보면 2006년 8,518억 위안에서 2009년에는 1조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낚시를 포함한 레저어업은 매년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중국 전체 경제성장에 따라 레저어업

42) 해상 관광어업선은 바다낚시, 해상관광, 해산물 시식 등을 포함함.

생산액이 전년 대비 51.2% 증가한 154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8년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라 중국의 레저어업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 레저어업 또한 전년 대비 23.7%가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레저어업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낚시도구 제조업, 숙박업, 여행관광업, 음식업 등 관련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표 4-11 | 어업경제 총 생산액

단위: 만 위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어업경제 전체	85,181,903	95,391,290	103,975,019	114,451,251
1. 어업	45,090,550	49,562,267	55,206,412	59,373,732
일반해면	8,711,100	9,711,273	12,633,660	14,003,861
천해양식	9,657,076	10,574,073	25,669,259	27,593,123
내수면	2,166,139	2,302,965	10,928,849	11,553,835
내수면양식	19,174,168	21,685,928	2,987,874	2,945,302
어업종묘	2,358,663	2,513,698	2,996,770	3,277,612
2. 어업공업과 건축업	20,395,641	23,350,486	25,614,418	26,796,412
수산가공	15,431,767	18,011,271	19,713,704	20,265,994
어업기구제조	878,477	979,735	1,042,748	1,137,598
어업용 사료	1,974,407	2,295,551	2,675,424	2,897,866
어업용 약물	57,666	101,660	109,824	108,651
건축업	667,105	662,425	849,669	962,054
기타	1,386,219	1,299,843	1,223,049	1,424,249
3. 어업유통과 서비스업	19,695,712	22,478,537	23,154,189	28,281,108
수산유통	16,094,853	18,325,630	18,620,899	22,918,414
수산(창고)운송	1,127,052	1,265,244	1,247,578	1,659,458
레저어업	1,015,672 (1.19%)	1,535,228 (1.61%)	1,744,831 (1.68%)	2,157,791 (1.89%)
전년대비 증감률	-	▲ 51.2%	▲ 13.7%	▲ 23.7%
기타	1,458,136	1,352,434	1,540,880	1,545,445

자료: 농업부어업국, 「중국어업연감」, 2008 ~ 2010

(2) 낚시도구 제조업 현황 및 정부 지원

중국의 낚시도구 제조업은 1982년부터 일본에서 낚싯대, 낚시릴의 생산기술을 도입한 이래 7년간의 도입기를 거쳐 1989년에는 일정한 규모와 체계화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산둥웨이하이(山東威海) 및 주변 지역의 낚시도구 생산기지에 약 40여 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생산규모가 억 위안 단위인 동시에 수출에 주력하는 낚싯대 생산기업이 2개, 중소규모 기업은 30여 개에 달하였다. 그리고 관련 산업인 페인트, 기계제조, 낚싯대 부품, 합성수지 등의 생산기업도 설립되었다. 또한 저장(浙江), 장수(江蘇),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라이닝(遼寧), 허베이(河北), 푸지안(福建), 광둥(廣東) 등 지역에서는 낚싯대와 낚시릴 합작기업이 25개나 추가 설립되었다. 기타 낚시 보조용품 생산기업도 200개에 달해 1993년 연간 생산액이 7억 위안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규모가 큰 낚시용품 제조업기지로는 허베이꾸안(河北固安)과 산둥웨이하이(山東威海) 지역이다. 허베이꾸안 지역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낚시도구 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의 낚시도구 생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낚시관련 제조 기업이 700~800개 가량 입지해 있으며, 그 중 대규모 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 여기서 생산된 낚시도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20여 개국과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낚시용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낚시찌(漁漂) 생산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낚시찌 생산기지이다. 중국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낚시도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이 지역에는 홍판(紅帆), 강신(康新)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14개 제품은 국가특허를 받았다. 또한 낚시용품 제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어

구 생산 선두기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한편, 상기 지역에서는 허베이성(河北省) 중소기업 창업모범 기지를 선정하고, 낚시용품 등 관련 생산기업 11개가 설립되어 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낚시용품 관련 제조기업 96개가 신규 설립되었고 제품도 단일 품목(낚시찌) 생산에서 낚시대, 텐트 등 300여 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시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노동기술능력 교육 10차례, 창업교육 3차례 등을 실시하였다.

산둥웨이하이 지역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낚시도구 제조업기지이다. 이 지역은 1981년 전국에서 낚시대를 생산하는 첫 번째 기업이 설립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낚시도구 생산기업 400개, 관련 제조기업 600개로 발전해 왔다. 생산제품으로는 낚시대, 인조미끼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낚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현재는 1,000여 개의 품종, 2만여 개 규격의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이 지역의 연간 낚시도구 수출금액은 약 3억 달러에 달하여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연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출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낚시도구 생산의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50%가 바로 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 대부분의 낚시도구 제조기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취하고 있는데 첨단기술 제품이 적어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의 채산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부동산, 관광업 등 기타 산업 영역의 경영을 병행하기 시작하여 제조업기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향후 웨이하이의 낚시도구 생산기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웨이하이블루경제구건설계획(威海藍色經濟區建設總體規劃)’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으로는 4대 영역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그중 어구 생산과 어업기계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국제 낚시 및

레저낚시와 관련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전반적인 어구산업을 브랜드화, 규모화, 첨단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3) 낚시도구 수출입 현황

① 수출 현황

중국에서 생산된 낚시도구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이 중 주요 수출품은 낚싯대, 낚싯바늘, 낚시릴, 어망 등이다. 해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낚시도구 수출금액은 51,574만 달러로, 2004년보다 15.4% 증가하였다. 그리고 낚싯대는 6,400만 개, 낚시릴은 4,566만 개, 낚싯바늘은 3,380톤을 수출하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낚싯대의 경우 아시아 일부 국가에 약 1,326만 개, 유럽연합 15개국에 1,285만 개, 북미 2,297만 개, 러시아 569만 개, 아프리카 및 남미와 호주에는 총 460여 만 개를 수출하였다. 낚시릴의 경우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1,293만 개, 유럽 15개국에 758만 개, 북미 1,155만 개, 러시아 705만 개, 아프리카 및 남미와 호주에 총 360만 개를 수출하였다.

2006년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낚싯대의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는 수출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금액이 가장 크고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서유럽 시장에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 집중되었다. 이 중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5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국가는 전년 대비 배로 증가하였다. 동유럽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집중되었다. 남미시장의 경우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의 수출금액은 하락세를 보였다. 북미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캐나다에 대한 수출금액은 소폭 하락하였고, 호주는 금액상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하였다.

낙시릴의 경우,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안정적이었고 그중 터키에 대한 수출이 50% 증가하였다. 서유럽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그중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중국의 낙시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유럽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70% 이상,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100% 이상 증가하였다. 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5% 이상, 호주는 50% 이상 증가하였다.

| 표 4-12 | 낙시도구 수출 현황

단위: 달러

국가	2007년	2008년	전년 대비 (%)
일본	109,177,750	121,041,431	10.9
미국	211,019,184	203,368,608	-3.6
독일	36,708,911	45,793,848	24.7
한국	26,579,430	24,778,024	-6.8
네덜란드	30,015,754	31,197,876	3.9
이탈리아	27,976,662	30,518,534	9.1
영국	26,649,709	28,642,546	7.5
프랑스	22,474,181	27,676,157	23.1
호주	23,642,626	27,223,396	15.1
우크라이나	12,715,803	15,541,749	22.2
싱가포르	12,280,007	12,660,743	3.1
캐나다	10,970,743	12,154,447	10.8
벨기에	15,557,612	13,502,200	-13.2
홍콩	13,538,783	12,606,707	-6.9
스페인	12,077,799	11,790,208	-2.4
러시아	36,645,110	62,716,606	71.1
폴란드	11,354,820	16,683,142	46.9
파라과이	10,747,233	15,109,720	40.6
말레이시아	9,285,480	13,312,932	43.4
핀란드	5,436,916	10,847,550	99.5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 「중국해관통계연감」, 2009

낙시바늘의 경우, 아시아 시장 중 일본은 여전히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싱가포르와 터키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유럽 시장에서 노르웨이, 스웨덴에 대한 수출금액은 빠르게 증가하여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수출금액을 초과하였다. 동유럽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30% 증가하였고, 우크라이나는 10배나 증가하여 이미 주요 무역대상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남미 시장에서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아르헨티나는 하락세를 보였다.

2008년 중국의 어구 및 낙시도구 수출금액은 12.30억 달러에 달하였고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품목별로는 어망 3.32억 달러, 낙시대 3.82억 달러, 낙시바늘 0.85억 달러, 낙시릴 1.75억 달러, 기타어구 2.56억 달러가 수출되었다.

중국 내 주요 수출 도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둥(山東), 광둥(廣東), 저장(浙江), 랴우닝다롄(遼寧大連市) 등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산둥성(山東省)에 5개 도시, 광둥성(廣東省)에 6개 도시, 저장성(浙江省) 2개 도시, 랴우닝성(遼寧省)에 1개 도시,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1개 도시, 지린성(吉林省)에 1개 도시, 장수성(江蘇省)에 3개 도시, 푸지안성(福建省)에 1개 도시 등 총 20개 도시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수출금액상 최대 생산기지인 산둥웨이하이시(山東威海市)가 약 2억 2,000만 달러로서 주요 수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표 4-13 | 중국의 낚시도구 주요 수출 도시(2008)

단위: 달러

지 역 명	금 액
산둥웨하이시(山東威海市)	220,519,908
저장닝푸어시(浙江寧波市)	53,278,206
저장이츠시(浙江慈溪)	42,909,840
웨이하이취취첨단기술개발구(威海火炬高技開發區)	41,461,794
산둥원딩(山東文登)	28,259,670
헤이룽장하얼빈시(黑龍江哈爾濱市)	24,904,333
광둥둥관(廣東東莞)	21,247,677
광둥광저우시(廣東廣州市)	21,012,954
랴우닝다롄(遼寧大連市)	20,571,774
지린안벤주(吉林延邊州)	20,548,056
산둥칭다오시(山東青島市)	20,360,136
장수양저우시(江蘇楊州市)	18,142,540
산둥지무어(山東即墨)	17,489,383
푸지안장저우(福建漳州)	15,633,111
광둥중산시(廣東中山市)	14,062,237
광둥선전시(廣東深圳市)	13,469,575
장수쿤산시(江蘇昆山市)	13,087,045
광둥마오밍(廣東茂名)	12,627,202
장수싱화시(江蘇興化市)	12,381,081
광둥판위(廣東番禺)	12,294,742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 「중국해관통계연감」, 2009

② 수입 현황

중국의 낚시도구 수입은 수출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5년 낚시도구 수입금액은 총 2,632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는데, 낚싯대는 77만 개, 낚시릴은 57만 개, 낚싯바늘은 390톤을 수입하였다. <표 4-14>는 2011년 기준으로 낚시도구 수입국 상위 10개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 표 4-14 | 낚시도구 수입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2011. 4.	2011. 5.	2011. 6.
일본	3,313,204	3,974,630	3661,419
한국	271,978	430,220	338,475
미국	270,436	225,455	268,064
프랑스	161,999	134,469	167,706
베트남	99,705	40,305	11,182
중국홍콩	136,031	292,065	204,862
노르웨이	86,356	60,005	50,305
태국	54,660	71,939	90,234
에스토니아	35,286	-	-
대만	30,733	40,290	87,737
이탈리아	-	40,484	-
말레이시아	-	-	12,997

자료: 중국해관 통계 사이트(<http://www.chinacustomsstat.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낚시도구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대부분이고 1위인 일본의 경우 수입금액은 품목에 따라 기타 국가의 10배 또는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은 주로 일본에서 고급 낚시도구를 수입하고 중저가 낚시도구를 수출하고 있다. 홍콩에서의 수입금액을 보면 4월에는 약 13만 달러였던 것이 6월에는 2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새로운 수입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3) 중국 낚시박람회 개최 현황

중국은 낚시도구 생산 및 소비대국일 뿐만 아니라 수출대국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낚시도구의 생산량은 이미 전 세계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그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

| 표 4-15 | 중국 낚시산업 관련 박람회 개최 현황

박람회명	개최기간	개최지
중국국제낚시용품무역박람회	1991년~현재	베이징(北京)
정저우(鄭州)조구 및 낚시 관련 제품 박람회	1995년~현재	정저우(鄭州)
중국웨이하이(威海)국제어구박람회(CGC EXPO)	2008년~현재	웨이하이(威海)
동북국제어구야외용품박람회	2008년~현재	선양(沈陽)
중국닝파(寧波)국제낚시 및 야외용품 박람회	2010년~현재	닝파(寧波)
중국충칭(重慶)레저산업박람회	2010년~현재	충칭(重慶)
중국상하이(上海)낚시용품박람회	2010년~현재	상하이(上海)
중국선전(深圳)국제낚시용품박람회	2011년~현재	선전(深圳)
충칭(重慶)낚시어구박람회	2011년~현재	충칭(重慶)
중국장시(江西)어구박람회	2011년~현재	장시(江西)

자료: 바이두(百度)(<http://www.baidu.com/>)

중국 정부통계에 따르면 대규모 어구도매상이 100~200개, 중규모 도매상이 700~1,000개, 소규모 어구점은 20,000개에 달한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분포된 낚시도구 제조회사와 구매상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매년 각종 낚시도구 및 낚시관련 레저용품을 중심으로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박람회는 매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국제낚시용품무역박람회와 벽해랑팡(碧海廊坊)조구(釣具)박람회, 중국웨이하이(威海)국제어구박람회(CGC EXPO)이다.

이상과 같이 낚시 관련 박람회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10개 도시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또한 레저낚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2008년 이후부터 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도시가 7개에 달한다. 그리고 박람회 주요 개최지역은 수출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관련 제도 및 정책

(1) 낙시관리 관련 제도

현재 낙시인구가 9,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된 낙시관리제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하지만 낙시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 및 현 지방정부의 어업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에 준한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의 통일된 낙시관리제도는 부재하지만 지역마다 관리제도를 달리 실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에서 내수면이라 함은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부터 내륙지역에 속한 해역, 하천, 호수 등의 수면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화인민공화국관할 해역’이라 함은 중국법률,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혹은 기타 관련 국제법에 의한 해역을 일컫는다. 그리고 ‘어업수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 중 어류, 새우, 게, 패류의 산란장, 회유경로 등과 수생동식물의 양식장을 말한다.

중국에서 어업관리제도는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세부 사항은 분급관리 방식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관할수역어업은 행정구역에 따라 지방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부문에서 관리·감독하지만 행정구역을 넘어선 어업은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협상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하거나 그 이상급 지방정부 어업행정 부문 및 어정관리기구(漁政管理機構)에서 관리·감독한다. 그리고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대형 하천어업은 국무원 어업행정부문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표 4-16 | 낚시관리 관련 제도

법률명	규제 내용	위반 시 제재조치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	제58조 식수 수원 1급 보호구역 내에서 양식, 관광, 수영, 낚시 혹은 기타 식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금지한다.	- 식수 수원 1급 보호구역 내에서 양식 혹은 관광 및 낚시활동을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인인 경우 5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18조 레저용 낚시 및 아직 양식 혹은 관리하지 않는 간석지에서 손으로 소량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어획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리를 강화하여 어업자원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http://www.gov.cn>)

중국 ‘어업법’ 제18조에서는 레저용 낚시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다. 즉 레저용 낚시 및 양식 혹은 관리하지 않는 간석지에서 소량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어획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리를 강화하여 어업자원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낚시 관련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에 관한 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동법 제58조에서는 식수 수원 1급 보호구역 내에서 양식, 관광, 수영, 낚시 혹은 기타 식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표 4-17 | 지역별 낚시관리 관련 제도

도시명	관리제도	소관부처
구이저우(貴州)	‘낚시허가증’ 발급 도입	시(市) 어업국
충칭(重慶)	‘충칭시어업법실시방법’ 시행 - 금어기간(하천) 낚시행위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50~2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	시(市) 어업국
저장(浙江)성 치안다오호 (千島湖)	‘낚시허가증’ 발급 - 현(縣) 어업행정 부문에 허가증 신청, 신청 시 매년 800위안의 어업자원보호비 납부해야 함 - 낚시 어획량 제한 - 연중 낚시허용 구역과 계절적 허용 구역 규정	현(縣) 어업행정부문
저장(浙江)성 윤허현(雲和縣)	「윤허현낚시관리방법」 실시 - 낚시구역 제한, 현(縣) 어정감독관리 부문에 방문·신청 후 허가증 발급 - 어선 혹은 뗏목 등을 이용한 선상(호수)낚시는 현(縣) 어정관리부문 및 어항감독관리 부문에 방문하여 관련 수속 발급 필요 - 집어제 사용금지, 연어, 대두어 어획 금지	현(縣) 어업행정부문
난창시 (南昌市)	‘난창시도시하천낚시관리규정’(2005) - 도시하천은 무료낚시 실시 (낚시금지시간: 저녁 9시~익일 새벽 5시) - 1인당 낚싯대 1개 설치가능 - 규정 위반 시 금지행위에 따라 20 위안 이상 100 위안 이하 혹은 10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 과태료 부과	시 원림녹화행정관리부문 시 수(水)행정관리부문 (낚시관리행정부분으로 통칭)

주: 주요 도시의 레저어업 관리제도 중 낚시에 관한 제도만 재정리하였음

자료: 바이두(百度)(<http://www.baidu.com/>)

이상과 같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낚시행위를 직접 규제·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표 4-17>과 같이 각 지방정부에서 법에 준한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도시별, 낚시환경별로 관리제도가 상이하게 실시되고 있다.

(2) 낚시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중국에서 낚시산업은 연안지역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산업육성정책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각 지방 특히 연안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레저어업 혹은 레저낚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낚시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광둥성(廣東省)과 다롄시(大連市)의 관련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광둥성에서는 2011년 9월 2일 낚시를 포함한 레저어업 발전 및 관리 정책인 ‘광둥성 레저어업 관리방법(廣東省休閒漁業管理方法)’을 제정하였다. 관리방법 중 제5조에서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레저어업을 해당지역 현대어업 건설과 관광 발전의 계획에 편성하고 필요한 정책과 자금을 지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어업 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레저어업 선박을 건조함과 동시에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 현대 레저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랴이닝성(遼寧省) 다롄시는 10회 7차 회의(2011년)에서 해양어업경제와 도시기능 발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형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해양레저낚시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인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동 전략에 따르면 ‘十二五’⁴³⁾ 기간 동안에는 특색 있고 상당한 규모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레저낚시 시범기지 여러 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낚시와 소비자층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롄시는 ‘다롄시 레저어업 관리방법’과 ‘다롄시 해양레저낚시어업 선박관리방법’ 등 지방 법규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레저낚시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화된 산업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레저낚시어업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사회자금의 투입을 격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롄시 특성을 갖춘 유리섬

43)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번째 5년 계획’의 약칭으로 2011~2015년임.

유 강화 플라스틱 낚시어선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4. 해외사례의 시사점

미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낚시산업 통계조사, 유어자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어증 제도의 운영, 조직화된 낚시산업협회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낚시산업 통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5년마다 연방 어류야생동식물국을 중심으로 통계청과 협력하여 낚시인구, 출조횟수, 조획마릿수, 낚시 관련 지출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 및 낚시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기 자료와 관련하여 일회성 연구과제나 논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낚시산업에 관련된 필수 통계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미국에서는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유어자원 확대, 낚시객의 접근성 및 기회 제고, 미래 고객 확보 등 유어낚시산업의 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게 되고 이것이 곧 낚시도구 등의 판매 확대로 이어져 낚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상업적 어업에 밀려 유어자원의 확대나 낚시 기회의 확대, 그리고 낚시 관련 교육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어촌관광 및 수산자원 조성의 일부로서 미미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자조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낚시 관련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어증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유어자원 회복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낚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지만, 지방정부는 낚시객에게 발부되는 유어증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유어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업계 및 낚시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재는 논의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또한 유어증 도입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시행 초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심지어 총기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하지만 오랜 대화와 타협 끝에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유어증 제도의 시행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에는 제도 도입이 어렵더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홍보, 교육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는 상호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낚시를 단순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즉 낚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다음 이러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낚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공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의 낚시산업협회는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업계의 이해 대변,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보존 및 교육, 업계 자료 보고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낚시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2개의 조직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또한 동 협회들의 활동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한 회원의 요구사항을 결집시켜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하다. 특히 보존 및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협회의 조직력은 리더십과 협회 내부의 협력에 달려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낚시산업 관련 협회가 결성·운영된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건전한 리더십과 회원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낚시 진흥에 대한 민간의 활동과 자율적인 규제, 낚시 인스트럭터제도, 친환경 낚시도구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 등이다.

첫째, 일본의 낚시 관련 제도는 주로 유어와 어업의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낚시전문관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민간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모금과 기부 등을 통해 낚시의 보급과 매너 홍보, 자원 조성 및 환경보호 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낚시문화의 조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둘째, 낚시인스트럭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전문가들이 교육과 지도를 담당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일본낚시진흥회와 일본낚시용품공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낚시도구에 대한 개발과 인증이다. 이 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향후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자발적인 개발과 보급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낚시산업은 자발적인 진흥과 보급, 가족문화로서의 낚

시보급, 친환경적인 낚시의 개발 등 국내 낚시산업이 벤치마킹할 만한 점이 많다. 하지만 주로 민간단체의 기금 조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아 사업적인 발전에서는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중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해양레저 낚시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낚시도구 제조업의 육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다롄시 정부는 “도시형 해양경제 발전”의 전략에서 해양레저 낚시산업 발전을 중점업무로 지정하여 낚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레저낚시 시범기지’를 여러 곳에 건설하여 다양한 소비자층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낚시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낚시공원 건설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남성만을 위한 곳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점적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어구생산 선두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기술교육 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낚시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낚시도구 제조업체 또한 이러한 지원에 대해 요청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낚시산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내용

1) 조사설계

본 장에서는 낚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낚시산업 관련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낚시산업의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 있는 일반인(국민)과 더불어 공급자 입장에 있는 낚시 관련 사업체와 같이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일반인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낚시’라는 레저의 특성상 현재의 주 수요층과 미래의 잠재 수요층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은 낚시 경험이 없거나, 앞으로도 낚시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 시 유의한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방식은 직접 면접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선의 대안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조사문항 및 전문적인 용어 등에 대해 응답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낚시 관련 사업체 조사는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등과 같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외에 낚시어선업 사업체 조사도 고려하였으나, 사업체 목록(list)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간·예산의 제약, 어업인들에 대한 전화 및 팩스 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단 확보는 첫째, 낚시용품 제조업은 (사)한국낚시산업협회의 회원사, 둘째, 낚시용품 도·소매업은 인터넷 및 전국 전화번호명부 조사, 셋째, 낚시터 운영업은 (사)한국낚시업중앙회의 회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70개 사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표 5-1 | 낚시산업 관련 설문조사 설계

구 분	일반인 조사	낚시 관련 사업체 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조사시기	2011년 10월 11~25일	2011년 10월 11~25일
표본 수	500명	170개소
표본추출방법	연령별·지역별·직업별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유의 표본추출 (Purposive Sampling)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4.38\%$ point	-
조사대행 기관	(주)유니온리서치	

2) 조사내용

일반인 및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2> 참조). 첫째, 일반 현황으로서 일반인 조사에서는 연령, 결혼 여부, 직업, 소득, 학력 등을 설문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에서는 낚시업 종사경력,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을 설문하였다.

둘째, 일반인 조사에 국한하여 낚시 관련 활동사항을 설문하였다. 세부

문항으로는 낚시에 대한 호감도, 낚시 경험 및 향후 낚시 의향, 출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함하였다.

셋째, 일반인 및 사업체 조사 공통적으로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및 기여도 평가, 낚시 규제에 대한 인식, 낚시산업의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표 5-2 |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주요 조사내용
일반 현황	일반인 조사	·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지역,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최종학력
	사업체 조사	· 업체소재지, 업체유형, 낚시업 종사경력, 종업원 수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낚시산업 규모 추정 관련)
낚시 관련 활동사항 (일반인 조사만 해당)		· 낚시에 대한 호감도 · 낚시 경험 및 향후 낚시의향 · 낚시 경력, 출조횟수 및 출조지역(바다, 민물 등) · 동반자 수, 출조일정, 낚시방법, 지출비용 · 낚시 정보를 얻는 곳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 (일반인 조사 및 사업체 조사 공통)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기여도 평가 · 낚시규제에 대한 인식 · 낚시산업의 문제점(산업발전 측면, 낚시서비스 측면, 낚시저변 확대의 측면 등) ·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낚시도구산업 발전 정책, 낚시 규제 완화, 낚시편의시설 및 관광 연계, 우수 낚시터 인증제, 낚시인 인증제, 낚시단체연합회 설치, 낚시인의 비용분담 방법 등)

2.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

1) 일반인 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500명이며, 이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낚시경험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394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전체의 26.2%로 가장 많으나 30대에서 60대 이상에 걸쳐 전 연령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경기도, 일반 지방도시 모두 지역별 할당에 의해 25.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전체의 44.8%로 가장 많으며, 학생, 전문직 및 자영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0~399만 원 사이 구간이 전체 응답자의 40.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가구도 17.8%로 집계되었다.

2) 사업체 조사

사업체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총 170개소로 이 가운데 낚시용품 제조업이 18개소, 낚시용품 도·소매업이 96개소, 낚시터 운영업이 56개소이다. 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데, 경기, 충청, 강원 등 상대적으로 내수면이 많은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산업 종사경력의 평균은 약 16년으로 집계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5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영주를 포함 2인 이하 사업체가 약 46.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규모를 집계한 결과, 낚시용품 제조업이 약 19억 4천만 원, 낚시용품 도·소매업이 약 3억 9천만 원, 낚시터 운영업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 표 5-3 | 소비자 조사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낚시경험	있다	394	78.8
	없다	106	21.2
성별	남성	500	100.0
연령	20세 미만	131	26.2
	30대	105	21.0
	40대	107	21.4
	50대	85	17.0
	60대 이상	72	14.4
결혼 여부	기혼	325	65.0
	미혼	175	35.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25	25.0
	6대 광역시	125	25.0
	경기도	125	25.0
	일반 지방도시(시·군)	125	25.0
직업	회사원	224	44.8
	공무원	15	3.0
	전문직	74	14.8
	무직	24	4.8
	학생	83	16.6
	자영업	74	14.8
	기타	6	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3	14.6
	200~299만 원	101	20.2
	300~399만 원	99	19.8
	400~499만 원	86	17.2
	500~599만 원	52	10.4
	600~699만 원	30	6.0
	700~799만 원	15	3.0
	800만 원 이상	44	8.8
합 계		500	100.0

| 표 5-4 | 사업체 조사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비율
업체 소재지	서울	18	10.6
	부산·울산	23	13.5
	대구·경상	8	4.7
	인천	12	7.1
	대전·충청	32	18.8
	광주·전라	6	3.5
	경기	46	27.1
	강원	25	14.7
업체유형	낚시용품 제조업	18	10.6
	낚시용품 도·소매업	96	56.5
	낚시터 운영업	56	32.9
종사경력	10년 이하	71	41.8
	10~20년	56	32.9
	20~30년	32	18.8
	30년 이상	11	6.5
종업원 수	1명	39	22.9
	2명	40	23.5
	3~5명	60	35.3
	6~10명	18	10.6
	11명 이상	13	7.6
최근 3년 평균 매출규모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193,565만 원 38,629만 원 15,460만 원	-
합 계		170	100.0

3. 조사결과

낚시산업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는 일반인 및 사업체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표 5-2>의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낚시 관련 활동사항에 대한 문항은 일반인만 해당되며,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은 2개 그룹 모두 동일하게 설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는 낚시 관련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과 그룹별 비교를 위해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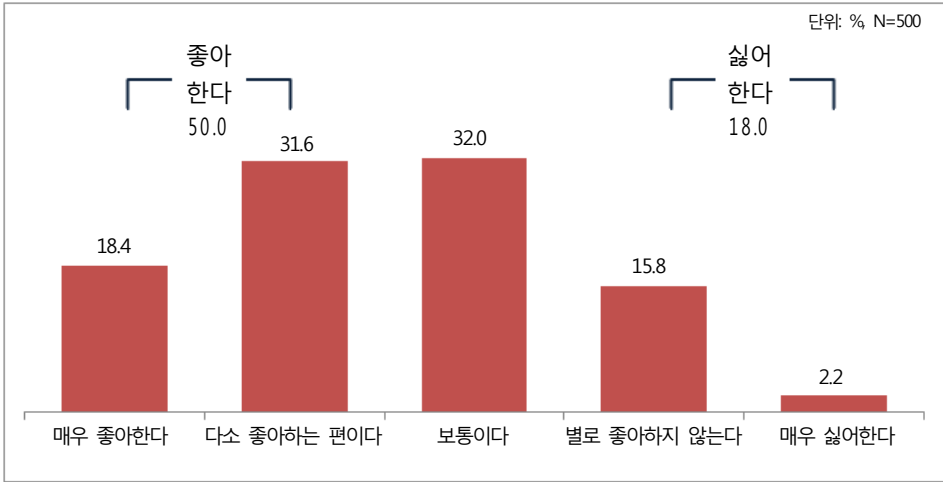
1) 낚시 관련 활동사항

<부록>에 제시된 설문조사표와 같이 낚시 관련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 문항은 총 10여 개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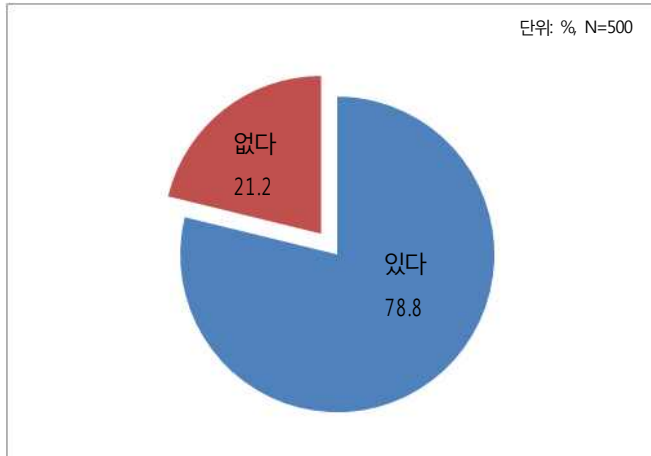
첫 번째, 평소 낚시라는 레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좋아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 ‘보통이다’ 32.0%, ‘싫어한다’ 18.0%로 나타나 좋아한다는 응답이 싫어한다는 응답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두 번째, 지금까지 바다나 강, 호수 등에서 낚시를 실제로 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있다’는 응답이 394명으로 전체의 78.8%, ‘없다’는 응답은 106명(21.2%)으로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 번째,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실내낚시터 등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적어도 1회 이상 낚시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반드시 할 것이다’가 27.8%, ‘아마 할 것 같다’가 35.0%로 긍정적 답변이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다. 반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 및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6.2%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낚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낚시 자체에 관심(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8.1%, ‘관심은 있으나 낚시하는 방법을 모름’ 21.0% 등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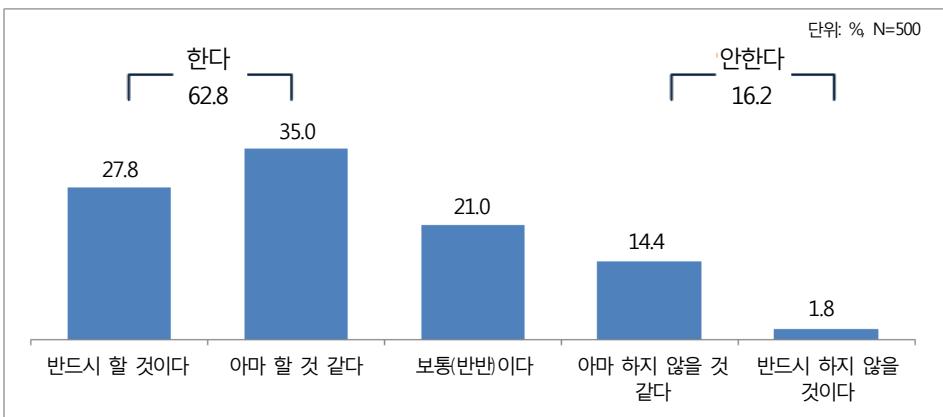
| 그림 5-1 | 낚시에 대한 호감도



| 그림 5-2 | 낚시 경험 유무

네 번째, 낚시가 ‘꾼’들의 전유물이고,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결과, ‘가족과 같이 즐길 낚시터가 없고, 시설도 미비해서’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가면 번거로워 혼자 다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1.4%를 차지

하였다. 즉, 낚시가 가족 레저가 되기에는 낚시터의 시설적 측면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5-3 | 향후 낚시 의향

| 표 5-5 |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구 분	비 중
낚시를 배우기 어렵고,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6.2
낚시도구 구입과 출조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9.0
가족과 같이 즐길 낚시터가 없고, 시설도 미비해서	33.6
낚시는 여자와 아이들이 즐기기에는 위험해서	8.6
낚시에 살아있는 미끼 사용 등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8.0
낚시에 가족들과 가면 번거로워 혼자 다니기 때문에	21.4
기타 사유	3.2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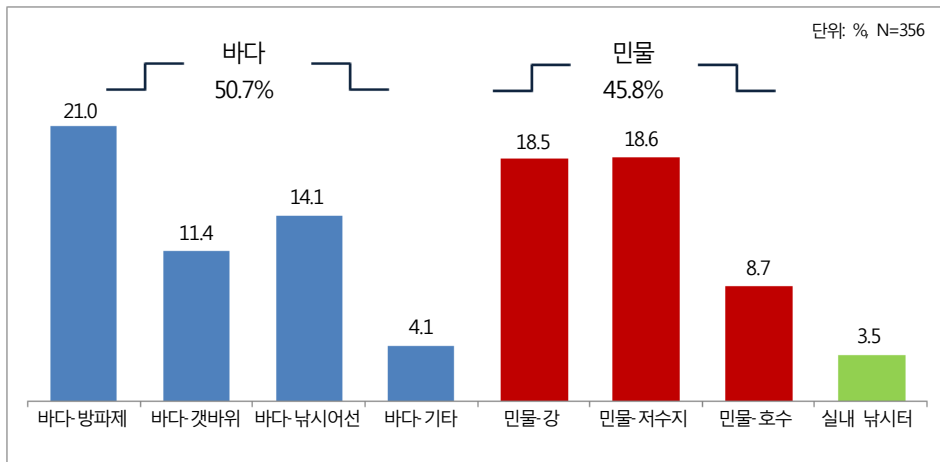
다섯 번째, 낚시경력과 연간 출조횟수를 조사한 결과, 낚시경력은 ‘1년 이내’가 24.2%, ‘1~3년’ 16.6%로 3년 이하의 초보 경력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22.2%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평균 출조횟수는 7.92회로 집계되었다.

| 표 5-6 | 낚시경력

구 분	1년 이내	1~3년	3~5년	5~10 년	10~15 년	15~20 년	20년 이상	합 계
응답수	86	59	67	65	28	18	33	356
비 중	24.2	16.6	18.8	18.3	7.9	5.1	9.3	100.0

주: 조사표본 500명 가운데 낚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94명이었다. 이 가운데 향후 낚시 의향이 없는 38명을 제외한 3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 주로 낚시를 즐기는 곳을 조사한 결과, 방파제, 갯바위, 낚시어선 등 바다낚시 출조 비중이 전체의 50.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강, 저수지, 호수 등 민물낚시 출조비중이 45.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실내 낚시터를 주로 방문하는 응답자는 3.5% 정도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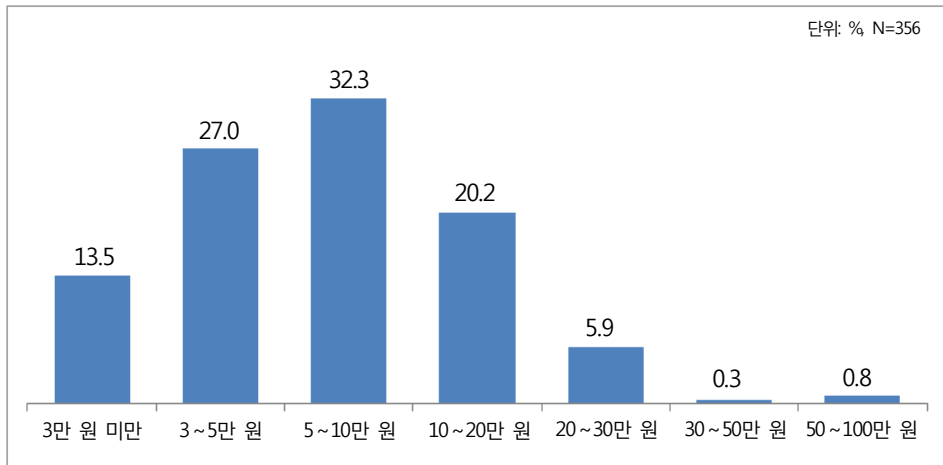


| 그림 5-4 | 낚시를 주로 즐기는 곳

일곱 번째, 출조 시 주로 누구와 동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동반’이 전체 응답의 56.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동반’ 14.6%, ‘직장동료 동반’ 12.6%, ‘혼자(본인 1명)’ 10.4%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회 출조

시 귀가 때까지의 일정은 ‘당일’이 54.2%, ‘1박 2일’ 43.0%, ‘2박 3일’ 2.5%로 1박 2일 이하의 단기 출조가 전체의 97.2%를 차지하였다. 한편, 주로 즐기는 낚시방법을 조사한 결과, ‘릴 낚시’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장대 낚시’ 19.9%, ‘루어 낚시’ 11.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덟 번째, 1회 출조 시 교통비, 유류비, 식비, 낚시용품 구입비 등 모두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5~10만원’이 전체의 32.3%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27.0%, ‘10~20만원’ 20.2%, ‘3만원 미만’ 13.5% 등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낚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이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32.9%, ‘동호회나 카페’ 9.8%, ‘낚시용품점’ 7.9% 등으로 집계되었다.



| 그림 5-5 | 1회 출조 시 평균 지출비용

2) 낚시산업에 대한 인식

일반인 및 낚시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식 조사는 크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관련된 내용, 낚시 관련 규제, 낚시산업의 문제점,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및 기여도 평가

정부가 2011년 3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공포(2012년 9월 10일 시행) 하였는데, 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일반인 조사에서는 14.6%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었으며, 55.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45.9%가 알고 있으며, 37.1%는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낚시 관련 사업체의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7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및 기여도 평가

단위: %

구 분	항 목	일반인 조사	사업체 조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지도	매우 잘 안다	0.8	11.8
	어느 정도 안다	13.8	34.1
	보통이다	29.8	17.1
	잘 모른다	44.1	25.9
	전혀 모른다	11.5	11.2
	합 계	100.0	100.0
동법의 낚시산업에 대한 기여도	매우 그렇다	2.8	15.9
	그렇다	31.2	30.6
	보통이다	54.5	20.6
	그렇지 않다	9.8	27.1
	전혀 그렇지 않다	1.7	5.9
	합 계	100.0	100.0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34.0%, 부정적인 답변이 11.5%였다. 반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46.5%로 많았으나 부정적인 답변도 32.9%로 나타나 동법의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낚시 관련 규제 수준 평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육성을 위해 낚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규제 항목별로 현재 대비 향후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규제 항목은 어종·마릿수·체장·체중 제한, 낚시방법·도구·시기 제한, 낚시통제구역, 낚시인 안전관리, 낚시터업 허가, 낚시어선, 낚시미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인 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특히 낚시인 안전관리나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낚시미끼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면 모든 규제 항목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규제 항목별로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어종·마릿수·체장·체중에 대한 제한이나 낚시인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낚시방법·도구·시기 제한, 낚시통제구역, 낚시터업 허가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중이 더 높았다.

표 5-8 | 낚시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

구 분	일반인 조사(합계 100%)			사업체 조사(합계 100%)		
	강화	적당	완화	강화	적당	완화
어종·마릿수·체장·체중 제한	50.8	41.9	7.3	43.5	38.8	17.6
낚시방법·도구·시기 등 제한	52.8	35.7	11.5	18.2	50.6	31.2
낚시통제구역	53.7	28.7	17.7	21.8	24.1	54.1
낚시인 안전관리	68.8	25.8	5.3	64.1	29.4	6.5
낚시터업 허가	62.9	30.3	6.7	20.6	32.4	47.1
낚시어선	53.4	37.9	8.7	39.3	41.1	19.6
낚시미끼	39.9	49.4	10.7	16.6	63.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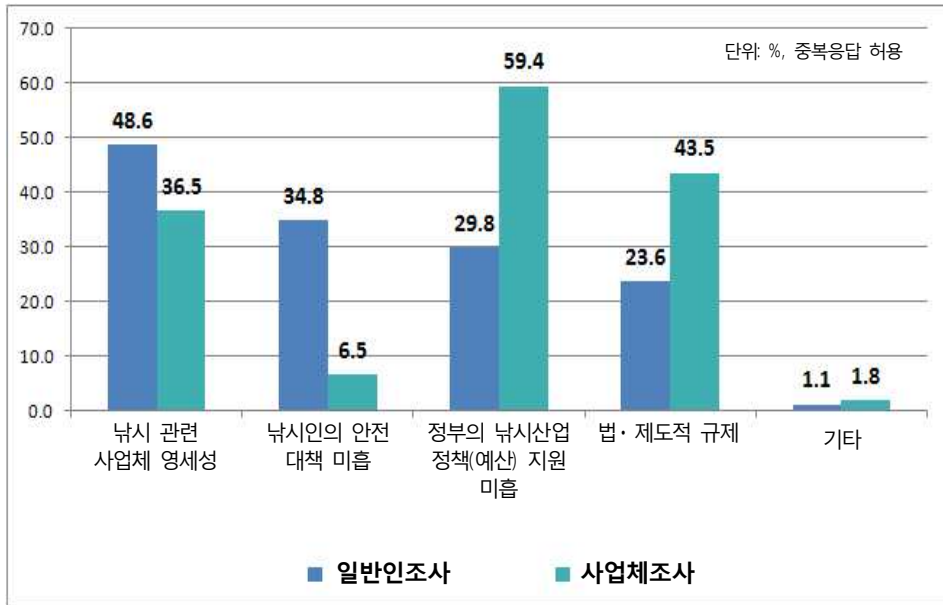
3) 낚시산업의 문제점과 정책 우선순위

현재 낚시산업이 처한 문제점을 산업 발전의 측면, 낚시 서비스의 측면, 낚시 저변 확대의 제약요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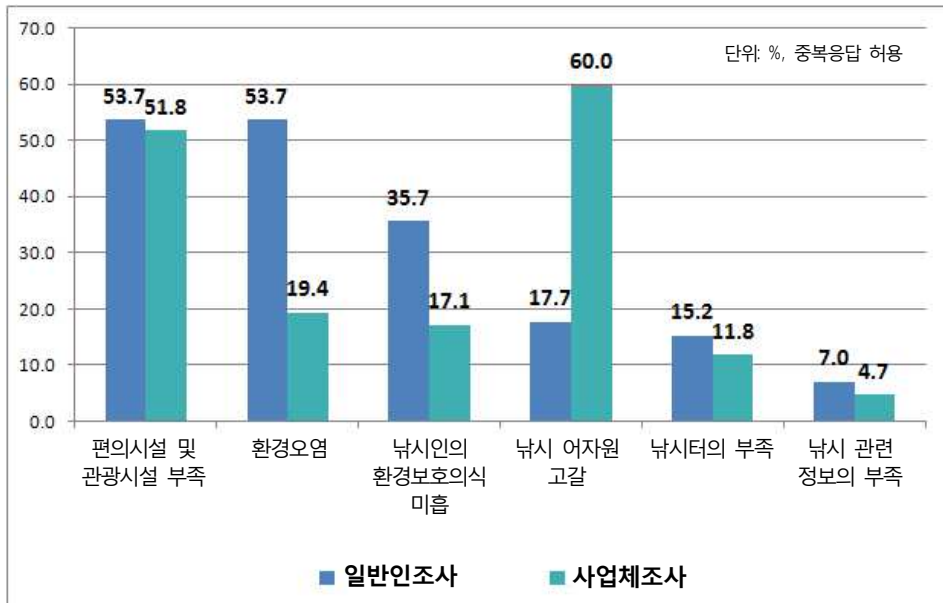
먼저 낚시산업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낚시 관련 사업체의 영세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사업체의 경우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예산) 지원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체들은 ‘법·제도적 규제’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낚시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낚시터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숙박시설 등) 및 주변 관광시설 부족’, ‘수질 악화 및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을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사업체의 경우 ‘낚시 어자원 고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부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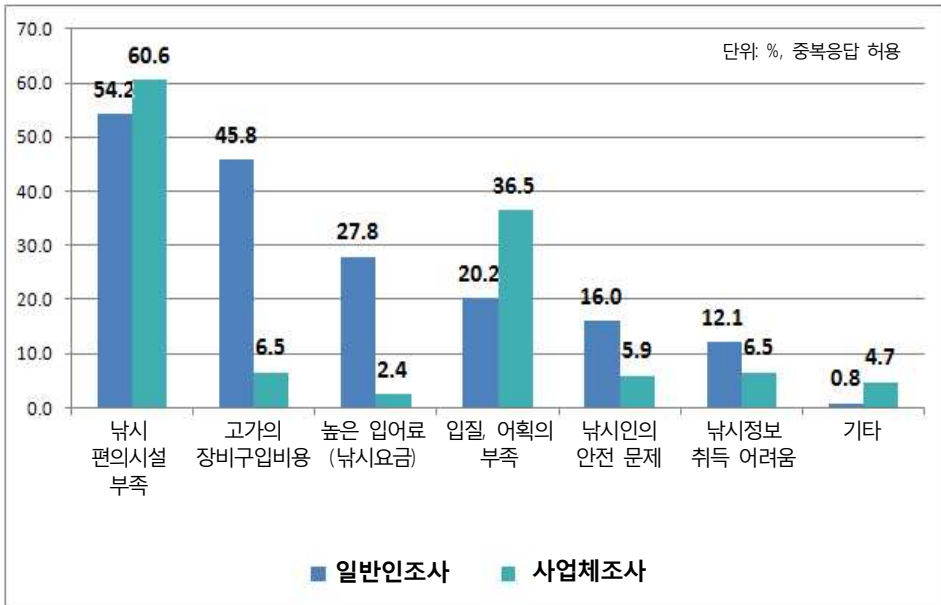
셋째, 낚시 저변 확대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낚시 편의시설 부족, 고가의 장비 구입비용, 높은 입어료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업체들도 낚시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입질, 어획의 부족도 주요 문제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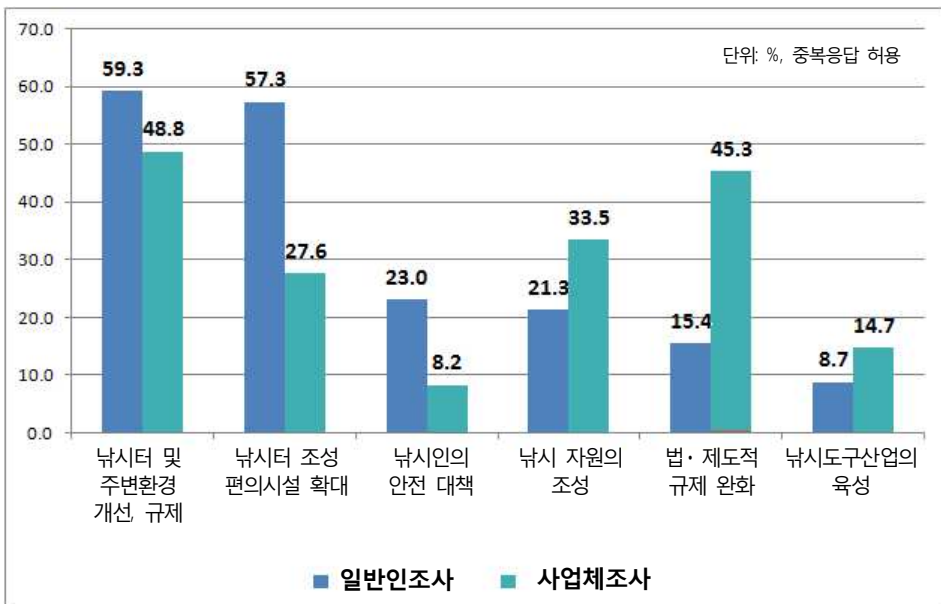
| 그림 5-6 | 낚시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



| 그림 5-7 | 낚시 서비스의 문제점



| 그림 5-8 | 낚시 저변 확대의 장애요인



| 그림 5-9 |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

한편,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떤 부문에 정책(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은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낚시터 조성 및 관광·편의시설 확대’, 사업체는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법·제도적 규제 완화(시설허가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향후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문하였다. 첫째, 낚시도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과 사업체 모두 ‘낚시도구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R&D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반인은 ‘브랜드화 등 마케팅 지원’, 사업체는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출 지원’으로 응답하였다.

표 5-9 | 낚시도구산업의 발전정책

단위: %(중복응답 허용)

구 분	일반인 조사	사업체 조사
국제 낚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지원	22.8	35.3
낚시도구 개발·품질 향상을 위한 R&D 지원	52.0	48.2
내수 및 수출을 위한 브랜드화 등 마케팅 지원	43.5	27.1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등 거래활성화 지원	8.1	9.4
대규모 상설전시판매장의 도입	30.1	5.3
기 타	0.9	7.1

둘째,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낚시터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설치 조건 완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표 5-10 | 낚시 규제 완화 정책

단위: %(중복응답 허용)

구 분	일반인 조사	사업체 조사
낚시통제구역의 제한조건 강화	34.0	23.5
낚시터 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35.1	38.2
낚시터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설치조건 완화	63.2	58.2
낚시미끼 및 도구기준의 완화	12.4	9.4
기 타	2.5	2.4

셋째, 낚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과 사업체 모두 ‘낚시터의 화장실, 식당, 관리사 등 편의시설 설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도별로 차별화된 낚시터(전문가형, 가족형, 연인형, 단체형 등)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많았다.

| 표 5-11 | 낚시 서비스 향상 정책

단위: %(중복응답 허용)

구 분	일반인 조사	사업체 조사
낚시터의 화장실 및 식당, 관리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55.1	62.4
낚시터의 관광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40.2	15.9
낚시터와 연계한 관광리조트 설치	30.1	15.9
용도별로 차별화된 낚시터 조성 (전문가형, 가족형, 연인형, 단체형 등)	44.9	27.6
낚시터와 마리나, 캠핑장 등 복합형 낚시공원 조성	23.9	24.1
기 타	-	0.6

다음으로 ‘우수 낚시터 인증제’⁴⁴⁾의 실시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73.0%, 사업체의 7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비율은 일반인이 4.5%, 사업체가 10.6%로 사업체가 더 높으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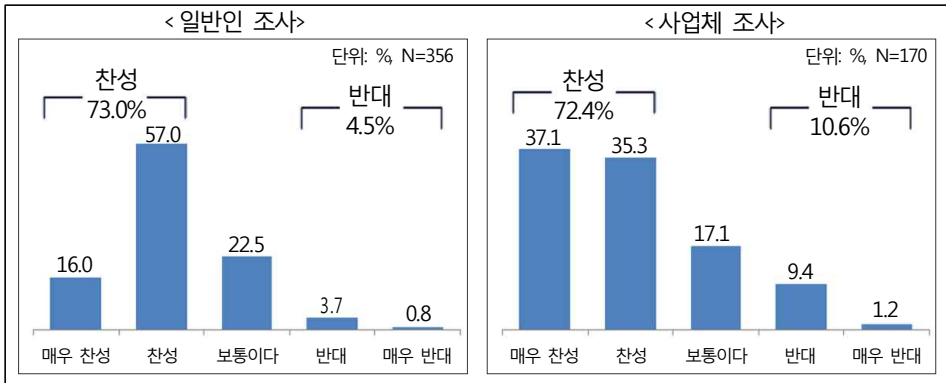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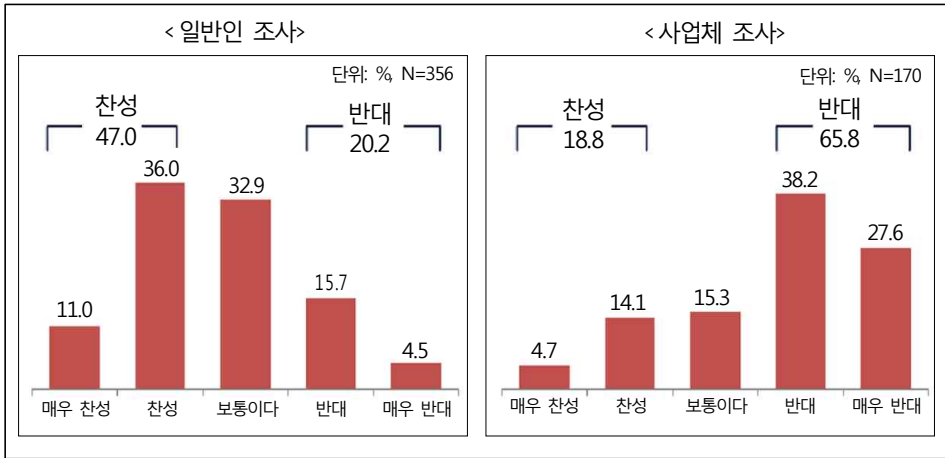


그림 5-10 | 우수 낚시터 인증제 실시에 대한 의견

‘낚시인 인증제’⁴⁵⁾의 실시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사업체의 조사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경우 찬성이 47.0%, 반대가 20.2%로 찬성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사업체의 경우 찬성이 18.8%, 반대가 65.8%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체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낚시 관련 업·단체들을 대상으로 ‘낚시인 인증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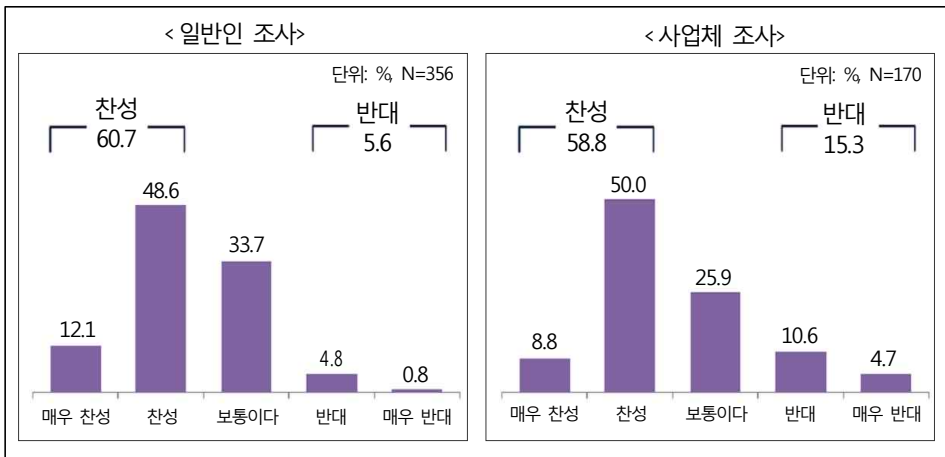
44) 설문조사에 제시된 설명: 우수 낚시터 인증제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에 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45) 설문조사에 제시된 설명: 낚시인 인증제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낚시인에게 태권도 ‘단종’처럼 인증을 하는 것으로, 초·중급, 고급, 명인 등의 인증으로 낚시 교육과 낚시인 자부심 고취가 목적임. 고급 이상 자격자는 낚시교육자격증을 부여하여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명예감시인 역할도 부여할 수 있음.



| 그림 5-11 | 낚시인 인증제 실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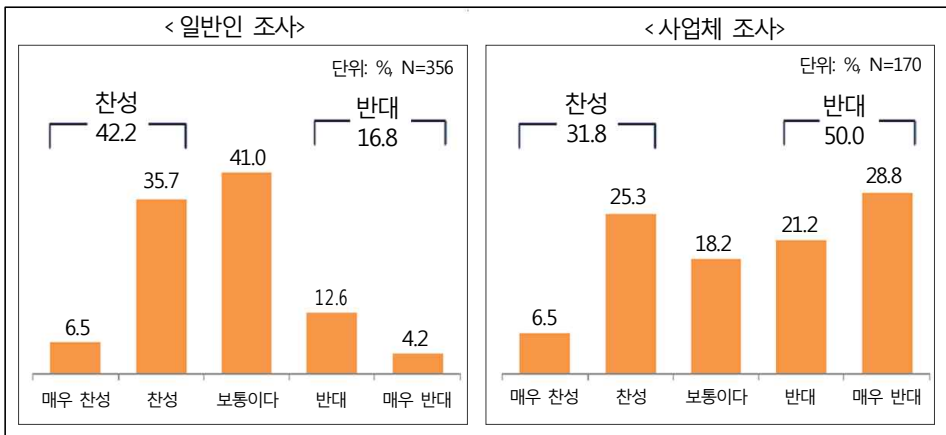
‘낚시 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⁴⁶⁾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0.7%, 사업체의 58.8%가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 그림 5-12 | 다목적 낚시 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한 의견

46) 설문조사에 제시된 설명: 낚시교육·문화관이란 낚시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낚시인 인증을 하는 곳임. 낚시상설 전시관은 낚시박물관, 낚시도구상설전시판매관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임

‘낚시단체연합회⁴⁷⁾’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42.2%가 찬성하고, 반대는 16.8%로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사업체 조사에서는 찬성이 31.8%, 반대가 50.0%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낚시단체연합회의 설치에 사업체들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해 정부 및 업계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림 5-13 | 낚시단체연합회 설치에 대한 의견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조사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업계) 어장의 낚시터 조성 지원’, ‘어촌 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47) 설문조사에 제시된 설명: 낚시 교육과 낚시터·낚시인 인증을 담당하며, 낚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대응 창구로서, 기존의 난립한 단체 등을 연계하여 낚시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임.

| 표 5-12 |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단위: %(중복응답 허용)

구 분	일반인 조사	사업체 조사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32.9	35.9
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업계) 어장의 낚시터 조성 지원	43.5	37.6
어촌 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	55.9	31.2
무인도를 활용한 어촌 낚시리조트의 도입	30.1	11.2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14.3	8.8
기 타	0.6	4.7

낚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립, 낚시 관련 통계 및 DB 구축에 대해 사업체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표 5-13 | 낚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의견

구 분	일반인 조사(합계 100%)			사업체 조사(합계 100%)		
	긍정적	보통	부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인터넷 포털 등에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전자상거래 촉진	66.3	31.7	2.0	35.3	35.9	28.8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립	72.3	27.2	1.4	78.2	17.1	4.7
낚시 관련 통계 및 DB 구축	63.4	33.1	3.4	74.7	18.2	7.1

낚시터의 환경 개선 및 자원 조성,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인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

수하는 목적세를 부과하여 낚시자원 조성 및 환경 개선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용 부담의 방법으로 낚시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낚시발전기금은 낚시도구, 미끼의 구매요금,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환경분담금은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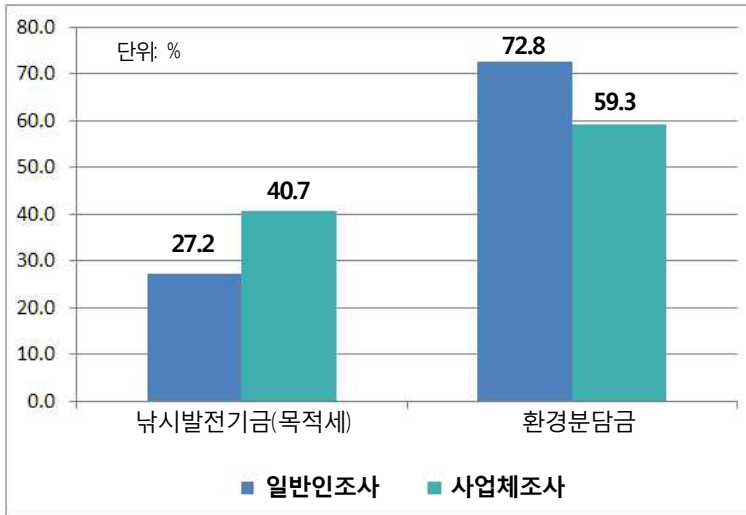
이러한 비용 부담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요자 입장에 있는 일반인들은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 있는 사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사업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낚시인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낚시수요 감소와 관련 사업체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표 5-14 |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비용 부담방법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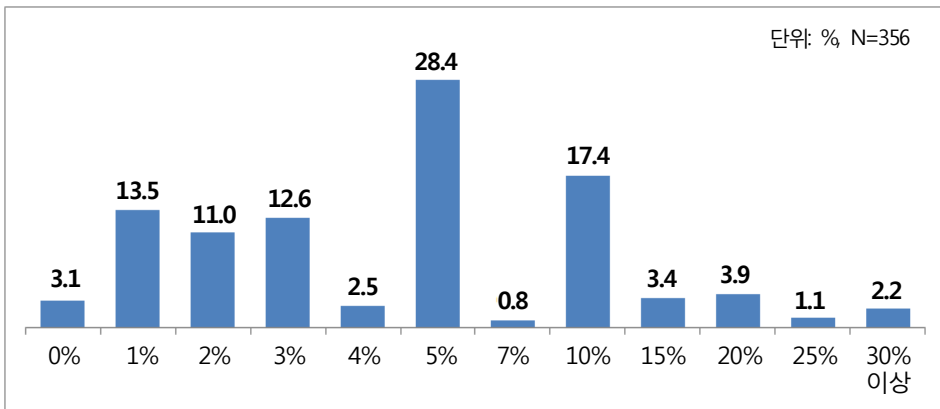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조사(합계 100%)			사업체 조사(합계 100%)		
	긍정적	보통	부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낚시발전기금(목적세)	38.5	37.4	24.2	17.6	14.7	67.6
환경분담금	54.5	35.7	9.9	23.5	16.5	60.0

비용 부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목적세 성격의 낚시발전기금 보다는 환경분담금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낚시에 드는 비용(요금) 대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5%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 지불할 의향이 없다(0%)는 의견을 제외한 1~5% 수준이 전체의 68.0%를 차지하였다. 10%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8.0%를 차지하였다.



| 그림 5-14 | 비용 분담에 대한 선호도



| 그림 5-16 | 낚시비용(요금) 대비 비용분담금 지불 의향(소비자 조사)

4. 시사점

지금까지의 낚시산업 관련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의 낚시에 대한 호감도, 낚시 경험, 낚시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낚시산업은 잠재 수요층이 많은 성장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 레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둘째, 낚시가 소위 ‘꾼’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레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족, 연인 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낚시터의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재미있고 다양한 낚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다.

셋째, 일반인 조사결과, 낚시 관련 정보를 주로 ‘인터넷’이나 ‘동호회 및 카페’ 등에서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 정보기술의 대중화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향후 낚시산업도 이러한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을 도입,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낚시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 조사결과, 일반인과 낚시 관련 사업체의 인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낚시’라는 행위에 있어서의 수요자 입장에 있는 일반인들은 낚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용품 및 서비스 등 공급자 입장에 있는 사업체들은 매출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반인들이 자연 및 어자원 보호, 환경오염 등을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고 있지만, 사업체들은 낚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규제도 수용하지 못하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낚시산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과 사업체 모두 ‘낚시터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숙박시설) 및 주변 관광시설의 부족’, ‘환경오염’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관광·편의시설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향후 낚시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최우선순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인의 경우 우수 낚시터 인증제 및 낚시인 인증제 도입, 낚시 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 설치, 낚시단체연합회 설치, 낚시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사업체의 경우 낚시인 인증제 도입, 낚시단체연합회의 설치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소속 단체의 위축을 우려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낚시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더불어 향후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낚시터의 환경 개선 및 자원 조성,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인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목적세 성격의 낚시발전기금보다는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방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낙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1. 부가가치 창출방안의 목표

낙시산업은 관련 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은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인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이 장기적 미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낙시산업 부가가치 창출방안은 앞서 살펴보았던 낙시산업의 현황, 경제적 효과 및 국제 경쟁력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표 6-1> 참조).

표 6-1 낙시산업 관련 문제점·시사점과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또는 시사점	개선방안(제6장 제2절 목차)
제2장	· 낙시산업 육성정책 미흡 · 낙시도구업 경쟁력 제고 정책 지원 미흡	5-1. 환경친화적 낙시도구 개발·인증제 도입 5-2. 낙시용품 제조업 수출 지원 정책 도입 5-3. 공동브랜드 개발과 도구 표준화사업 추진
	· 안전·쾌적한 낙시공간 마련 소홀 · 가족형 등 낙시공원 없음 · 화장실·휴게실 부족 · 천편일률적 낙시터	3-1. 차별화된 낙시공간의 조성 3-2. 낙시터 시설·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 3-3. 다목적 낙시휴양리조트의 조성 4-3. 어촌 명품 낙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 수면, 자원 이용 갈등 · 수면 및 수산자원 선점 경쟁으로 갈등과 마찰 발생 · 어구훼손 등 갈등 발생	4-1. 자율관리어업 연계 낙시자원 조성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4-2. 어촌소득 증대형 낙시터 확대 4-3. 어촌 명품 낙시터 100선 도입
	· 법·제도 및 관리조직 미비 · 낙시터 관리 미흡 및 무허가 낙시터 난립 · 사행성 도박 사회 문제화 · 투자 기피, 시설물기준 미흡	1-1.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의 정비 1-2.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1-4. 낙시 육성 및 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 규제 행정 중심적 정책	1-2.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교육·홍보 프로그램 부족	2-1.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 표 6-1 | 낚시산업 관련 문제점 · 시사점과 개선방안(계속)

구 분	문제점 또는 시사점	개선방안
제3장	생산 견인 산업 타 산업 유발효과 매우 큼 세계 시장 경쟁력 매우 취약 타 경쟁국 차별화전략 필요 주요 수입국 시장조사 시급	5-1.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 인증제 도입 5-2. 낚시용품 제조업 수출지원 정책 도입 5-3. 공동브랜드 개발과 도구 표준화사업 추진 5-4. 주요 수입국 시장조사
제4장	낚시산업 통계조사 실시	1-3.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유어자원 회복프로그램	1-6.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유어증 제도의 운영	
	조직화된 낚시산업협회	1-5. 민간 주도 통합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민간의 자율적 낚시 보급 · 홍보, 자원 조성 · 환경 보호	
	낚시인스트럭터 제도	2-1.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친환경낚시도구 개발 · 인증	5-1.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 인증제 도입
	레저낚시산업 발전전략 수립	1-2.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제5장	낚시도구 제조업의 육성	5. 수출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
	낚시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1-2.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낚시터 시설개선 낚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3.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 2-1. 민간 차원의 낚시 레벨 인증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인터넷 모바일기술 활용 필요	2-5. 낚시산업 포털 설치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관광 · 편의시설 확충 시급	3.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
	정책의 사업체 홍보 · 교육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2-1.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홍보 프로그램 도입 1-5. 민간 주도 통합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국민들은 낚시발전기금보다 환경부담금 방식을 선호	1-6. 낚시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은 낚시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선진 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글로벌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낚시산업의 수출산업화는 국제적인 낚시레저인구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낚시도구산업의 수출 진흥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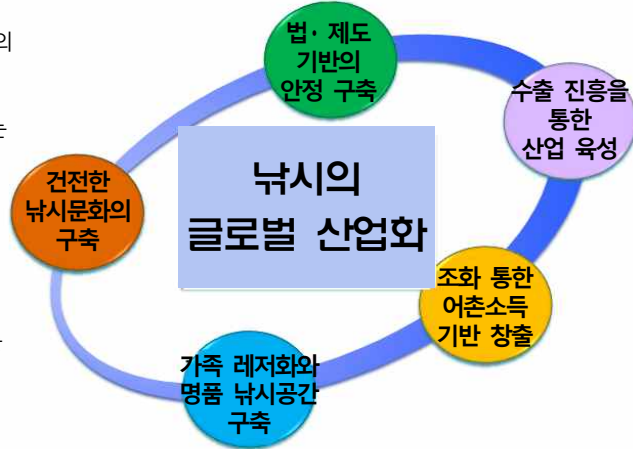
함으로써 국부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도구의 경우 저가 상품은 중국산, 고가상품은 일본산의 점유율이 높고, 한국산은 중가 상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산업의 표적시장으로 중고가 낚시도구 시장을 국내 브랜드의 고급화를 통해 고급시장으로 확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낚시도구 시장에서 고급품인 일본과 미국의 낚시도구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선진 국민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낚시산업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진 낚시에 대한 인식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꾼’들만의 레저로 인식함으로써 가족 레저 측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는 낚시가 쉽게 익히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낚시장소의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단위의 접근이 어렵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낚시 동호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관리나 환경관리 등의 문제도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낚시산업의 레저 기반은 아주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하는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은 대외적으로는 수출산업화, 대내적으로는 낚시 레저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국부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낚시산업으로의 도약을 ‘글로벌 산업화’라는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더욱이 국내 낚시레저에 대한 수요는 현재 우리 국민들만으로 한정되지만, 새로운 글로벌 산업화에서는 세계인들이 국내의 낚시명소에 찾아올 수 있는 글로벌 관광산업화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낚시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선진 국민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글로벌 산업으로의 육성

- ① 낚시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의
안정적 구축
- ② 자원과 환경, 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 ③ 낚시의 가족 레저화와
쾌적하고 즐거운 명품
낚시공간 구축
- ④ 수산업과 낚시 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 ⑤ 낚시도구산업의 수출 진흥을



| 그림 6-1 |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의 목표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첫째, 낚시산업에 대한 안정적 법·제도 기반의 구축, 둘째, 자원과 환경, 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셋째, 낚시의 가족 레저화와 쾌적하고 즐거운 명품 낚시 공간의 구축, 넷째, 수산업과 낚시 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다섯째, 낚시도구산업의 수출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목표에 따른 세부 방안을 살펴보았다.

2. 목표별 부가가치 창출방안

1)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 기반 구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낚시산업의 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하위 법령과 법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낚시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통계나 관련 정책자료, 조직 또한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 그림 6-2 |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이를 위해 첫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둘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셋째,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넷째, 낚시 전담부서의 설치, 다섯째, 민간 주도의 통합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여섯째, 낚시 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과 같이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2010년에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1년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입법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그 자체와 하위 법령의 제정에서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의 낚시 관리 내용 중 낚시 제한기준과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낚시 제한기준은 법 제5조에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는 법 제8조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다.

하지만 낚시 제한기준의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 법령 등에서 이미 체장 제한 등이 제시되어 있고, 낚시인들의 경우는 제한 체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거나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민물낚시 어종의 체장 제한과 조획량 부분이다. 바다나 민물 낚시 어종의 체장 제한은 일정부분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획량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확한 언급이 없고,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조획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낚시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적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낚시터 등의 육상 부분에 대한 관리권 제한이다. 법 제3조의 법의 적용범위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수면이다. 대부분의 낚시행위는 수면에서 이루어지지만, 낚시터의 경우는 화장실과 관리사 등의 필요한 부대시설이 육상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육상 부분에 위치해 있

는 낚시 관련 시설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는 조문으로 볼 때,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낚시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상시설에 대한 법의 적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낚시어선업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법 제2조의 정의에서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이다. 어선법의 어선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낚시어선은 처음에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선과 낚시선을 병행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그렇지만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 등의 장착과 개조를 하면서 이미 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많다. 또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생겼으므로 ‘어선’의 원칙적 개념과는 달라졌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어제, 낚추 등의 문제이다. 집어제의 경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집어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완전 규제는 아니다. 또한 낚추의 경우도 국제적으로는 규제가 구체적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 낚시도구나 자재 등에 대해서는 먼저 대체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유연한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생태계 위해 외래종·식물 정책이다. 이 경우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낚시 대상어종이라는 점, 루어낚시 등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자원관리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낚시인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법 제9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에서는 장소이동 조치나 출입금지, 안전관리 지침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의 안전관리는 장소와 관련한 사항도 있지만, 시설 관련 사

항이나 장비의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낚시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수칙,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화, 부녀자 등에 대한 낚시터에서의 안전교육 및 관리 등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폭넓게 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과 같이 별도의 장으로 낚시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육성을 위해 제43조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4조 우수 낚시터의 지정 등, 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제46조 명예감시원, 제47조 교육·홍보의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은 2012년 9월에 시행되므로 아직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낚시산업의 육성을 법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우리나라에는 유어낚시 통계(낚시인구, 낚시 관련 산업 등)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어낚시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해서는 낚시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낚시산업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엔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하는 ‘어업센서스(5년 단위)’의 ‘유어채포량조사보고서(농림수산성)’가 있으며, ‘레저백서’가 발간되고 있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도 낚시 쿠폰제 및 낚시 면허제를 통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은 시·군의 협조를 받아 바다 및 민물로 구분하

여 1년 단위로 낚시기본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되 산업계의 협조를 얻어 낚시도구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적인 낚시 통계자료는 정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일본과 같이 5년 단위로 유어낚시 센서스 조사를 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유어낚시인구, 낚시터, 조업업체, 주요 어종별 조획량, 출어경비, 연간 조획량, 낚시 관련 경비 등 조사 항목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낚시 통계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통계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 정책이 발현되면서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조사 등이 이루어져 정책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 낚시 육성 및 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낚시의 대상은 생물자원이므로 생물생태계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만들어져 관할 부처가 일원화되었다. 미국은 해양대기청 국내 유어어업과에서 모든 유어행위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안·유어실에 낚시 전담관을 두어 낚시 발전 및 어업인과의 경합 문제 해결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낚시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원환경과 ‘유어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낚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기타 유어행위 관련 사항 총괄 등이다. 하지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공포와 함께 건전한 낚시 문화의 정착 및 낚시 서비스 선진화, 낚시산업 발전과 관련된 추가·신규 업무가 발생될 예정이다.

| 표 6-2 | 자원환경과 유어계의 주요 업무 현황

구 분	내 용
낚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낚시어선업법 운영 및 제·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운영 및 제·개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낚시 관련 제도 운영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낚시어선업 및 내수면 낚시터, 유어장 관련 제도의 운영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기타 낚시 관련 사항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사항 관련 용품 및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개발
유어행위 관련 사항	스킨스쿠버 관련 사항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이렇듯 새로운 법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관련 기준 설정·제도 수립·사업 설계 등 제반 사항의 준비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의 2명으로 전체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낚시 제한기준·유해 낚시도구기준·미끼기준·낚시터 시설 기준·낚시어선 설비기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분야별 담당자 배치 및 인력 증원(유어정책과 신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향후 스킨스쿠버, 체험어장, 관상어산업 등 수산자원·환경과 관련된 신규 분야가 계속 등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어행위의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직제·업무상 ‘어업 외 소득’ 또는 ‘즐기는 수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부재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낚시, 체험어장, 스킨스쿠버, 관상어 등 ‘즐기는 어업’에 관련된 기획·관리·육성을 총괄하는 ‘유어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표 6-3 | 법령 제정에 따른 신규·강화되는 주요 업무 현황

구 분		내 용
신규 업무	규제·관리	낚시 제한기준(제5조), 낚시통제구역(제6조), 유해 낚시도구기준(제7조), 미끼의 종류별 특정 물질의 함량기준(제40조), 도구·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에 대한 출입·검사(제50조)
	기 획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낚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3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제47조)
	육 성	낚시 관련 산업, 단체,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정책 수립 및 지원(제45조), 우수 낚시터의 지정 및 지원(제44조)
	제 도	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제46조),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 교육(제47조)
강화 업무	제 도	해수면 낚시터의 허가·등록
	규제·관리	낚시터 시설 기준 설정 및 지도·감독, 낚시터업자의 준수사항 설정 및 지도·감독, 낚시어선업의 신고·설비 관리
법령에서 정하지 않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업무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의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지도·교육, 낚시터, 낚시어선업과 농어촌 소득연계에 관한 사항, 국내외 정책·제도·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등

따라서 ‘유어정책과’ 신설을 통해 유어낚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낚시인의 안전 문제나 편의시설 제공 등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낚시 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 및 지원도 필수이다. 또한 해양 환경오염 심화, 자원 감소 및 어장 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마찰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5) 민간 주도의 통합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우리나라의 낚시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각 사단법인에 지부 내지는 지역협회 형식으로 회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개별 단체별로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낚시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치어 방류나 환경기금 운동 혹은 ‘잡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의 유도 등 환경보호 운동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낚시단체의 다양한 치어 방류나 환경보호 등의 활동 및 운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일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낚시단체와 같이 우리나라도 대표성 있는 낚시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낚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만 낚시 발전 조기 정착 및 지속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된 낚시단체를 통하여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 차원의 홍보 및 교육, 감시 등의 노력들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표 6-4 | 낚시 관련 사단법인 현황(중앙정부 등록 사단법인)

명 칭	설립일	목적 및 주요 활동	회원 수	등록 부처
한국낚시연합	'81. 2. 5.	· 낚시터 환경 보호 및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	106	농림 수산 식품부
전남여수낚시어선 협회	'05. 5. 27.	· 낚시어선의 질서 및 권익 보호 등	38	
한국낚시어선 협회	'02. 10. 29.	· 낚시어선업의 기술 개발 및 안전사고 예방 등	400	
한국낚시업 중앙회	'93. 11. 1.	· 낚시터경영자 간 상호 협력 및 우호 증진	350	
한국기조연맹	'10. 6. 17.	· 낚시동호인 기술 향상 및 권익 보호	350	
한국프로낚시 연맹	'10. 10. 28.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낚시 관련 산업 발전	420	
한국낚시진흥회	'89. 3. 17.	· 스포츠레저로서 낚시의 위상 정립	120	문화 체육 관광부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연합회	'01. 9. 7.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 · 낚시인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 도모	14지부 2단체	
낚시산업협회	'09. 4. 7.	· 업체 간 우호 증진과 유통질서 확립	72	지식 경제부

주: 이외 통영낚시연합 등 지자체 등록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 등 미등록 단체 및 동호회, 인터넷 기반 친목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존재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낚시단체연합회’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42.2%가 찬성하고, 반대는 16.8%로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사업체 조사에서는 찬성이 31.8%, 반대가 50.0%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세 개의 대표적 낚시단체가 있지만, 두 개는 순수 민간 조직이고 하나는 관변단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한 낚시 관리만이 아니라 육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과는 다르다. 또한 일본의 낚시단체의 활동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조속한 산업적 발전과 낚시 진흥을 위해서는 낚시인들의 통합된 의사 전달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대표 낚시단체의 다양한 낚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속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6)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하는 목적세를 부과하여 낚시자원 조성 및 환경 개선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그간 낚시면허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 검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논의의 초점은 민간 차원의 비용부담 여부이므로 낚시면허제보다는 우선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를 검토하여 도입하고, 추후 낚시면허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낚시인과 낚시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분담 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요자 입장에 있는 일반인들은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 있는 사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비용분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목적세 성격의 낚시발전기금보다는 환경분담금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낚시에 드는 비용(요금) 대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낚시비용의 5%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낚시면허제 등의 도입을 추진해 왔던 배경에는 자원 관리도 있지만 환경 등에 대한 비용의 수혜자 부담 문제도 개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기의 설문조사결과를 본다면, 적어도 낚시인들에게 5% 이내의 환경 분담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낚시면허제와 별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징수방법은 낚시터와 낚시어선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낚시도구나 낚시미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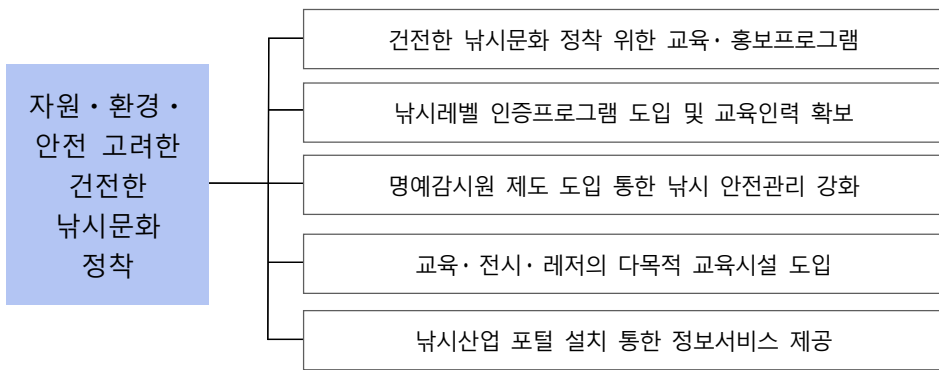
2) 자원 · 환경 · 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낚시와 관련하여 미성어 어획 및 수산자원 감소, 집어제 · 낚추 ·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낚시터 내 사행행위, 낚시어선의 과속 및 음주 운항 등 자원, 환경, 안전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과의 자원 및 공간 이용상의 마찰, 그리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어촌 주민과의 마찰 등 어업인 및 어촌 주민과의 대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듯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낚시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립, 낚시 관련 통계 및 DB 구축에 대해 낚시 관련 사업체들이 그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고 있었다.

낚시는 레저이기도 하지만, 자원관리와 환경, 안전, 질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재된 산업이다. 특히 낚시가 안전하고 건전한 그리고 지속적인 레저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이용자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

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홍보프로그램의 확립,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을 통한 낚시 안전관리 강화, 낚시 연계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 도입, 낚시산업 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그림 6-3 | 자원·환경·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방안

(1)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①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재 낚시 관련 업무가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낚시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전무하고, 일부 낚시단체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일회성 및 자체행사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낚시산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의 교육·홍보에서는 교육 대상을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홍보대상이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에 한정된 것도 문제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구체

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서비스업자들의 소양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일반 낚시인에게 확대하여 전문가·일반인·초심자 등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청소년·가족·커플 대상 낚시교실(pool에서의 낚시체험교실), 교사 초빙 낚시교실, 가족 동반 낚시 이벤트, 어린이 낚시대회 등이 있다.

이 중 교사 초빙 낚시교실은 일선 교사를 초빙하여 낚시 상식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교육하여, 이들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⁴⁸⁾

표 6-5 |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안)

구 분	교육 내용	비 고
전문 강사 희망자	수산자원, 안전, 환경을 고려한 낚시, 낚시인 매너 및 준수 사항, 정부 정책 및 법령, 효과적인 낚시 기법 전달 방법 등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시 동반 교육, 일정 자격 충족 시 자격증 부여 방안 검토
일반 낚시인	낚시인 매너 및 준수 사항,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낚시터, 낚시기법 등	특정 장소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방식
청소년·초심자	체험 위주의 교육, 낚시인 매너 등	휴가철 체험어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교육 시행

가족 동반 낚시 이벤트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낚시대회, 가족형 낚시터 소개 및 팸플릿 배부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주말과부’라는 유행어를

48)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남기며 남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낚시문화를 개선하고, 여성과 어린이에게도 낚시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낚시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어린이 낚시대회는 미래의 낚시 수요자인 어린이들이 낚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동 낚시대회는 새로운 낚시수요 창출은 물론 낚시방법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등에서 주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 낚시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낚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낚시의 저변 확대와 자원 및 환경 관리를 위한 홍보

교육과 더불어 홍보는 낚시에 대한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기여한다. 특히 낚시는 자원, 환경, 안전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해양환경·생태계의 중요성 및 낚시안전 등에 대한 자료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업계 종사자 및 낚시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단체, 환경단체 등 NGO에 명예환경감시요원 등 적절한 역할 부여를 통해서 정부와 연계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낚시대회 개최나 국정홍보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마련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낚시관련 TV 및 언론은 낚시인에게 영향력이 크므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낚시인 선언이나 낚시매너에 대한 책자 발간, 포스터와 스티커 배부와 같은 운동적인 차원의 홍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낚시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낚시수첩이 배포되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낚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홍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앞서 언급한 낚시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낚시교육에 대한 교재 개발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낚시교육전문가에 대한 제도가 없다. 낚시교육은 환경과 매너 등에 대한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낚시 인스트럭터, 낚시 마스터 제도와 같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낚시전문가 인증제도를 통해 이들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된 공인 낚시전문가들은 민물 및 바다낚시 이용객들에게 어류 생태, 떡밥 및 낚추 사용 문제, 살려서 방류하기(Catch and Release), 안전 문제, 낚시인 의식교육, 낚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교육 및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낚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인증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터 및 낚시어선, 낚시동호회(회원), 낚시단체, 낚시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낚시 관련 법·제도, 어류의 생태, 낚시터 환경보호, 낚시업 경영전략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낚시 발전을 위한 낚시지도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공인 낚시전문가 제도는 낚시인들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 태권도나 바둑과 같이 전문가에 대한 단계별 인증을 통해 낚시인의 자부심을 키우고, 교육과 홍보, 정책 개발 등에도 활용하는 다목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3) 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낚시 안전관리 강화

법 제46조에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법에 의하면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본은 지역의 방파제나 어항, 무역항 등의 낚시터로 활용하기에는 관리가 어려운 곳의 경우, 지역 낚시인이나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행정만으로는 부족한 지도·감독 기능과 자율적인 관리활동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명예감시원이 단순한 법 집행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공인 낚시전문가 제도와 연계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낚시의 안전관리뿐만이 아니라 홍보와 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낚시와 연계된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의 도입

낚시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낚시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 장소나 산업적인 목적의 전시 장소 등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 경우 각각의 기능을 따로 구분하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낚시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낚시 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⁴⁹⁾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0.7%, 사업체의 58.8%가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낚시와 연계되어 있는 교육·전시·레저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지역 거점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9) 설문조사에 제시된 설명: 낚시교육·문화관이란 낚시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낚시인 인증을 하는 곳임. 낚시상설전시관은 낚시박물관, 낚시도구상설전시판매관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임.

이러한 시설은 지역 거점 낚시공원 또는 낚시휴양리조트와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 그 효용성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 시설은 낚시문화만이 아니라 낚시도구 등의 전시·판매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부여할 수 있다.

(5) 낚시산업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과거 전문지 중심이었던 정보 원천이 TV, 인터넷 등 신 매체로 이동하고, 케이블 TV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 취미·여가 정보 제공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와 관련된 포털사이트가 현재 국내는 없으며, 낚시 관련 잡지사가 운영하거나 낚시단체 및 개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6-6 | 낚시 관련 정보 제공 현황

구 분	내 용
월간지	낚시춘추 등 6개 전문지가 월간 잡지 형식으로 발행 중. 월간낚시21, 월간붕어, 루어애플라이, 바다낚시, 피싱리더, 낚시춘추 (월 5,000~30,000부 수준)
TV	FTV: 개국('02. 3. 4.), 시청률 0.05% FS-TV: 개국('01. 6. 1.), 시청률 불명
인터넷	국내 주요 검색포털 사이트 등록 기준 1,700여 개의 관련 홈페이지 존재

따라서 낚시정보와 쇼핑물, 각종 연구 및 협의회 등이 망라된 낚시포털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낚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물고기 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 환경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낚시 관련 법·제도 소개 및 우수 낚시터 운영 사례를 제공하고 국내 낚시단체 및 관련 산업 연계, 전 세계 낚시 관련 사이트와 연계하여 낚시 관련 사업기회 창출 등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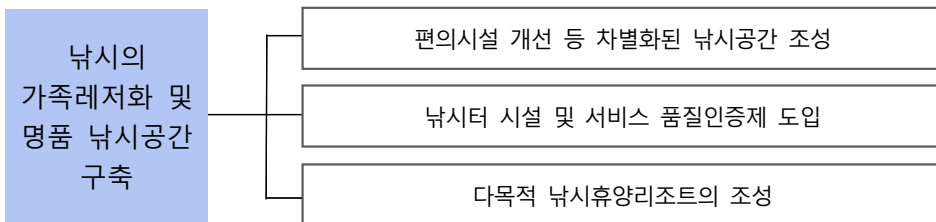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육성함으로써 낚시 관련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3)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

낚시의 저변 확대는 기존의 낚시인들만의 전문적인 레저가 아닌, 접근이 쉽고 가족 단위의 레저 활동이 가능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낚시터의 수준을 형태별, 목적별로 차별화한 낚시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중의 일부는 세계적인 낚시 휴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낚시터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설치 조건 완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낚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과 사업체 모두 ‘낚시터의 화장실, 식당, 관리사 등 편의시설 설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도별로 차별화된 낚시터(전문가형, 가족형, 연인형, 단체형 등)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많았다.

이를 위해 첫째, 편의시설 개선 등 차별화된 낚시공간의 조성, 둘째, 낚시터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셋째, 다목적 낚시휴양리조트의 조성 등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그림 6-4 |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1) 편의시설 개선 등 차별화된 낚시공간 조성

낚시객들은 선호 어종이나 낚시수단, 출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로 낚시점이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 출조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낚시터, 휴양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연인들의 데이트 낚시터 등의 기능적 측면이나 관광과 연계한 목적 등으로 구분을 하기에는 아직 정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 따라서 낚시인의 욕구(needs)와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낚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낚시를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과 같이 즐길 낚시터가 없고, 시설도 미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낚시가 가족 레저가 되기에는 낚시터의 시설적 측면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단순한 낚시터의 조성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맞게끔 낚시터의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을 차별화한 ‘공간’을 조성하는 공간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낚시문화가 가족여행, 연인들의 데이트, MT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저변의 확대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낚시터에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개설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낚시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화하여 개발된 낚시공간의 경우는 낚시포털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상업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낚시터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4조 우수 낚시터의 지정 등에서는 낚시터 중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 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낚시 저변 확대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낚시 편의시설 부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우수 낚시터 인증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73.0%, 사업체의 7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우수 낚시터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단순한 우수 낚시터의 조성보다는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지정 방법 혹은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 낚시터를 인증할 경우에도 호텔이나 기타 서비스시설과 같이 서비스 등급, 시설 등급을 명확히 하여 일반시설과 고급시설, 가보고 싶은 편안한 서비스 제공 시설 등의 차별화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다목적 낚시휴양리조트의 조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낚시터는 좌대, 방갈로, 해상 가두리, 낚시잔교 등 순수한 낚시 목적의 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해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의 경우는 캠프장과 마리나, 리조트 등이 연계된 다목적 낚시 휴양 리조트도 많다. 예를 들어 골프의 경우에도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 등을 연계한 다목적 리조트가 있는 것처럼 낚시에서도 이러한 리조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낚시를 좋아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동시에 여행할 경우, 대부분 낚시는 포기하게 된다. 또한 낚시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즉 관광이나 휴양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낚시터와 다른 목적의 시설이 연계된 곳은 없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낚시시설을 개발할 경우, 다목적 낚시휴양리조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다목적 리조트는 바닷가나 호수 등의 다양한 공간적·자원적 가치를 살리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해양 레포츠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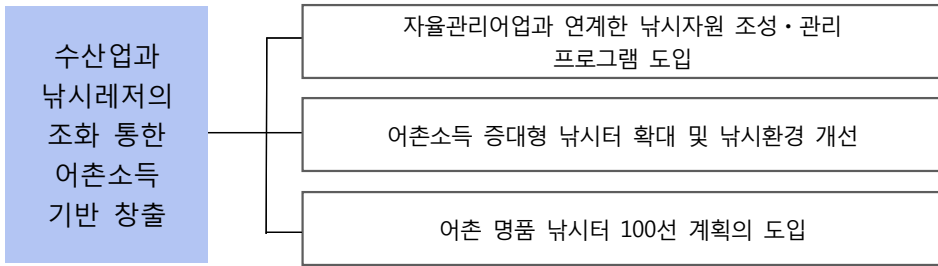
4)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낚시는 수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면과 내수면을 망라하고 수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며, 이용하는 자원이 어족자원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낚시와 수산업의 관계는 대부분이 경합적이며 갈등이나 분쟁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어 왔다. 이처럼 장소와 자원의 이용관계만을 고려한다면 경합과 갈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낚시를 어촌관광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최근 내수면과 해면에서 어업인들의 자원 관리와 낚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낚시와 수산업의 상생을 통한 어촌소득기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낚시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어촌소득 증대형(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장)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개선,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인 및 사업체 모두 조사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업계) 어장의 낚시터 조성 지원’, ‘어촌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 그림 6-5 |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방안

(1)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1900년부터 수산종묘 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설치사업과 같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로어업의 생산 증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백만 명의 낚시인이 즐겨하는 낚시의 대상자원 조성에는 소홀히 해 왔다. 이것은 주무부처가 지금까지 생산 중심의 정책을 추구해 오면서 생산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어촌소득의 기반을 어업소득에서 낚시를 포함한 어업외 소득으로 확대해 나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정제된 어업생산에서 비롯된 소득의 부족분을 어업 외의 측면에서 찾아 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수산자원사업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관광형 바다목장과 같은 일부 자원 조성사업에서 감성돔과 같은 인기 낚시대상종의 방류를 늘려가고 있고, 또한 낚시대상종이 서식하기 적합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낚시가 어촌의 중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낚시대상종에 대한 자원 조성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

경은 풍부한 유어자원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유어자원 회복지원법을 통해서 낚싯대상종에 대한 방류 및 서식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어로어업 대상종에서는 자원 조성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점차 낚싯대상종의 조성사업에도 정책적 배려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종묘 방류사업의 경우, 낚싯대상종에 대한 대량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방류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내수면 낚시터의 경우, 토종붕어가 입식된 낚시터는 더 높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다. 이렇듯 낚시인이 선호하는 어종에 대해 방류사업이 확대된다면 이를 토대로 한 낚시레저의 발전 및 어촌소득 증대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어초의 경우 낚싯대상종이 서식하기 적합한 어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피밭 등 낚싯대상종이 산란·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원의 조성에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자원일지라도 훼손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자원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낚시터 인근에 위치한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조성사업의 추진 및 자원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어촌소득 증대형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개선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사업의 일환으로 낚시터 조성이나 낚시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면 유어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어촌에서 해상에 낚시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한 어촌소득의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내수면에서는 어업계를 중심으로 좌대 낚시터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예당저수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낚시공원화를 통해 어촌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낚시터의 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촌의 주변 환경이나 자원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낚시활동이 어촌소득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다낚시의 경우 가두리형이나 잔교형이 많이 있는데, 안전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여성 및 어린이의 낚시 참여가 부진하고, 숙박시설 불편 등으로 남성 낚시인들도 단순히 낚시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및 어린이의 낚시 참여를 유도하고, 단시간의 낚시활동이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체류 휴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린이를 배려한 가족 중심적인 낚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관련 안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상 가두리, 좌대, 잔교낚시터 등의 낚시터 관련 수상구조물과 관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다양한 낚시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어업인단체 및 개별 어업인의 운영 능력, 낚시객 수요, 유어자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어촌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 제시 및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터 주변 숙박시설 및 휴게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어촌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낚시펜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무인도를 활용한 어촌낚시리조트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상과 가까운 무인도의 경우는 육상보다 낚시터와 가까운 경우가 많고, 이동수단인 낚시어선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수면과 섬의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과거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름다운 어촌 100선(2003)으로 지정된 어촌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 업계·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어촌 100선 마을 찾아가기’ 행사 실시 및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낚시 발전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낚시터 100선’을 선정하여 낚시단체 및 어촌 등과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어촌사회 발전과 더불어 낚시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낚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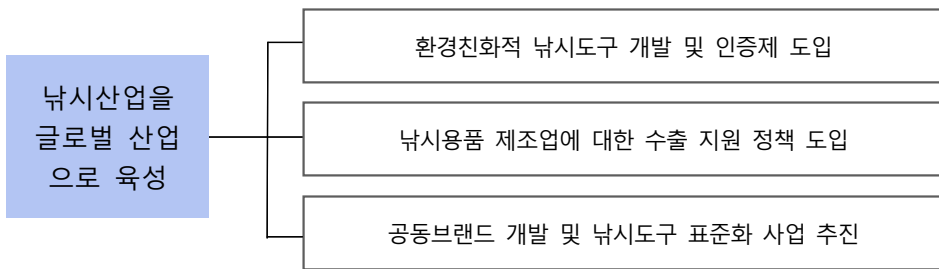
이를 위해 주요 낚시터 및 낚시동호회, 낚시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는 어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주축이 되기보다 낚시단체 및 낚시 관련 매체와 연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출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

낚시용품 제조업은 낚시대와 같은 직접적인 낚시용구 외에도 의류, 액세서리(accessory), 신발, 미끼, 안전장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판매되고 있다. 낚시도구는 용도에 따른 기능적 수요도 많지만 패션산업으로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낚시용품 제조업은 단순한 도구산업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내수 외에도 수출산업으로서 큰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제3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낚시 관련 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전방연쇄효과보다 더 큰, 즉 타 산업의 생산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산업이며, 특히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 도소매,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낚시용품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 지원 정책의 추진을 통한 글로벌 산업으로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낚시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취약하므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 둘째, 낚시용품 제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 추진, 셋째, 공동브랜드 개발과 낚시도구 표준화 사업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



| 그림 6-6 | 낚시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1)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바다 및 민물낚시에서 낚시로 인한 떡밥, 낚추, 생활쓰레기 등의 발생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민물낚시의 떡밥 과다 투기, 바다낚시의 낚추 탈락으로 수질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낚싯대나 낚싯줄과 같은 도구의 경우에도 수중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필요하다. 낚시인, 낚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낚시도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낚시도구 개발·품질 향상을 위한 R&D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생분해성 낚시도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바다 및 민물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낚시용품인 증제(스티커 부착)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 및 타 낚시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미래의 낚시용품 수요를 예측한 제품 개발이라는 측면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생분해성 낚시도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미래 시장수요의 대응 차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낚시도구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낚시단체와 연계하여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낚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친환경 낚시용품에 환경마크 부여 등 친환경 낚시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의 낚시터 이용요금 할인 혜택 제공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낚시용품 제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 추진

낚시용품 제조업은 내수와 더불어 장기적인 수출전망이 밝은 산업이다. 내수는 낚시 저변 확대와 상설 전시판매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지만, 수출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낚시용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청이나 KOTRA 등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낚시가 농림수산부로 소관부처가 일원화되었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나 한국수산물유통협회의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낚시도구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등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등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낚시박람회의 개최 지원과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낚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다.

국내 낚시박람회의 경우 매년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지만, 개별상담 위주로 종합적인 상담지원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타국의 국제낚시박람회 참가의 경우는 현재까지 각 제조사별로 자율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국제박람회는 이미 세계 최대의 낚시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낚시용품 제조업체의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낚시박람회에 대한 조직적인 참여와 제품 판촉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등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은 박람회 참가와 연관되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식품박람회 등이 개최될 경우 개최일 직전에 주요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한 사전 리셉션을 가진다. 사전 리셉션에 참여한 업체들은 익일에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좀 더 본격적인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박람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문 수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바이어 초청프로그램은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어 등의 명단과 프로필 등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3) 공동브랜드 개발과 낚시도구 표준화 사업의 추진

낚시용품의 경우 각 제조업체마다 품질이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낚싯줄의 경우에도 굵기, 인장력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국산 낚시도구의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규격표준화와 품질규격화가 필요하다. 또한 규격화된 제품들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과 더불어 관리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된 낙시산업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낙시산업에 대한 규모 추정,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낙시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법·제도 및 관리 조직, 쾌적한 낙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낙시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낙시산업을 낙시용품 제조업, 낙시용품 도소매업, 낙시터 운영업, 낙시어선업으로 구분하고, 관련 통계,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낙시산업 규모를 최소 1조 350억 원에서 최대 1조 4,2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낙시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각 부처의 주요 낙시 관련 정책,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낙시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경쟁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낙시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전방연쇄효과에 비해 컸는데 이는 타 산업의 중간재를 많이 구매하는, 즉 다른 산업의 생산을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시산업의 산출액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1.1111원의 생산이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0.3389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UN 상품무역통계를 이용한 국제경쟁력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최근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RCA 지수가 매년 급격히 하락하며, 가격경쟁력을 의미하는 EPI 지수도 2010년 급격히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시용품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국은 낚시용품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낚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낚시 및 낚시산업과 관련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의 낚시산업 실태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낚시산업 통계 및 자료 조사, 유어자원 회복을 위한 연방지원프로그램, 낚시산업협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낚시산업 관련 국제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낚시 관련 산업실태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으면서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낚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일반인(500명) 및 낚시사업체(17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고부가가치 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산업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낚시터 편의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일반인과 달리 낚시업체들은 낚시인 인증제 도입, 낚시단체연합회의 설치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 향후 낚시산업 육성·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6장에서는 첫째, 낚시산업의 법·제도적 기반구축, 둘째, 자원과 환경, 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셋째, 낚시의 가족 레저화와 쾌적하고 즐거운 명품 낚시공간의 구축, 넷째,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다섯째, 낚시도구산업의 수출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과 같이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도출하였다.

2. 정책제언

지금까지 낚시산업은 주로 자원과 환경 등의 관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또 다른 측면인 국민들의 바다 레저 수요 충족, 산업적인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부분이 간과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육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상당 부분의 발전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낚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 제6장에서 제안된 다섯가지 목표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안정적 법·제도 기반 구축의 추진방안

(1) 세부사업별 추진방안

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2011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므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하여 입법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별도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장기적 고려사항, 즉 낚시터 등의 육상 부분에 대한 관리권 제한과 낚시어선업의 개념 재정립, 집어제, 낚추 등의 문제는 별도의 연구나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정책은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낚시제한 기준과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낚시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낚시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

한 교육·홍보에 대한 자금의 일정 부분을 일정 비율로 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법에서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낚시산업 정책의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구과제 등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계획 수립 시의 의견 수렴, 적극적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을 통해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에 낚시단체들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③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통계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계청과 협의하여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정부 공식통계로서 조속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낚시단체를 중심으로 통계조사를 위한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조사 시의 홍보에 참여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④ 낚시 전담부서의 설치

전담부서는 낚시산업 및 기타 관상어산업 등을 망라한 신성장동력을 담당할 부서로 제안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속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업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정부와의 정책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민간 주도의 통합 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연합회는 민간에서 낚시산업 정책 실행을 위한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

집행 창구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낚시단체들이 합심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낚시단체들의 전향적 의견 조율 및 분위기 형성을 하여 낚시산업에 대한 민간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⑥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환경분담금은 낚시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간 낚시면허제 등의 논의가 장기간 있어왔으나,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낚시면허제 보다는 환경분담금의 형태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에 낚시면허제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표 7-1 |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구 분	정부 역할	민간 역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육상부분 관리권 제한과 낚시어선업의 개념의 법·제도 개선 낚시제한 기준, 유해 낚시도구, 낚시인 안전 등의 지침 마련, 낚시단체 교육·홍보비 지원	정부 지침에 따른 교육·홍보 역할 대행, 민간의 자발적 교육·홍보 실시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 조속한 계획의 수립·집행	계획 수립 시의 의견 수렴, 적극적 의견 제시 및 참여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정부 공식통계로 실시, 통계조사를 위한 통계청 협의와 통계조사 실시	낚시 통계 마련을 위한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낚시 전담부서의 설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속한 전담부서 설치, 산업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부와의 정책 협력체계 구축
민간 주도의 통합 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 집행 창구 역할 부여	설립준비위원회 창설, 낚시단체들의 전향적 의견 조율 및 분위기 형성, 의견 수렴 창구로서 역할
낚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여론조사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의견 개진

(2) 추진일정

낚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한 추진일정(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과제의 경우, 시행령 등이 연구과제의 형태로 추진되어 입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단기 과제에 해당되지만, 육상 부문 시설 및 토지 사용 등 법에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은 중기 과제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유어낚시 통계의 구축’, ‘낚시 전담부서의 설치’, ‘민간 주도의 통합 낚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은 낚시산업 정책이 빨리 자리 잡고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단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반면, ‘낙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과제는 낙시면허제의 도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7-2 | 낙시산업의 안정적 법·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 법령의 정비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유어낙시 통계의 구축										
낙시 전담부서의 설치										
민간 주도의 통합 낙시연합회 설립 및 지원										
낙시 환경분담금 제도의 도입										

2)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의 추진방안

(1) 세부사업별 추진 방안

①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정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각종 낙시교실, 가족 동반 낙시 이벤트, 어린이 낙시대회 등), 낙시대회 및 미디어(TV, 잡지 등)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낙시수첩 제작 및 배포,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을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낙시산업 업계와 낙시단체를 중심으로 상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업계 및 낙시단체의 회원과 낙시대회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표 7-3 | 자원·환경·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위한 역할 분담

구분	정부 역할	민간 역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낚시교실, 가족동반 낚시이벤트, 어린이 낚시대회 등) · 낚시대회, 미디어(TV, 잡지 등) 등 통한 홍보 강화 · 낚시수첩 등 배포 · 예산 확보 및 지원	· 적극적 참여 · 낚시단체, 낚시대회 등에서 회원 및 참석자에게 교육·홍보물 배포 ·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민간차원의 낚시레벨 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 낚시레벨 인증제도 도입 · 전문교육과정 운영 · 전문인력 양성	· 낚시단체는 인증프로그램 개발에 협력
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낚시 안전관리 강화	· 명예감시원 위촉 및 교육 · 감시활동 필요 경비 지원	· 명예감시원 참여
낚시와 연계된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의 도입	· 다목적 교육시설 도입 및 운영	· 낚시도구업계의 전시·판매 참여
낚시산업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 포털의 설치 및 운영	· 운영 관련 정보 제공

②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정부는 낚시레벨 인증제도 도입, 전문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낚시단체를 중심으로 인증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낚시 안전관리 강화에서 정부는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의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낚시단체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의 추천 및 참여를 담당한다.

③ 낚시와 연계된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 도입

정부는 동 시설의 도입 및 운영을 담당한다. 시설의 운영은 필요 시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은 낚시도구업계를 중심으로 동 시설에서 전시·판매에 적극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낚시산업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는 포털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고, 낚시산업 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는 포털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표 7-4 | 자원·환경·안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위한 로드맵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민간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인력 확보										
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낚시 안전관리 강화										
낚시와 연계된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의 도입										
낚시산업포털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2) 추진일정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일정(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낚시산업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은 단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낚시와 연계된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의 도입에는

시설 공사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홍보, 인증프로그램 도입,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등은 중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낚시 가족레저화와 명품낚시공간 구축의 추진방안

(1) 세부사업별 추진방안

이상과 같이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추진계획(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① 차별화된 낚시공간 조성

정부 차원에서는 낚시의 유형별로 표준적인 공간(시설) 이용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수면 낚시터나 낚시어선과 같이 유료로 이용하는 낚시공간의 경우, 화장실, 샤워시설, 숙박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등 낚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우 열악한 낚시터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여건 하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터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 즉 민간 부문에 낚시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부분을 무상 지원 또는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여 낚시터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에서도 협회나 업·단체를 중심으로 가족형, 연인형, 전문낚시객형, 초보형 등으로 차별화되는 다양한 낚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협회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국제낚시대회를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업·단체가 공동으로 세계 최대의 테마형 국제낚시대회로 개최하는 방안도 민간 부문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낚시터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정부에서는 ‘우수 낚시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효성 없이 남발하는 인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우수 낚시터의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 낚시터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거나, 낚시터 자원 조성 등 낚시터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낚시터의 시설 개선, 인증제도 참여 등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표 7-5 | 낚시의 가족 레저화 및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구분	정부 역할	민간 역할
편의시설 개선 등 차별화된 낚시공간 조성	낚시유형별 표준 시설모델 개발 및 보급, 낚시터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법·제도 개선	다양한 낚시프로그램 개발, 테마형 국제낚시대회 정기적 개최, 낚시포털서비스 제공·홍보, 낚시터 시설 현대화 참여
낚시터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우수 낚시터 인증제 도입 기반 구축,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제도 홍보, 우수 낚시터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낚시터 시설 개선 도모, 우수 낚시터 인증제 참여
다목적 낚시휴양리조트 조성	낚시테마형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민자유치), 기존 리조트에 낚시 연계 프로그램 유치 지원	기존 리조트에 낚시 연계 프로그램 개발

③ 다목적 테마형 낚시휴양리조트 조성

다목적 테마형 낚시휴양리조트의 조성은 우리나라 낚시산업이 국민 레저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골프나 스

4) 어촌소득기반 창출의 추진방안

(1) 세부사업별 추진방안

①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정부는 낚시대상종 종묘 개발 및 방류, 낚시용 인공어초 개발 및 설치, 낚시대상종 서식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및 지원을 담당한다. 민간에서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의 감시감독 기능 발휘, 종묘 방류사업 등 참여,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 등을 담당한다.

표 7-7 |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위한 역할 분담

구 분	정부 역할	민간 역할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 낚시대상종 종묘 개발 및 방류 · 낚시용 인공어초 개발 및 설치 · 낚시대상종 서식환경 개선 · 예산 확보 및 지원	· 자율관리어업의 감시감독 기능 발휘 · 종묘방류사업 등 참여 ·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
어촌소득 증대형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개선	· 어촌에 적합한 가족형 낚시터 모델 개발 · 낚시터 성공 및 실패사례 모음집 발간 · 낚시터 운영 컨설팅 실시 · 낚시시설 개선자금 지원	· 어촌관광사업과 연계 강화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 명품 낚시터 100선의 발간 및 배포 · 자매결연사업 추진	· 깨끗한 낚시터 캠페인 전개 · 자매결연사업 적극 참여

② 어촌소득 증대형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개선

정부는 어촌에 적합한 가족형 낚시터 모델 개발, 낚시터 성공 및 실패 사례 모음집 발간, 낚시터 운영 컨설팅 실시, 낚시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을 담당한다. 민간에서는 어촌관광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담당한다.

③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정부는 명품 낚시터 100선 발간 및 배포,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깨끗한 낚시터 캠페인 전개, 자매결연사업의 적극 참여 등을 담당한다.

(2) 추진일정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을 위한 추진 일정(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은 기존 낚시터에 대한 선정사업이므로 단기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촌소득 증대형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조성,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표 7-8 |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위한 로드맵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 조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어촌소득 증대형 낚시터 확대 및 낚시환경 개선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5) 글로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1) 세부사업별 추진방안

①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낚시용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정부 단독으로 R&D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련 산·학·연·정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친환경 낚시용품 인증제를 도입·홍보하여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R&D TF 참여를 통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성 낚시용품 사용을 적극 유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낚시대회의 개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수출 지원 정책 도입

정부에서는 국제낚시박람회 참가비(부스 설치비용 등) 지원과 같은 일회성 지원과 더불어 국내 낚시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 선도기업의 육성, 수출 컨설팅사업, 수출유망 낚시용품 발굴, 해외수출 네트워크 구축,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해외 낚시용품 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 정부 차원에서 수행될 과제라 할 수 있다.

| 표 7-9 | 낚시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할 분담

구 분	정부 역할	민간 역할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	환경친화적 낚시용품 R&D 전략수립 및 TF 구축, 정책지원(산·학·연 공동), 친환경 낚시용품 인증제 도입 및 홍보	R&D 공동 참여, 환경친화성 낚시용품 사용 유도 및 낚시대회 개최
수출 지원 정책 도입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지원,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운영	국제낚시박람회 참여 등 수출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활성화 도모
공동브랜드 개발 및 낚시용품 표준화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낚시용품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업계와 공동으로 낚시용품 표준화 유도	낚시용품 KOREA 공동브랜드 구축 협조, 업계 연계를 통한 낚시용품 표준화 도모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2000.

강동일·고성보, 「EXCEL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입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0. 3.

고성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감귤산업의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식품유통연구」, 제25권 제2호, 2008.

곽승준·유승훈·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2.

김경량·정해동·최윤상, “축산업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2005.

김도훈, “여행비용모형 분석을 통한 유어활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 미국 멕시코만 Red Grouper 유어부문을 대상으로”, 「수산경영논집」, 제36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 9.

류정곤 외,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12.

박철형, “유어낚시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조빈도함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 6.

배상우, “낚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신승식·박주삼, “우리나라 수산업의 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2008.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이광남 외, 「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9. 10.
- 이광남 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한국수산회·부경대학교, 2005.
- 이광남,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논집」, Vol. 34, No. 1, 한국수산경영학회, 2003.
- 이상고 외,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2. 5.
- 이상고 외, 「해수면 축제식양시장의 낚시터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2.
- 이상고·박정석, “해양낚시의 자원 및 생태환경적 문제와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03. 7.
- 이상고, “해양낚시(해양유어)의 제도적 관리 타당성에 관한 공공경제학 및 환경경제학적 분석연구”, 「수산경영논집」, Vol. 34, No. 1, 한국수산경영학회, 2003.
- 이승철·이승재·한중호, “산업연관 분석을 위용한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제19집 제1호, 2009.
- 이충기·송덕중·송학준,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6.
- 이현동,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낚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산정책연구」, 제3권, 2009. 9.
- 이희찬, “유어낚시인구, 조획량, 지출추정연구”, 「수산경영논집」, 제41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10. 9.
- 정명생 외, “주요국의 여가낚시 관리제도와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조계근, “낙시면허제(환경부담금) 도입의 타당성 연구 - 강원도 내수면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Vol. 3, No. 1, 한국세무학회, 2002.
- 조영봉 외, 「낙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2.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 _____, 「서비스업조사(9차 개정)」.
- _____,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 표희동 외, “개별여행비용법을 이용한 바다 유어낙시의 소비자 잉여 추정”,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0 권 제2호, 2008. 6.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 _____, 「산업연관분석해설」, 200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 _____,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 함태성 외, 「낙시관리제 도입 등 (가칭) “낙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2.
- 환경부, 낙시면허제 추진계획(안), 1995.

〈국외 문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 - 유어채포량 조사보고서」, 2008.
- 가고시마현 수산과, 「바다와 강의 이용자를 위한 핸드북」, 2007. 12.
- Andrew Loftus Consulting and Southwick Associates, Financial returns to business from th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 2011.
- ASA, *Sportfishing in America*, 2008.

- Miller, Ronald E. and Peter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 Prentice Hall, 1985.
- U. S. Fish and Wildlife Servic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Handbook* , 2000.
- U. S. Fish and Wildlife Service, 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2006.
- (社)日本釣用品工業會, 釣用品の國內需要動向調査報告書, 2011. 1.
- (財)社會經濟生産性本部, レジャー白書, 2011.
- 중국어업연감, 2008, 2010
- 王长工, “新编垂钓全书”,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9.
- 徐先玲, “新版钓鱼指南”, 延边人民出版社, 2002.
- 凌熙和, 潘秋芬, “休闲垂钓”, 农村读物出版社, 2011.
- 漆浩, “垂钓”, 人民体育出版社, 2005.
- 贺春艳, “休闲垂钓旅游行为分析－以湖南长沙、株洲两地休闲垂钓爱好者为例”, 顺德职业技术学院学报, 2006.
- 贺春艳, “休闲垂钓旅游地开发初探”, 现代渔业信息, 2007.
- 柴寿升, “休闲渔业开发的理论与实践研究”, 中国海洋大学, 博士論文, 2008.
- 冯逢, “钓鱼指南”, 吉林科学技术出版社, 2004.
- 占家智, “钓鱼绝招400例”, 中国农业出版社, 2007.
- 占家智, “钓鱼入门”, 安徽科学技术出版社, 2004.
- 左天, 张旋, “淡水垂钓200法”, 安徽科学技术出版社, 2004.
- 钱敏, “浅谈“渔父”意象与现代休闲垂钓旅游的发展”, 知识经济, 2010.
- 刘阳, “北方地区休闲垂钓期间的鱼塘管理”, 新农业, 2010.
- 李才根, “休闲垂钓鱼塘的管理”, 科学种养, 2006.
- 邓迎春, “休闲垂钓中的几个问题”, 渔业致富指南, 2009.
- 王剑周, “西北地区发展休闲垂钓渔业中应注意的几个问题”, 渔业致富指南, 2007.

- 伍鹏,“我国海洋休闲渔业发展模式初探——以舟山蚂蚁岛省级休闲渔业示范基地为例的实证分析”,渔业经济研究,2005.
- 宁波,“试论渔文化、鱼文化与休闲渔业”,渔业经济研究,2010.
- 卢飞,“基于满意度的休闲渔业体验研究”,中国海洋大学,2009.
- 董莉莉,黄硕琳,“休闲渔业品牌战略构建的必要性分析”,上海海洋大学学报,2011.
- 宋振兴,“威海休闲渔业发展浅析”,中国渔业经济,2007.
- 陈明宝,“休闲渔业资源的价值及评估研究”,中国海洋大学,2008.
- 包特力根白乙,韩瑜倩,李晓娜,“大连休闲渔业:发展基础·实践现状·推进方策”,生态经济,2008.
- 闵宽洪,“我国休闲渔业发展浅析”,中国渔业经济,2006.
- 沈佳强,何杰,“舟山休闲渔业发展战略研究”,中国渔业经济,2009.
- 苏勇军,“宁波市休闲渔业发展研究”,渔业经济研究,2007.
- 章期红,“关于千岛湖发展休闲渔业的思考”,中国渔业经济,2008.
- 杜颖,“北京市休闲渔业游客旅游动机研究”,北京林业大学,2008.
- 张广海,董志文,“青岛市海洋休闲渔业发展初探”,吉林农业大学学报,2004.
- 李季芳,“我国海洋休闲渔业发展中的问题分析与对策建议”,山东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6.
- 林法玲,“关于发展福建海洋休闲渔业的探讨”,现代渔业信息,2003.
- 董志文,朱丽男,“山东滨海休闲渔业发展路径研究”,中国海洋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0.
- 张士军,刘群,“基于结构调整的青岛市海洋休闲渔业发展初探”,中国渔业经济,2010.
- 同春芬,“发展海洋休闲渔业 建设社会主义新渔村”,中国海洋报,2007.
- 刘雅丹,“休闲渔业的发展与管理”,世界农业,2006.
- 王玉堂,“休闲渔业非等闲 其实可做大文章”,科学养鱼,2003.

刘康, “发展休闲渔业 优化渔业结构—青岛市海洋渔业可持续发展的战略思考”,
海洋开发与管理, 2003.

周先标, “浅谈中外休闲渔业管理”, 中国渔业经济, 2004.

殷志平, “我国当代休闲娱乐产业发展研究”, 武汉理工大学, 2002.

张杨, “大连休闲娱乐产业现状调查与发展策略研究”, 经济研究导刊, 2011.

刘晓娟, “我国湖泊休闲度假旅游的发展研究”, 安徽大学, 2010.

〈온라인 자료〉

<http://www.chinacustomsstat.com>(중국해관통계사이트)

<http://www.cnzhnet.com.cn>(中国展会网)

부 록 1. 낚시산업 연구 설문조사표

〈사업체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낚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 연구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안심하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일반 현황

업체명	연락처		
업체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업체 유형	① 낚시용품 제조업 ② 낚시용품 도·소매업 ③ 낚시터 운영업 ④ 낚시어선업 ⑤ 기타(낚시 관련 잡지, 방송 등)		
낚시업 종사경력	총 년	종업원 수 (고용주 포함)	총 명

- ③ 입질, 어획의 부족 ④ 낚시 방법 등의 정보 취득 어려움
⑤ 낚시 편의 시설 부족(가죽동반을 포함) ⑥ 낚시인의 안전 문제
⑦ 기타(직접 기재 :)
5. 만약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떤 부문에 정책(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낚시 자원의 조성
②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규제
③ 법·제도적 규제 완화(시설 허가 등)
④ 낚시터의 조성 및 관광·편의시설 확대
⑤ 낚시인의 안전 대책
⑥ 낚시도구산업의 육성
⑦ 기타(직접 기재 :)
6.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사의 최근 3년 매출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항은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절대 정보 유출 또는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매출액(원)			

7-5. 낚시인 인증제 실시

낚시인 인증제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낚시인에게 태권도 ‘단증’처럼 인증을 하는 것으로, 초급, 중급, 고급, 명인 등의 인증으로 낚시 교육과 낚시인 자부심 고취가 목적입니다. 고급 이상 자격자는 낚시교육자격증을 부여하여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명예감시인 역할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7-6.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낚시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 설치

낚시교육·문화관이란 낚시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낚시인 인증을 하는 곳임
낚시상설 전시관은 낚시박물관, 낚시도구상설전시판매관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임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7-7. 낚시단체연합회 설치

낚시교육과 낚시터·낚시인 인증을 담당하며, 낚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대응 창구로서, 기존의 난립한 단체 등을 연계하여 낚시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임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7-8.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성장 (중요한 항목에 체크 √, 복수 응답 가능)

- ①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② 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업계) 어장의 낚시터 조성 지원
③ 어촌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
④ 무인도를 활용한 어촌낚시리조트의 도입
⑤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⑥ 기타(직접 기재 :)

7-9. 낚시산업의 인터넷 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전자상거래 촉진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7-10.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립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7-11. 낚시 관련 통계 및 정책 DB의 구축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8. 낚시터의 환경 개선 및 자원 조성,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인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하는 목적세를 부과하여 낚시자원 조성 및 환경 개선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낚시발전기금은 낚시도구, 미끼의 구매요금,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고, 환경분담금은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8-1. 비용분담방법

낚시발전기금 (목적세)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환경분담금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8-2. 비용분담의 선호도

- ① 낚시발전기금(목적세)이 더 좋다 ② 환경분담금이 더 좋다

8-3. 비용분담금의 정도 (이용요금 대비)

- ① 1% 이하 ② 1~2% ③ 2~3% ④ 4~5% ⑤ 5% 이상

〈일반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낚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객들의 의견을 수렴, 연구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안심하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인적사항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기타
혼인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③ 경기도 ④ 일반 지방도시(시·군)
직업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농림어업종사자 ④ 전문직 ⑤ 무직 ⑥ 학생 ⑦ 자영업 ⑧ 기타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199만원 ③ 200만~299만원 ④ 300만~399만원 ⑤ 400만~499만원 ⑥ 500만~599만원 ⑦ 600만~699만원 ⑧ 700만~799만원 ⑨ 800만 이상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대재) ④ 대학원졸 이상

낚시 관련 활동사항

1. 귀하는 평소 ‘낚시’라는 레저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② 다소 좋아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⑤ 매우 싫어한다
2. 귀하는 지금까지 바다나 강, 호수 등에서 ‘낚시’를 실제로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아래의 3번 문항만 응답하고 설문 종료)
3. 귀하는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실내낚시터 등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적어도 1회 이상 ‘낚시’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반드시 할 것이다
 - ② 아마 할 것 같다
 - ③ 보통(반반)이다
 - ④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 3-1번, 3-2번만 응답하고 설문종료)
 - ⑤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다(☞ 3-1번, 3-2번만 응답하고 설문종료)
- 3-1. (3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답변) 귀하가 낚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낚시 자체에 관심(또는 의향)이 없음
 - ② 고가의 낚시용품 구입이 부담됨
 - ③ 주변에 낚시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짐
 - ④ 관심은 있으나 낚시하는 방법을 모름
 - ⑤ 낚시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므로 하고 싶지 않음
 - ⑥ 기타 이유(직접 기재 : _____)
- 3-2. (모든 응답자 답변) 낚시가 ‘꾼’들의 전유물이고,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낚시를 배우기 어렵고,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 ② 낚시도구 구입과 출조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③ 가족과 같이 즐길 낚시터가 없고, 시설도 미비해서
 - ④ 낚시는 여자와 아이들이 즐기기에 위험해서
 - ⑤ 낚시에 살아있는 미끼 사용 등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 ⑥ 낚시에 가족들과 가면 번거로워 혼자 다니기 때문에
 - ⑦ 기타 이유(직접 기재 : _____)
4. 귀하의 낚시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 ① 1년 이내 ② 1~3년 정도 ③ 3~5년 정도
 - ④ 5~10년 정도 ⑤ 10~15년 정도 ⑥ 15~20년 정도
 - ⑦ 20년 이상
5. 귀하는 바다 및 민물낚시를 포함하여 월평균 몇 회 정도 출조하십니까?
(월평균 응답이 어려우면, 연평균으로 기재 요망)

월평균 : 약 _____ 회
연평균 : 총 _____ 회
6. 귀하가 주로 낚시를 즐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출조 비중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출조 비중
바다	방파제	
	갯바위	
	낙시어선	
	기타(어항 등)	
민물	강	
	저수지	
	호수	
실내낙시터		
합계		100%

7. 출조 시 주로 누구와 동반하십니까?
 ① 혼자(본인 1명) ② 친구 동반 ③ 가족 동반
 ④ 동호회(카페) 동반 ⑤ 직장동료 동반 ⑥ 기타
8. 1회 출조 시 귀가 때까지의 일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이상
9. 귀하의 낙시방법은 무엇입니까?(많이 이용하는 순으로 2개까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릴 ② 루어 ③ 장대 ④ 그물 ⑤ 견지 ⑥ 기타()
10. 귀하는 1회 출조 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교통비, 유류비, 식비, 낙시용품 구입비 등 모두 포함)
 ① 3만원 미만 ② 3~5만원 ③ 5~10만원 ④ 10~20만원
 ⑤ 20~30만원 ⑥ 30~50만원 ⑦ 50~100만원 ⑧ 100만원 이상
11. 귀하는 낙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 편입니까?
 ① 인터넷 ② 낙시서적 ③ 동호회(카페) ④ 방송(TV, 라디오)
 ⑤ 지인 ⑥ 낙시용품점 ⑦ 기타

낙시산업에 대한 인식

12. 정부는 2011년 3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을 공포(2012년 9월 10일 시행)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은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법에는 낙시에 대한 각종 관리(미끼, 낙시터 등)에 대한 것과, 낙시산업 육성을 위한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매우 잘 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13.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 낙시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및 육성을 위해 낙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에 비해 향후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크(✓) 표시 바랍니다)

구분	① 대폭 강화	② 다소 강화	③ 적당하다	④ 다소 완화	⑤ 대폭 완화
어종·마릿수·체장 ·체중 등 제한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 제한					
낚시통제구역					
낚시인 안전관리					
낚시터업 허가					
낚시어선					
낚시미끼					

15. 현재 낚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15-1. 산업 발전의 문제점

- ① 낚시관련 업체 영세성 ②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지원 미흡
③ 법·제도적 규제 ④ 낚시인의 안전 대책 미흡
⑤ 기타(직접 기재 :)

15-2. 낚시 서비스의 문제점

- ① 낚시터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숙박 등) 및 주변 관광시설 부족
② 낚시터의 부족
③ 환경오염(수질 악화 및 낚시터 주변)
④ 낚시 어자원 고갈
⑤ 낚시인의 환경에 대한 보호·관리의식 미흡
⑥ 낚시관련 정보의 부족
⑦ 기타(직접 기재 :)

15-3. 낚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 ① 고가의 낚시장비 구입 비용 ② 높은 입어료(낚시요금)
③ 입질, 어획의 부족 ④ 낚시 방법 등의 정보 취득 어려움
⑤ 낚시 편의 시설 부족(가족 동반을 포함) ⑥ 낚시인의 안전 문제
⑦ 기타(직접 기재 :)

16. 만약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떤 부문에 정책(예산배분)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낚시 자원의 조성
② 낚시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규제
③ 법·제도적 규제 완화(시설 허가 등)
④ 낚시터의 조성 및 관광·편의시설 확대
⑤ 낚시인의 안전 대책
⑥ 낚시도구산업의 육성
⑦ 기타(직접 기재 :)

17. 다음의 설문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 낚시도구산업의 발전 정책 (중요한 항목에 체크 ✓,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제 낚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지원
② 낚시도구 개발·품질 향상을 위한 R&D 지원

- ③ 내수 및 수출을 위한 브랜드화 등 마케팅 지원
- ④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등 거래활성화 지원
- ⑤ 대규모 상설 전시판매장의 도입
- ⑥ 기타(직접 기재 :)

17-2. 낚시 규제 완화 (중요한 항목에 체크 √, 복수 응답 가능)

- ① 낚시통제구역의 제한 조건 강화
- ② 낚시터 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 ③ 낚시터 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시설 설치 조건 완화
- ④ 낚시 미끼 및 도구 기준의 완화
- ⑤ 기타(직접 기재 :)

17-3. 낚시 편의시설 및 관광 연계(중요한 항목에 체크 √, 복수 응답 가능)

- ① 낚시터의 화장실 및 식당, 관리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 ② 낚시터의 관광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 ③ 낚시터와 연계한 관광리조트 설치
- ④ 용도별로 차별화된 낚시터 조성(전문가형, 가족형, 연인형, 단체형)
- ⑤ 낚시터와 마리나, 캠핑장 등 복합형 낚시공원 조성
- ⑥ 기타(직접 기재 :)

17-4. 우수 낚시터의 인증제 실시

우수 낚시터 인증제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에 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7-5. 낚시인 인증제 실시

낚시인 인증제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낚시인에게 태권도 ‘단증’처럼 인증을 하는 것으로, 초급, 중급, 고급, 명인 등의 인증으로 낚시 교육과 낚시인 자부심 고취가 목적입니다. 고급 이상 자격자는 낚시교육자격증을 부여하여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명예감시인 역할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7-6. 교육·전시·레저의 다목적 낚시교육·문화관 및 낚시상설전시관 설치

낚시교육·문화관이란 낚시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낚시인 인증을 하는 곳임
낚시상설 전시관은 낚시박물관, 낚시도구 상설전시판매관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임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7-7. 낚시단체연합회 설치

낚시교육과 낚시터·낚시인 인증을 담당하며, 낚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대응 창구로서, 기존의 난립한 단체 등을 연계하여 낚시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임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7-8. 낚시와 수산업의 동반성장 (중요한 항목에 체크 √, 복수 응답 가능)

- ①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낚시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 ② 마을어장 및 어촌계(어업계) 어장의 낚시터 조성 지원
- ③ 어촌관광과 낚시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
- ④ 무인도를 활용한 어촌낚시리조트의 도입
- ⑤ 어촌 명품 낚시터 100선 계획의 도입
- ⑥ 기타(직접 기재 :)

- 17-9. 낚시산업의 인터넷 포털의 설치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전자상거래 촉진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 17-10.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립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 17-11. 낚시관련 통계 및 정책 DB의 구축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8. 낚시터의 환경 개선 및 자원 조성,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하는 목적세를 부과하여 낚시자원 조성 및 환경 개선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낚시발전기금은 낚시도구, 미끼의 구매요금,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고, 환경분담금은 낚시터·어선 요금 등에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8-1. 비용분담방법

낚시발전기금 (목적세)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환경분담금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이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8-2. 비용분담의 선호도

- ① 낚시발전기금(목적세)이 더 좋다 ② 환경분담금이 더 좋다

18-3. 비용분담금의 정도 (장비 구매비용 또는 유료 낚시터 이용요금 대비)

0%, 1%, 2%, 3%, 4%, 5%, 7%, 10%, 15%, 20%, 25%, 30%이상

19. 일본 등 낚시 선진국에서는 낚시객들(협회 등)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어류 종묘 방류를 하여 낚시 자원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귀하가 이용하는 낚시터에서 10%의 조획량 증가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귀하는 방류사업을 위한 모금액으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회 출조 시 소요비용 대비)
 0%, 1%, 2%, 3%, 4%, 5%, 7%, 10%, 15%, 20%, 25%, 30% 이상

부 록 2. 외국의 낚시산업 현황

1. 미국

1) 미국의 낚시도구 관련 지출

2006년 미국의 낚시장비와 관련된 지출은 총 188억 달러로서 총 지출의 45%를 차지하였다. 이 중 낚시대, 릴, 낚시도구함, 루어, 플라이 등 낚시도구에 53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동 금액은 낚시장비 지출의 28%에 해당된다. 보조장비는 캠핑장비, 낚시의류 등으로 7억 7,900만 달러로서 낚시장비 지출의 4%를 차지하였다. 보트, 캐빈 등과 같은 특수장비에 대한 지출은 126억 달러로서 낚시장비의 67%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낚시객들은 낚시 관련 잡지, 회비, 라이선스료 등에 54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중 토지 임대 및 소유에 46억 달러를 지불하였고, 라이선스 등에 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 부록 표 1 | 미국의 낚시도구 관련 지출(2006)

지출 항목		지출금액(천 달러)	낚시객 1인당 지출(달러)
총 계		42,011,124	1,403
여행경비	소계	17,878,560	597
	숙식	6,302,524	210
	교통	4,961,830	166
	기타	6,614,205	221
낚시장비	소계	18,757,370	626
	낚시도구	5,332,401	178
	보조장비	778,740	26
	특수장비	12,646,229	422
기타 지출	소계	5,375,195	180
	잡지, 책	115,019	4
	회비 등	157,728	5
	토지임대 등	4,598,988	154
	라이선스 등	503,460	17

주: 보트비용은 정박, 유지보수, 보험료 등 포함. 특수장비는 보트, 캠핑카 등임. 낚시인구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USFWS, 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2007

다음은 낚시도구와 관련한 지출의 상세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 부록 표 2 | 미국의 낚시장비 관련 상세 지출(2006)

구 분	지 출	
	지출금액 (천 달러)	낚시객 1인당 지출(달러)
낚시도구		
소계	5,332,401	178
낚시대, 릴 등	2,288,572	76
낚시줄, 리더	543,186	18
루어, 플라이 등	906,951	30
바늘, 추, 스위블	387,836	13
테클박스	127,197	4
크릴, 스트링어, 어망	107,108	4
미노우, 미끼통 등	61,267	2
수심측정기, 어탐기, 기타 전자장비	514,423	17
얼음낚시 도구	105,335	4
기타	290,524	10
보조장비		
소계	778,740	26
캠핑장비	404,240	13
망원경, 안경	42,639	1
낚시의류, 장화	239,687	8
가공, 박제	42,183	1
기타	49,992	2
기타 비용		
미끼	1,183,332	40
얼음	378,190	13
특수장비	12,646,229	422
라이선스, 허가, 태그 등	503,460	17

주: 특수장비는 보트, 캠핑카 등임. 낚시인구는 16세 이상임

자료: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2007, p. 73

미국의 낚시객들은 보트 및 캠핑카와 같은 특수장비를 제외하면 낚시대 및 릴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1인당 연간 76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끼와 루어인데 각각 40달러, 3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스포츠피싱협회의 활동

다음은 미국스포츠피싱협회의 주요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1) 낚시 관련 업계의 이해 대변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의회,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기관, 주정부 및 연방정부 등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책 수립과정에서 낚시업계의 이해가 잘 대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 협회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사이트는 국내의 낚시 관련 이슈를 회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회원과 낚시객 및 일반인이 낚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유어낚시와 회원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또는 잠재적인 법 및 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스포츠피싱협회 내 부서인 ‘Government Affairs’는 의회, 연방정부, 주정부 리더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낚시 관련 정책이 형성될 때 유어낚시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Keep America Fishing’, ‘ASA Legislative Action Center’⁵⁰⁾ 등을 운영하고 있다.

‘Keep America Fishing’은 바다, 강, 호수 등이 낚시에 개방되고 청결하게 이용되며 자원이 풍요롭게 유지되고 국가의 수계에 대해 지속 가능한 낚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낚시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5대호의 생태계 보존 및 유어낚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시아잉어의 침입을 금지하도록 지역 의원들에게 청원하는 활동을 수행하

50) 온라인 입법행동센터(Legislative Action Center)는 회원들이 의회 의원 또는 지역 언론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특정 도구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 주 의회에 낚시인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2)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매년 국제낚시용품 무역박람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llied Sportfishing Trades: ICAST)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낚시산업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 협회는 매년 10월경에 ‘낚시정상회의(Sportfishing Summit)’를 개최하여 업계 간에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동 회의를 통해서 유어낚시와 관련된 당해 연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동 협회는 회원들에게 낚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가 하면, 업계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 보존 및 교육 활동

Fish America Foundation은 미국스포츠피싱협회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련한 연구재단이다. 동 재단은 미국 수산업과 수로의 건강성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재단은 1983년 오클라호마 주의 가족 단위 낚시터에서의 낚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였다.

이후 동 재단은 미국 내 50개 주에서 지역공동체 기반 수산업 보존(community based fisheries conservation)과 서식처 개선 프로젝트에 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동 재단은 연간 백만 달러 이상을 지역공동체에 투자하여 유어낚시 인구 확대, 서식처 복원, 수질 개선 및 관련 연구 촉진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 재단은 최근 수초 복원사업에 9백만 달러 가량을 지원하였다.

(4) 업계 자료 보고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Sportfishing in America’라는 보고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미연방 어류·야생동식물국에서 발행한 2006년 낚시 및 수렵 관련 보고서(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낚시객 수, 연간 낚시일 수, 유어낚시 지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스포츠피싱협회는 또한 ‘Today’s Angler’라는 보고서를 통해 회원들이 대상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낚시선호도 등 필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협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나 관련 기관에는 유료(250달러)로 제공된다.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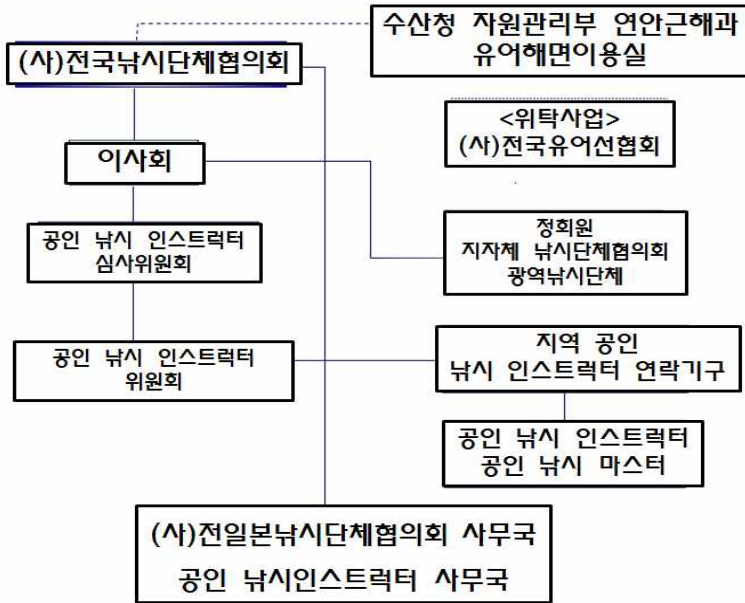
일본의 낚시관련단체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일본낚시진흥회,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 (사)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이다. 이 중 (사)일본낚시진흥회,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며, (사)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는 일본수산청에 등록된 관변단체이다.

1)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

(1) 단체의 개요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는 1971년 농림수산성을 주무관청으로 발족된 기관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과 낚시인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승인 단체이다. 동 협의회는 낚시터 청소활동, 낚시인의 지위 향상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위탁사업인 공인낚시지도원(낚시 인스트럭터), 상급낚시지도원(낚시 마스터) 자격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회원은 일본 전국 각지의 지자체 낚시단체협의회와 각 분야의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광역단체를 정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또한 민간 낚시단체는 참조회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 부록 그림 1 |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 조직도

(2) 정부와의 관계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는 목표는 낚시의 건전한 발전과 어장 이용 문제의 해결, 어업관련 법규의 준수, 낚시인의 권리 확보, 자연환경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등이다.

동 협의회는 농림수산성, 수산청 및 관련 기관 등의 위원회 활동, 지자체의 해면이용협의회와 내수면어업관리위원의 위원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수산청 자원관리부 근해연안과, 유어해면이용실의

내수면조정반의 산하에 있는 수산정책심의회·자원관리부회, 해면이용협의회, 재배어업검토회, 유어선검토후회, 외래어종문제간담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수산청 위탁사업으로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어장환경보전개발추진기획위원회, 전국 내수면어업협동조합연합회·외래어종대책검토회, 은어어병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는 지자체 해면이용협의회, 지자체 내수면어업관리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을 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의 열 가지이다. 첫째, 낚시지도원의 양성이다. 전국유어선업협회의 위탁사업으로서 낚시 인스트럭터의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하고, 낚시 인스트럭터의 파견, 낚시터 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낚시 인스트럭터의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강습회, 자격시험의 실시이다. 낚시교실의 개최와 지도원의 파견은 동 협의회의 회원단체 및 각 지구 인스트럭터 연락기구가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낚시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동 협의회의 역할은 낚시교실에 낚시기술과 낚시터의 환경 보전 및 안전 확보, 낚시매너 등을 지도하는 지도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낚시터의 조사사업은 낚시 인스트럭터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주요 낚시터에 보전조사와 낚시 매너 등의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낚시 마스터의 양성이다. 낚시 마스터가 낚시 인스트럭터 지도자로서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회와 자격시험을 연 1회 실시한다.

셋째, 낚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식보급 활동이다. 낚시터에서 낚시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사업이다. 추진사업의 종류는 사단법인 바

다와 해안 환경미화추진기구와 제휴한 수역환경미화개선운동, 재단법인 일본낚시진흥회가 실시하는 바닷가 감사일 협찬, 낚시터 청소 실시, 전국 규모의 환경보전 청소를 정회원단체 및 산하기구와 협력하여 실시, 환경정비 자재의 정회원단체 배포 등이다.

다섯째, 어족자원의 보호활동이다. 어족자원의 영속성확보를 위한 수생생물의 보호, 치어 방류, 수정란 방류, 자연산란장소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다.

여섯째, 외래어 대책으로 재래종의 보전·보호와 외래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책으로 외래어를 포함한 자원 관리·이용 기본방침을 행정기관, 어업자, 수산학자 및 일반인에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이 많은 큰입 베스의 낚시 동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 국제선박·항만안전법의 출입금지구역 해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 의한 국제선박·항만안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항만 출입금지구역에 대해 낚시인의 연안 모니터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해 낚시를 위한 출입에 대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4)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제도

낚시인의 매너와 낚시질서 또는 낚시인의 안전 등에 대해서 지도하기 위한 인스트럭터의 활동이 매우 중요시되면서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에서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1992년부터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강습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인스트럭터를 양성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상급 인스트럭터(fishing master)의 제도가 발족하였다.

인스트럭터 제도는 해면과 내수면의 두 종류가 있으며,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와 낚시 인스트럭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은 일반 낚시인에 대해서 낚시기술과 함께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환경의 보전,

낚시터에서의 안전 확보, 낚시터에서 매너 등의 지도를 행하는 자를 육성하는 것에 의해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시하여 어업과의 분쟁 및 해난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낚시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마크 및 엠블럼

공인 낚시 마스터 마크 및 엠블럼

| 부록 그림 2 |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및 낚시 마스터의 마크

낚시 인스트럭터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i) 일반 낚시인에 대해 낚시기술의 지도, 낚시터에서의 매너, 수산자원 보호의 식의 향상, 낚시터에서의 안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ii) 각종 낚시대회 등에서 개최되는 강습회의 강사로 참가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iii)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유어 관계사업의 실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언을 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i) ~ iii)의 활동을 유효 혹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 협의회에서 지방공공단체로 낚시 인스트럭터의 명단을 송부하고 있다.

상급 낚시지도원인 낚시 마스터는 자격 취득을 위해 3년 이상의 인스트럭터 경험이 필요하며, 협의회 정회원 단체 또는 지역 인스트럭터 기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낚시 마스터는 세 가지 종류의 자격으로 다시 나뉘는데, 기술 분야와 운영 분야, 지도 분야로 나뉜다. 기술 분야는 전통기술의 보존과 발전에 관

한 것이며, 운영 분야는 환경보전, 어업인과의 조정, 조직의 유지, 행정기관과의 연락 등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 분야는 지도기술을 연구습득하여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강습 내용은 국제해양법 지식과 외국의 라이선스제도, 환경 보전, 생태계 보호에 관한 최근의 정세와 낚시와의 관계, 낚시 대상종에 대한 지식과 특징, 어업관 낚시와의 조정,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지도를 위한 강습방법 등이다.

2) (사)일본낚시진흥회

(1) 단체의 개요

(사)일본낚시진흥회는 1970년 9월 29일 설립된 순수 낚시민간단체로서 방류활동, 낚시 매너 홍보활동, 낚시터 환경 보전활동, 낚시 보급활동, 낚시터 조성활동 등을 행하고 있으며, 레저로서 낚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단법인이며, 낚시문화자료관으로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원은 일반 낚시인, 낚시도구점, 낚시제조업 및 낚시 관련 단체이며, 정부의 지원 혹은 정부 위탁사업 없이 전액 회비와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 부록 그림 3 | 일본낚시진흥회의 낚시교육용 책자

(2) 주요 사업

일본낚시진흥회는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경우는 강사진에 대한 교통비의 지급 등에 한정하고 어장

청소의 경우는 청소자재(비닐봉지, 장갑, 집게 등)에 한정하여 중앙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식비 등은 지부 회원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오는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참가하는 자원봉사의 경우는 가까운 곳은 자비로 참여하고 있다.



| 부록 그림 4 | 일본낚시진흥회의 호수·바다 밑 청소사업

주요한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전한 낚시 보급사업, 둘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수변환경의 보전활동, 셋째, 치어와 수정란 방류 등의 어족자원 증식활동, 넷째, 낚시터 확보 활동이다. 낚시터의 경우는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협의, 낚시공원과 시설의 설치 요구 등이다.

건전한 낚시 보급사업은 초보자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낚시교실, 및 대회, 베테랑 낚시인들을 위한 낚시대회 등이다. 사업의 내용으로서 일

본낚시주간(Japan Fishing Week)를 두어 본부와 각 지부에서 낚시대회 및 낚시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가족낚시제전, 가족낚시대회, 주니어낚시교실, 부자낚시교실, 낚시와 요리교실을 연계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수변환경의 보전활동은 바닷가 감사의 날을 정해 전국 일제 바닷가 청소사업을 하고 있으며, 스킨스쿠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호수와 바다 밑을 청소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어와 수정란 방류 등의 어족자원 증식활동은 방류를 위한 모금액과 회비, 기부금으로 실시되며, 해수면에서는 돌돔, 솜뱅이, 넙치 등, 내수면에서는 산천어, 은어, 떡붕어 등의 치어와 성어를 방류하고 있다. 매년 전국 100개소를 넘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활동을 위해 산하에 환경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환경보전, 보호를 위한 지역공헌활동으로서 각종 교육 및 체험활동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 자연환경·생물 생태 등의 정기 강습회와 지역 의견교환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낚시인에 대한 낚시매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낚시단체, 환경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낚시터에 모럴 리더를 육성하고, ‘낚시인 선언’을 통해 쓰레기 가져 가기, 불법주차 금지, 불법 이식방류의 금지 등 매너 홍보를 위한 포스터, 매너 핸드북 작성·배포, 매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낚시인 선언

우리는 일본의 풍요로운 자연을 지키고, 낚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을 선언하고 지킨다.

1. 낚시인으로서 매너 향상에 노력한다.
 - 우리는 안전제일을 명심하고, 양보정신을 중시한다.
1. 낚시인으로서 돌을 지킨다.
 - 우리는 보트의 위험한 조정, 굉음, 불법주차 등 타인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또한 불법이식 및 방류를 하지 않는다.
1. 자연환경 미화 보전에 노력한다.
 - 우리는 쓰레기와 사용한 물건 등을 가지고 가는 등 항상 낚시터의 청소를 한다.
 - 또한 어족자원의 보호, 중식을 위해 제장 제한, 게취 엔 밀리즈를 주진에 나간다.

| 부록 그림 5 | 낚시인 선언의 내용



釣りが人が放置するゴミや、立入禁止場所への侵入、漁業者とのトラブル等が原因で釣りが禁止される釣り場が増えていきます。皆さんが釣りを楽しんでいる釣り場がなくならないよう、ルール・マナーを守り、ゴミの持ち帰りに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Japan Sportfishing Association
財団法人 日本釣振興会

Tel. (03)3555-3232(代)
<http://www.jsfishing.or.jp>

| 부록 그림 6 | 낚시 매너 홍보를 위한 팸플릿과 스티커

또한 낚시단체, 낚시점 등에 만들어진 홍보 포스터, 팸플릿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각 점포에 쓰레기 회수 박스의 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보급을 위해 일본낚시용품공업회와 함께 생분해성 소재 등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사용 촉진사업을 하고 있다.

(3) 낚시문화자료관

낚시문화자료관은 일본낚시진흥회가 순수 민간자본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낚시자료관이다. 동 자료관은 낚시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일본낚시문화의 역사를 알리고, 예로부터 전승된 낚시 기법과 전통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 자료관은 예약제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 부록 그림 7 | 낚시진흥회의 낚시자료관 전경

낚시용품 전시코너에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낚시도구의 변화와 제작 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낚시에 관한 단행본, 도감, 전집, 낚지 등 약 2만 권을 전시하고 있다.

3)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

(1) 단체의 개요

(사)일본낚시용품공업회(JAFTMA, Japan Fishing Tack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1992년에 통상산업성(당시)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된 단체이다. 동 단체는 일본의 낚시용품제조업계의 발전, 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낚시인의 니즈에 대응한 제품의 공급 등을 행하는 곳이다. 또한 낚시용품공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국제낚시박람회 등의 개최, 국제적인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사업을 통한 낚시용품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낚시용품공업회는 앞서 두 개의 단체와는 달리 낚시용품 제조업체가 회원인 이익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2) 주요 사업

일본낚시용품공업회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본국제낚시쇼(Japan Fishing Festival)의 개최이다. 일본국제낚시쇼는 매년 열리는 일본의 국제낚시박람회로서 2010년에는 약 5만 5천 명이 참가하였다. 동 공업회는 낚시쇼의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낚시쇼의 홍보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낚시쇼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단체 및 업계와의 제휴를 위한 협의 및 검토, 해외 낚시박람회의 연구 및 연계이다.



| 부록 그림 8 | 일본국제낚시쇼의 포스터

둘째, 낚시환경 보전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보전 인증마크사업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전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보급이 원활치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부터 기준을 완화된 또 하나의 환경보전 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활동으로서 학교의 낚시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 월 등의 청소 자금을 모아 호수 및 바다 밑 청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낚시용품의 규격 통일, 표준화사업이다. 이는 낚시용품의 규격을 검토하고 업계표준을 통일하며 용품의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낚시용품 시장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매년 낚시용품의 국내수요동향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되는 보고서이지만, 낚시용품에 대한 유일한 수요조사보고서로 인정받고 있다.

3. 중국

1) 중국의 낚시장소 및 어종

최근 낚시가 중국의 국민 레저로 자리매김하면서 낚시장소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낚시는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크게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민물낚시 또한 연못, 호수, 하천, 저수지 등에서, 바다낚시는 갯바위, 방파제, 선상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민물낚시

중국은 도시 내·외를 막론하고 곳곳에 많은 공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 내 연못 또는 호수가 바로 중국인들이 민물낚시를 하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 내륙지역은 풍부한 수자원과 어류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 저수지(水庫)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다. 따라서 낚시객들은 낚시도 하고 휴식, 관광도 할 수 있는 호수, 저수지, 리조트 등의 낚시터를 즐겨 찾는다.



| 부록 그림 9 | 리조트 낚시

자료: 바이두(百度), <http://www.baidu.com/>



| 부록 그림 10 | 도시 내 호수 및 하천 낚시와 교외 하천 낚시터

자료: 바이두(百度), <http://www.baidu.com/>

또한 중국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개인 자동차 보유율 증가에 따라 도시 내의 가까운 호수와 하천뿐만 아니라 도심을 벗어난 저수지 등에서도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호수, 저수지, 하천, 양어장형 낚시터 등 낚시장소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획할 수 있는 어종이 매우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민물 낚시가 가능한 어종에는 강준치, 메기, 초어, 연어, 붕어, 잉어, 가물치, 쏘가리, 뱀장어, 대두어 등이 있다. 그리고 낚시로 잡은 어류는 주로 선물용,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수권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수지나

하천, 호수 등에서는 수질 개선 및 정화를 할 수 있는 어종의 종묘를 선택하여 방류함으로써 이러한 장소에서는 잉어, 붕어뿐만 아니라 초어, 대두어 등의 수질 개선 어종도 어획할 수 있다. 유료 낚시터인 리조트 내 낚시터나 양어장형 낚시터에서는 중국의 4대 민물 양식어류가 아닌 상대적으로 고급 어종을 방류함으로써 낚시인들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할 수 있도록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2) 바다낚시

중국은 1.8만km의 해안선과 6,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레저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상으로도 온대와 아열대 수역에 걸쳐 있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비교적 길다. 특히, 동남연안지역은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8~9개월에 달하여 레저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 해역은 발해구(渤海區), 황해구(黃海區), 동해구(東海區), 남해구(南海區)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4개 구역 중 발해구는 중국의 내해로서 면적이 가장 작다. 면적은 약 8만km²로서 라이닝(遼寧), 허베이(河北), 텐진(天津), 산둥(山東) 사이에 있으며, 평균 수심은 20m이다. 이 구역에서 낚시로 어획 가능한 어종으로는 참조기, 도미, 고등어, 병어, 가자미, 꼬치고기(梭魚), 넙치, 농어 등이 있다. 또한 참새우와 오징어를 어획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기도 하다.

황해구는 북쪽 압록강에서부터 발해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장강입구까지이다. 면적은 40여 만km²이고 평균 수심은 40m이다. 라이닝(遼寧)과 산둥(山東)반도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고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좋은 낚시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 어획 가능한 어종으로는 수조기, 도미, 고등어, 광어, 상어가오리, 전어 등이고 북방수역에서

는 가끔 대구, 바다붕어, 아귀 등도 어획할 수 있다.

동해구(東海區)는 북쪽의 장강입구에서 한국의 제주도 인근까지이며 남쪽은 광둥성난아오섬(廣東南澳島)에서 타이완핑후섬(臺灣澎湖島) 일대를 가리킨다. 그 면적은 75만km²이고 평균수심은 약 350m로서 섬들이 많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약 40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낚시 가능 어종으로는 부세, 참조기, 갈치, 병어, 봉장어, 망둥이(蝦虎魚), 농어 등의 어류와 오징어 등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이 있다.

남해구는 광둥(廣東), 광시(廣西), 푸지안(福建), 타이완(臺灣), 하이난(海南)과 인접하여 있고 광둥성난아오섬(廣東南澳島)부터 타이완핑후섬(臺灣澎湖島) 일대 동해와의 경계선까지이며, 동남쪽은 필리핀, 남쪽은 칼리만탄섬, 서남쪽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반도까지의 해역을 가리킨다. 동 해역의 면적은 350만km²이며, 평균수심은 1,140m에 달한다. 이 해역은 열대에 위치하고 있어 어류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약 850여 종의 수산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낚시 가능 어종은 대부분 난류성 어류와 열대성 어류이다. 예를 들면 우럭, 정어리, 참치 등 백여 종의 어류와 새우, 게, 자라 등 수생동물을 어획할 수 있다. 또한 남해수역에서는 다양한 난류성 어류도 어획이 가능하다.

2) 중국의 낚시용품 무역박람회

다음은 중국의 주요 낚시용품 박람회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중국 국제 낚시용품 무역박람회(베이징)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제 낚시용품 무역박람회는 1991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21회를 개최하였다. 현재까지 84개 국가, 833개 회사에서 1,945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였고 세계 10대 어구 판매회사들도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바이어들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중국 국내에서도 268개 회사, 519명의 무역상이 등록을 하여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최근 동 박람회는 전 세계 바이어들과 상업적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중국 국내 낚시도구 업계에서 점점 부스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선진 해외 기업들의 방문도 증가하여 전 세계의 최신 제품을 발굴하고 생산성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생산자와 교류하기 위해 전국의 낚시도구 제조업과 도소매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2) 정저우(鄭州) 낚시용품 및 낚시 관련 제품 박람회

동 박람회는 낚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낚시도구의 생산 및 관련 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발달한 정저우의 지리적 우위를 이용함으로써 어구 및 관련 산업의 시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동 박람회는 국가 상무부의 지원 하에 허난성(河南省) 인민정부 주관, 정저우시 인민정부, 허난성 상무청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이다.

정저우시는 육로, 항공, 정보 등 종합적 통신 허브 및 물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어구 및 관련 산업이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어구시장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3) 벽해랑팡(碧海廊坊) 낚시용품 박람회

벽해랑팡 2011년 춘계 낚시용품 박람회는 허베이성 랑팡시 소재의 상설 국제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29개 성, 시, 자치구와 홍콩, 대만, 마카오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전시된 낚시 관련 상품만도 4,000여 종류에 달하며, 3,692개 부스가 설치되었다.

벽해랑팡 낚시용품 박람회는 중국의 낚시도구 업계에서 최대의 박람회

로 꼽히고 있으며, 200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14차례나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박람회는 많은 기업의 전시 및 업계정보 교환, 제품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4) 중국 웨이하이(威海) 국제 낚시 박람회(CGC EXPO)

2008년 중국 낚시도구 제조업 기지인 웨이하이에서 제1회 국제 낚시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동 박람회는 낚시도구 제조업에 관한 중국의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낚시에 대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웨이하이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0년 10월 3회를 맞은 중국 웨이하이(威海) 국제 낚시 박람회(CGC EXPO)는 51개국에서 340명의 바이어가 참가신청을 하였고, 270여 개 기업, 500여 명의 국내 바이어가 참가 신청을 완료하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수를 모두 합하면, 총 342개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다. 그중 웨이하이 지역에서만 149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되어 전체 전시 기업의 43.6%를 차지하였다.

웨이하이는 국제 낚시 박람회 개최기간에 해외 및 국내 참가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해외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환승 시 국내 항공료를 지원하였고, 중국 참가업체에게는 참가 기간 동안 숙박과 점심 식사권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낚시도구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 무역업자 등 기업체와 낚시인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박람회 기간 정부가 출자하여 낚시경기 등 관련 행사 30여 개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센터로 지정된 선두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낚시용품 관련 박람회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낙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2011年 12月 29日 印刷

2011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김 학 소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印刷 / 크리커뮤니케이션 2273-1775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